

# 지금결제산업의 표준화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RESEARCH INSTITUTE

한 정 미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보고 2011-03

# 지급결제산업의 표준화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 정 미

# 지급결제산업의 표준화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trengthen Stability and Legislate  
Standardize System of Payment and Settlement

연구자 : 한정미(부연구위원)  
Han, Joung-Mi

2011. 10. 31.

# 요약문

## I. 배경 및 목적

- 지급결제란 ‘지급(payment)’과 ‘결제(settlement)’의 두 개념을 합성한 용어로, 실물거래, 금융거래 등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당사자간의 채권 및 채무관계를 화폐적 가치 이전을 통해 청산(clearing)하는 행위를 말함
- 정보기술의 발달과 금융서비스의 현대화 등을 배경으로 수표 등 전통적인 지급수단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고,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확대,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의 등장 등 지급결제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한편, 은행권에서 전담하였던 지급결제서비스를 비은행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모바일 지급수단으로 대표되는 통신산업분야, 유통산업분야 등 비금융기관도 지급결제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급결제산업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지급결제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담보방안이나 사후적인 감독기능도 금융위기 이후의 주요국의 감독체제 강화사례에 비추어 보완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모바일 지급결제시스템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동향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서비스의 법리적 검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II. 주요 내용

- 지급결제 관련 법제와 문제점
  - 지급결제서비스를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관에 관한 법령 및 금융거래에 관한 법령에 업무수행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함
  - 그러나 지급결제에 관한 별도의 법이 없으므로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금융결제원의 ‘업무규약’을 그 검토대상으로 함
  -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서는 금융투자회사에서도 은행과 같은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와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즉, 「자본시장법」으로 이미 허용된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법리적 검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급격한 기술의 발달로 금융환경 변화로 인하여 개별 은행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들 중 공통핵심 기능 예컨대, 금융 IC카드 같은 기술의 표준화 필요성 대두되고 있음

## □ 주요국의 지급결제 관련 법제와 시사점

-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국, 미국 등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 이에 따라 선진 각국에서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음
- 캐나다의 지급결제시스템
  - 캐나다의 지급결제시스템은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s Act ; CP Act)」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 2008년 CPA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장기 전략을 개발하여 ‘소액결제제도 Vision 2020’을 발표하였으며, 회원 및 주주, 세계의 지급결제협의회들이 참여한 연구 프로그램과 지급결제 산업의 필요성을 입증한 포괄적 협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구축함
- 호주의 지급결제시스템
  - 지급결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1998년 「지급결제시스템규제법(Payments Systems Regulation Act ; 이하 ‘PSRA’라 한다)」을 통해 규정함
  - PSRA는 중앙은행에 지급결제시스템 감시권한을 부여하고,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지정,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준,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분쟁의 조정,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의 의무, 가치저장형 지급수단에 대한 규제 및 준비은행의 자료요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
  - 영국은 「은행법」의 제정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권한을 크게 강화함
- 미국의 지급결제시스템
  - 미국은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제8장에 따라 연방정부의 지급 및 청산결제에 관한 감독의 역할을 규정한 「지급 및 청산결제 감독에 관한 법률(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upervision Act of 2009 ; PCSSA)」로 지급결제에 관한 감독을 하고 있음
- 일본의 지급결제시스템
  - 일본은 「일본은행법」에서 일본은행이 중앙은행으로 일본의 통화 및 지급결제시스템 업무를 담당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급결제관련 법률은 없음
- 이와 같이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에게 지급결제제도의 감시권한을 부여하고, 감독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이를 통하여 지원의무와 감시권한을 하나의 유인 패키지로 구성하여 조직의 이익추구와 철저한 감시감독이 서로 유인구조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임

### Ⅲ. 기대효과

- 단기 개선방안 : 현행법에 대한 보완
  - 감독권한과 감시권한의 구분 및 감시권한 확대

- 참가기관 확대에 따른 안전성 강화
  - 참가자 적격성 심사의 필요
  - 지급준비제도의 개선
-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 관리
  - 바젤 III의 적용
  - 결제시차로 인한 리스크 보완
- 지급결제 표준화제도의 법제화
  - 지급결제 표준화의 구분필요
  - 지급결제 표준화의 법적근거 설정
- 장기 개선방안 : 지급결제의 단일법제화
  - (가칭) 「지급결제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 주제어 : 지급결제시스템, 비은행 금융기관, 지급결제 리스크, 표준화 제도,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 Abstract

## I .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Payment and Settlement” refers to the act of clearing bonds and liabilities between parties through transfer of monetary values. Such bonds and liabilities are a result of various economic activities including trading commodities and financial transactions.
-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modernization of financial services, traditional methods of payment, such as checks, are decreasing rapidly and the payment and settlement industry is undergoing a structural change brought on by increasing use of electronic payment methods and introduction of new payment and settlement services.
- Payment and settlement services were once exclusive to banks. However, it is now open to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as well as non-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distribu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represented by mobile phone payment. As a result, the overall payment and settlement industry is expanding.

- To cope with the changes in payment and settlement industry, the ways to secure safety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and supervisory functions must be enhanced by reflecting the strengthened supervisory system of leading nations, which took place after the financial crisis.
-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legislative trends of major nations regarding payment and settlement services provided by non-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mobile phone payment and settlement service) and payment and settlement services by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thus presenting ways to improve Korea's legislation system for legalistic review of Korea's payment and settlement services and securing higher level of safety.

## **II. Current Legal System and Its Problems**

- Providing payment and settlement services requires legal foundation on ordinances related to individu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ordinances related to financial transactions. However, since there is no law related specifically to payment and settlement, Banking Ac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Capital Market Act, Bank of Korea's "Payment & Settlement System Operation & Management Regulations" and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 Institute's "Business Agreement" were reviewed.

-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Capital Market Act hereon in), which was enforced on February 45h, 209, grants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to provide payment and settlement services as banks.
- Legalistic review and safety review of payment and settlement services provided by non-financial institutions and non-banking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who have been granted to provide payment and settlement services by the Capital Market Act, must take place.
- As technology develops rapidly, the financial market environment is changing and individual banks are providing distinguished services. The need for standardizing shared core functions, such as financial IC cards, is rising.

### **III. Lessons from Other Countries**

-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created the momentum for being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stability of financial payment system in major leading nations such as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As a result, various leading nations are taking legislative measures to heighten the safety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 Canada's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is regulated by the Canadian Payments Act (CP Act). In 2008, CPA has developed

a long-term strategy regarding the payments and settlement system and announced “Small Amount Payment System Vision 2020” based on research programs participated by members, shareholders and payment and settlement consultative groups around the world as well as consultative programs that proved the need for the payment and settlement industry.

- The details of the payment and settlement services are regulated under the Payment Systems Regulations Act (PSRA hereon in) of 1998. The PSRA grants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monitoring rights to the central bank, designates essential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specifies operational standards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covers mediation of disputes related to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specifies the responsibilities of the participants in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regulates stored value payment methods, and request of data by Reserve Bank.
- England has legislated Banking Act, which strengthens the Bank of England’s monitoring rights over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as a way to seek higher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 In the United States,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upervision Act (PCSSA hereon in) of 2009 grants Federal Government the rights to supervise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cording to Section 8 of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 In Japan, the Japanese Banking Act grants Japanese banks to be in charge of currency and payment settlement systems on behalf of the central bank, and there are no ordinances that deal specifically with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 As you can see, major nations around the world are granting monitoring rights over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to the central bank while maintaining a seamless collaboration system with supervising bodies. This collaboration combines support functions and monitoring functions and promotes mutual harmony between the organization's pursuit of profit and strict monitoring and supervision.

#### **IV. Legal Improvements**

- Short-term Improvement Measures: Reinforcing current laws
  - Divide supervisory and monitoring rights and expand monitoring rights
  - Strengthen safety from increasing number of participating bodies
  - Risk management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 Legislate standardize system of payment and settlement

- Long-term improvement measures: Legislate a single act regarding payment and settlement
- Legislat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Management Act” (tentative name)

➤ Key Word :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Risk management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Legislate standardize system of payment and settlement, Strengthen stability

## 약 어

약 칭	원 어	번 역
ACSS	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	소액결제시스템
APACS	Association for Payment Clearing Service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
APCA	Australian Payments Clearing Association	호주지급결제협회
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호주금융감독청
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호주증권투자위원회
ASC	Accredited Standards Committee	표준화위원회
ATM	Automated Teller Machine	현금인출기
BACS	Bankers Automated Clearing Services	소액지급결제시스템
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IS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
BNCL	Bilateral Net Credit Limits	상대순신용한도방식
CAPCS	Regulation for Australian Paper Clearing System	장표청산시스템 규정
CCAA	Cooperative Credit Associations Act	신용협동조합법

약칭	원어	번역
CCP	Central counterparty	중앙거래당사자
CGFS	Committee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세계금융제도위원회
CHAPS	Clearing House Automated Payment System	거액결제시스템인
CHIPS	Cleaning House for Interbank Payment System	은행간 지급결제기관인 PaymentsCo
CP	Canadian Payments Act ; CP Act	캐나다 지급결제법
CPA	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캐나다지급협회
CPSIPS	Core principles for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
CPSS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지급결제제도위원회
CR	Collateral Requirement	사전담보
CSD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중앙예탁기관
D-FWSRCP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금융개혁법
DIDMCA	Depository Institutions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	예금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법
DNS	Deferred net settlement	이연차액결제
DvD	Delivery versus delivery	증권동시인도
DvP	Delivery versus payment	증권대금동시결제
E-FD	E-Money Directive	전자화폐 지침



약칭	원어	번역
ELMIs	electronic money institutions	전자화폐 발행기관
EFTA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of 1978	전자자금이체법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기구
FMI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금융시장인프라
FMU	Financial Market Utilities	금융시장 유틸리티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
FSMA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금융서비스시장법
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금융안정감독위원회
FHFA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연방주택금융청
G-SA	Glass-Steagal Act	글래스-스티걸법
ICA	Insurance Companies Act	보험회사법
ICSD	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국제중앙예탁기관
I-N	Inter-Dependency	상호의존성
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국제증권감독기구
IT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Lamfalussy Report	Report of the Committee on Interbank Netting Schemes of the central banks of the Group of Ten countries	G-10 중앙은행의 은행간 차감제도위원회보고서
LR	Liquidity Risk	유동성리스크

약칭	원어	번역
LR	Legal Risk	법률리스크
LVPS	Large-value payment system	거액결제시스템
LVTS	Large Value Transfer System	거액결제시스템
MiFID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금융상품 시장에 관한 지침
MMMF	Money market mutual fund	신용협동조합
MNDC	Multilateral Net Debit Caps	순채무한도방식
N-B FI	Non-Bank Financial Intermediaries	비은행 금융기관
NPP	National Payments Plan	국가지급결제 발전계획
OR	Operational Risk	운영리스크
OS	Operating System	범용운영체제
OTC	Over the counter	장외
POS	Point Of Sale	점포판매시스템
PR	Principal Risk	원금리스크
PSB	Payments System Board	결제시스템이사회
PSRA	Payments Systems Regulation Act	지급결제시스템규제법
PvP	Payment versus payment	외환동시결제
RA	Registration Authority	등록기관
RBA	Reserve Bank Act	중앙은행법
RCCP	Recommendations for central counterparties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권고
PCSSA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upervision Act of 2009	지급 및 청산결제 감독에 관한 법률
RCR	Replacement Cost Risk	대체비용리스크

약칭	원어	번역
Repo	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RMG	Registration Management Group	등록관리그룹
RSSS	Recommendations for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권고
RTGS	Real-time gross settlement	실시간 총액 결제
SA	Securities Act	증권법
SEGs	Standards Evaluations Groups	표준평가그룹
SEPA	Single Euro Payment Area	단일유로결제지역
SLA	Saving and Loan Association	저축대부조합
SR	Settlement Risk	결제리스크
SR	Systemic Risk	시스템리스크
SS	Switching Service	중계기관
SSS	Securities settlement system	증권결제시스템
STP	Straight-through processing	일관처리
TR	Trade repository	거래정보저장소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9
약 어 .....	15
제 1 장 서 론 .....	25
제 1 절 연구의 목적 .....	25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8
I. 연구의 범위 .....	28
II. 연구의 방법 .....	30
제 2 장 지급결제산업 개관 .....	31
제 1 절 지급결제의 개념과 리스크의 관리 .....	31
I. 지급결제의 의의와 운영주체 .....	31
II. 지급결제시스템 유형별 현황 .....	33
III. 지급결제리스크의 개념 및 관리제도 .....	40
제 2 절 지급결제산업의 운영현황 .....	47
I. 지급결제산업의 변화추이 분석 .....	47
II. 전자방식 지급결제산업의 확대 .....	48
제 3 절 지급결제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성 .....	51
I.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산업 확대 문제 .....	51
II.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표준화 문제 .....	52
III. 정보통신기술발달에 따른 지급결제 이용수단의 다변화 .....	54

제 3 장 지급결제 관련 법제 .....	57
제 1 절 지급결제 관련 국내법제 .....	57
I. 지급결제 관련 법령 .....	57
II. 지급결제 관련 규정 등 .....	64
제 2 절 주요국의 지급결제 관련 법제 .....	65
I. 서 설 .....	65
II. 캐나다 .....	67
III. 호 주 .....	74
IV. 영 국 .....	82
V. 미 국 .....	87
VI. 일 본 .....	96
VII. E U .....	102
VIII. 주요국 지급결제 관련 법제의 시사점 .....	114
제 4 장 지급결제산업의 표준화 .....	119
제 1 절 지급결제산업의 표준화 동향 .....	119
I. 금융표준화 개관 .....	119
II. 지급결제산업분야 표준화 촉진의 필요성 .....	123
제 2 절 표준화의 국제기준 및 전환추이 .....	127
I.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	127
II. ISO 20022 .....	136
제 5 장 지급결제산업 관련 법제 개선방안 .....	141
제 1 절 서 설 .....	141

제 2 절 단기 개선방안 : 현행법에 대한 보완 .....	142
I. 중앙은행의 감시권한 강화 .....	142
II. 참가기관 확대에 따른 안전성 강화 .....	150
III.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관리 .....	154
IV. 지급결제 표준화제도의 법제화 .....	166
제 3 절 장기적 개선방안 : 지급결제의 단일 법제화 .....	173
I. 지급결제 관련 단일법의 필요성 .....	173
II. (가칭)지급결제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구성 .....	174
III. 법률안의 주요내용 .....	183
제 6 장 결 론 .....	197
참 고 문 헌 .....	201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99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세계의 지급결제규모(global payment volume)가 1년에 약 3,300억 여건 증가할 것이며, 결제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 바 있다.<sup>1)</sup> 이러한 예상대로 결제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결제유형에 따라 다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소비자들의 카드결제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하여 전 세계적으로 전자지급결제가 비현금 지급결제 규모의 약 85%를 차지하게 되면서 최고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기술의 발달과 금융서비스의 현대화 등을 배경으로 수표 등 전통적인 지급수단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고,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확대,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의 등장 등 지급결제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은행권에서 전담하였던 지급결제서비스에 비은행 금융기관<sup>2)</sup>을 비롯하여 모바일 지급수단으로 대표되는 통신산업분야, 유통산업분야 등 비금융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급결제산업의 범위가

---

1) TowerGroup, Global Payments: Trends, Opportunities, and Impact on the Canadian Payments Industry. February 2008.

2) 비은행 금융기관(Non-bank financial intermediaries)은 중앙은행과 일반상업은행 이외에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일반상업은행과 유사한 자금중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각종 금융중개기관을 말한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취급업무가 은행과 유사하여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자본시장법」 시행전에는 대체로 자금조달에 있어 요구불예금을 수취하지 않고 일부 수취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중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서 신용창조기능이 크게 제약되고 결제기능을 갖지 않는 점으로 일반은행과 구분하여 왔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시행이후에는 비은행 금융기관에서도 결제기능을 갖게됨에 따라 이와 같은 구분기준도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비롯하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우체국 등이 비금융회사에 속한다.

점차 확대되고 있다. 즉, 은행을 중심으로 전자자금이체가 도입되고, 인터넷 뱅킹이 확대되면서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비롯한 전자적 방식이 접목된 지급결제수단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휴대성과 편의성이 강조된 모바일 지급수단을 이용한 지급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급결제시스템은 실물거래, 금융거래 등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당사자 간의 채권 및 채무관계를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 통해 청산하는 행위라는 기존의 개념이 최근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급결제제도를 통한 금융안정 확보라는 새로운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 간 자금이 이체되는 수단으로서, 일방의 위기가 금융시스템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주요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안정을 위해 반드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 자본시장을 지탱하는 사회적 기반으로 국제적 표준화 및 안전성, 효율성, 이용편의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급결제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2004년 1월 시행된 개정 「한국은행법」 제81조에서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한국은행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증가하는 지급결제 규모와 지급결제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최근 「상법」이 개정되어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에 제22호를 추가하여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를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였다. 한편,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서는 금융투자회사에서도 은행과 같은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허용은 금융투자회사가 증권업·자산운용업·선물업·신탁업 등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회사(증권사)에 지급결제서비스를 허용하여 CMA 고객기반 확대를 통한 교차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3)</sup>

「자본시장법」의 시행이전에는 증권사의 증권계좌는 지급결제 기능이 없었으므로 특정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연결계좌를 만들어 급여계좌로 사용토록 하면서 결제기능을 서비스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연계계좌를 통한 부가서비스는 은행 영업시간에만 가능하고, 일부 서비스는 제외되는 등의 불편함이 있어, 금융기관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통하여 주식예탁계좌를 은행예금계좌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sup>4)</sup>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허용에 따라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예금과 결제기능을 갖는 서비스의 도입이나 은행을 자회사로 들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지급결제서비스에 참여하는 방식 등을 주장하며 업무범위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sup>5)</sup>

그러나 이러한 「자본시장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허용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이러한 지급결제업무가 은행으로 대표되는 예금수취기관의 고유업무로 인식되어 왔던 점, 금융업간의 겸업 추세 확대 및 자금이체의 이용증가와 관련하여 결제리스크 발생가능성이 증가되는 점, 지급결제 참가기관의 확대에 따른 리스크 증가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담보방안이나 사후적인 감독기능도 금융위기 이후의 주요국의 감독체제 강화사례에 비추어 보완될 필요

3) 2009년 2월말 현재 25개 증권회사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를 신청하였다. 한국은행, 2008년도 지급결제제도 운영보고서 57쪽 참고.

4) 도제문, “왜, 은행이 차액지급결제 제도의 주체인가?”, 금융, 은행연합회, 2006. 6, 31쪽.

5) 2008. 12. 18. 국회에 제출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 보험사의 자금이체 업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성이 있다. 금융업간의 겸업과 금융기관의 대형화는 「자본시장법」의 제정 이유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금융의 활성화 추세에 따른 금융이용자의 보호 측면의 고려나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에 따른 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안정성 확보방안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모바일 지급결제로 대표되는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와 관련하여서도 모바일 뱅킹거래와 통신과금거래, 기타 신용카드·전자화폐·선불카드·직불카드 등의 부가적 기능이 이동통신기기에 탑재되어 이용된 부가기능거래로 나뉘고 있으며, 각 지급수단별 특성을 고려하여 법률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렵고, 각종 업무의 위임거래의 다양화 등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법제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어음·수표 이용의 감소 및 전자지급수단 이용의 확산 등과 같은 구조변화와 인터넷 뱅킹 등 대부분의 소액결제 시스템이 2000년대 초반에 구축된 점을 감안하면, 수표 대체지급수단의 개발, 신규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도입,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국제표준의 도입, 사기방지 및 보안강화 등 지급결제산업의 구조변화에 법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모바일 지급결제시스템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동향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지급결제서비스의 법리적 검토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I.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화폐에 의한 지급결제수단 이외에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급결제산업의 확대·변화와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 등 전통적인 지급결제산업의 범위 외의 지급결제에 관한 법제 연구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화폐에 의한 지급결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최근의 변화된 지급결제산업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기본이론이나 법령이 포함된 부분에 대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 증권에탁원의 증권결제시스템, CLS은행의 외환결제시스템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기존의 지급결제 관련 정책이나 법제의 검토는 중앙은행과 금융기관간의 거액의 긴급한 거래를 처리하는 거액결제시스템(large-value payment system)운영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었는데, 최근에는 소액결제시스템(retail payment system)의 운영 구조로 그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소액결제시스템은 거액결제시스템에 비해 소액의 긴급하지 않은 거래를 대상으로 하나, 개인 및 기업의 상품·용역 구입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지급을 처리하여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sup>6)</sup> 특히 새로운 지급결제수단 및 지급결제채널이 등장하면서 소액결제 유형이 다양해지고 거래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액결제시스템 운영 구조를 모색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sup>7)</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액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이 처리하는 지급결제에 있어서도 증권결제 분야가 아닌 비은행 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주요 분석대상이 되는 현행법령은 「한국은행법」,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업무규약」 등이 해당될 것이다.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2008년부터 지급결제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장기전망을 토대로 향후 10년간의 지급결제시

6) 김서영, “주요국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 구조 비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2011. 7, 33쪽.

7) 김서영, 위의 논문, 33쪽.

스텝 발전전략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편, BIS, IMF 등 국제기구의 기준을 검토하여 지급결제산업 표준화 등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II.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국내외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실무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sup>8)</sup> 전문가에 대한 개별 자문의 결과도 반영하였다.

---

8)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총3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지급결제산업의 운영현황과 전망」(2011년 4월 15일)이라는 주제로 제1차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석호(한국거래소 청산결제제도 팀장), 이병목(한국은행 결제정책팀 과장)의 발표와 이준서(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병연(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이 있었다. 「주요국의 지급결제산업 관련 법제와 발전전략」(2011년 7월 27일)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제2차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박훤일(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김희철(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맹수석(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규(한국은행 차장)의 발표와 원동욱(우송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진재석(금융결제원 전문연구역)의 토론이 있었다. 「금융표준화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2011년 8월 9일)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이철송(한양대학교 교수) 사회로, 김동현(ICTK 사장), 김성천(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 양준모(연세대학교 교수)의 발표와 권오신(금융결제원 표준화팀장), 성재모(금융보안연구원 정보보안본부장), 최승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한상일(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의 토론이 있었다.

## 제 2 장 지급결제산업 개관

### 제 1 절 지급결제의 개념과 리스크의 관리

#### I. 지급결제의 의의와 운영주체

##### 1. 지급결제의 의의

지급결제란 ‘지급(payment)’<sup>9)</sup>과 ‘결제(settlement)’의 두 개념을 합성한 용어로, 실물거래, 금융거래 등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당사자간의 채권 및 채무관계를 화폐적 가치 이전을 통해 청산(clearing)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화폐적 가치이전을 가능케 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급수단, 참여기관, 전산시스템, 운영조직, 업무처리규정 등을 총칭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이라 한다.<sup>10)</sup> 지급결제제도는 지급, 청산, 결제로 이루어지는 지급결제의 과정이 일회적인 절차가 아니라 하나의 메커니즘을 이루어 형성하는 시스템이며, 시장경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중요 하부구조가 된다.<sup>11)</sup>

---

9) 상법에서 금전이나 운임, 비용, 채당금, 이자, 배당금, 보험료, 급여, 용선료 등에 관하여 지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금전채무의 이행을 의미할 때 지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금전뿐만 아니라 금전에 상응하는 지급수단을 이용할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결제란 만기가 정해진 채무에 관해 채권자에게 금전 기타 일정한 재화를 이전함으로써 채무를 해소하는 행위 또는 채무가 해소된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급과 결제를 구별하지 않고 쓰는 예도 있으나, 지급(payment)가 결제(settlement)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결제는 지급과 유사하지만, 만기가 지정되어 있는 채무가 전제된다는 점, 거래의 최종적 목적인 재화가 이전되어야 한다는 점, 결제가 있으면 당사자 간의 채권, 채무관계가 완전하게 해소된다는 점, 통화 이외의 지급수단을 사용한 경우 지급수단의 통화로의 전환에 의해 급부가 완결된다는 점 등이 그 특징이 있어서 결제는 지급보다 좁은 의미로 보고 있다. 원동욱, 「주요국의 지급결제산업 관련 법제와 발전전략」,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1. 7. 27, 31쪽.

10)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2조 제1호.

11) 원동욱, 위의 자료, 31쪽.

일반계약의 경우 계약 당사자들 간의 채무의 이행은 형식적으로 지급이 있으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소액결제의 경우 실제로는 지급 이후에 지급채무자의 지급대행은행이 채권자의 은행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이 제공하는 청산과정을 거쳐 금융기관 간에 서로 결제가 완료되는 것이다.

현금(화폐)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급수단으로 강제통용력을 바탕으로 가장 완결적인 지급수단이 되는 것이므로<sup>12)</sup> 더 이상의 결제과정을 요하지 않는다.

한편, 지급결제와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자금이체는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계좌상 금액의 이체를 통하여 현금수수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지급 및 수령수단을 의미하는 것이다.<sup>13)</sup> 지급결제와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자금이체에 관하여는 정의규정이 없다. 다만, 자금이체업무가 계좌개설 계약 또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고객의 입·출금지시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정산·결제 등의 처리업무를 포함하는 상행위의 일종으로 「상법」 제46조 제8호에서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2호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정의로써,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기관에 연결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또는 ②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자금이체는 각종 실물·금융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으로서 지급결제의 시작

12) 한국은행법 제47조, 제48조 참조.

13) 한정미,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제연구”, 법제연구 통권 제36호, 한국법제연구원, 2009. 6, 439쪽.



단계이며, 다른 지급수단과 마찬가지로 채무변제를 위한 급부행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자금이체는 채무변제를 위한 지급수단으로 기능하며 지급결제제도의 구성요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이 운영주체가 된다. 지급결제는 중앙은행의 기본적 업무이며, 중앙은행은 중요 지급수단(화폐)의 발행과 결제시스템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급결제제도는 통화정책의 인프라이기 때문에 금융안정업무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지급결제시스템이 금융위기의 전과경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금융안정의 하부구조를 구성한다. 따라서 거의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은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up>14)</sup> 특히,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 하나만 운영되는 거액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이 운영하게 된다.

## II. 지급결제시스템 유형별 현황

### 1. 거액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시스템

지급결제는 다양한 중개기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시스템으로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과 한국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거액·소액이라고 하여 각 시스템이 처리하는 금액이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운영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액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간 자금거래 등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서 건당 거래금액이 크고 거래량은 많지 않은 거액소량

---

14) 원동욱, 앞의 자료집, 31-32쪽.

결제시스템이다. 신한은행금융결제망(BOK-Wire+, 이하 ‘신한은행금융망’이라 한다)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서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거액결제시스템이다. 신한은행금융망에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대다수 금융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참가기관들은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좌예금계정간의 자금이체를 통하여 한국은행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과 주고받을 자금을 결제하고 있다. 소액결제시스템은 주로 금융기관의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고객을 상대로 한 거래를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건당 거래금액은 크지 않으나 거래량이 많은 소액대량 결제시스템이다.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 간 연결구조는 국가에 따라 상이한데, 크게 중계센터를 통한 중앙집중형 구조와 양자 간 약정에 의한 분산형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시스템이 다자 간 차액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중앙집중형, 양자 간 차액결제 방식이나 총액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분산형 구조를 띤다.<sup>15)</sup>

우리나라의 주요 소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은행공동망,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은 주로 은행들이었으나 2009년 7월부터는 금융투자회사들도 참가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 등을 위해 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화·외화자금이체, 통화안정증권발행, 상환 및 국공채매매 등의 업무가 처리된다.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 제4조에서는 한국은행금융결제망에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기관으로서 감독기관이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고 일정 이용횟수 이상을 충족하는 기관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5) 김서영, “주요국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구조비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2011. 7, 36쪽.



&lt; 표 - 1 &gt; 한국의 소액결제시스템 구축 현황

거액 결제시스템	운영기관	한국은행
	참가기관(127개)	- 은행 53개, 금투사 53개, 보험9개, 기타12개
소액 결제시스템	운영기관	금융결제원
	참가기관 (2,700여개)	- 사원은행 11개, 준사원은행 10개 등
증권 결제시스템	운영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참가기관(150개)	- 증권결제시스템 : 62개 - 증권기관결제시스템 : 93개 - 채권기관결제시스템 : 149개

자료 : 국회 정무위원회, 지급결제제도 감독법안 검토보고서, 2010. 2, 6쪽.

## 2.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에는 어음교환시스템(어음, 수표 등 장표방식 지급수단의 교환 결제), 지로시스템(급여, 공과금, 보험료 등 정기적인 소액대량 자금이체), 은행공동망(은행간 공동전산망을 통한 온라인 송금, 잔액조회 등)이 포함된다. 한편, 기업·개인간(B2C)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시스템이나 기업간(B2B)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도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에서 운용된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이러한 소액결제시스템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카드사가 운영하는 신용카드결제시스템, 이동통신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결제시스템, 전자화폐 발행기관이 운영하는 전자화폐결제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의 소액결제시스템들이 생겨나고 있다.

제 2 장 지급결제산업 개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이들 자금이체는 자금이체 시점 이전에 미리 거래은행 또는 중개센터인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자금이체 의뢰, 추심권한 수여, 대량 자금이체 확인 및 승인 등의 행위가 개입된다는 특징이 있다.<sup>16)</sup>

< 표 - 2 > 한국의 소액결제시스템 구축 현황

구 분	결 제 대 상	도입연도	결 제 방 식
어음교환	어음·수표 및 채증서	1910	장표방식
지로 (인터넷지로)	판매대금, 보험료, 전화료, 공과금 등 수납, 급여이체	1977 (2000)	장표 및 전자 방식
CD공동망	예금인출, 계좌이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1988	전자방식
타행환공동망	소액송금	1989	전자방식
직불카드공동망	직불카드 사용대금 이체	1996	전자방식
CMS공동망	대량자금 이체	1996	전자방식
지방은행공동망	예금 입·출금, 송금	1997	전자방식
전자화폐공동망	전자화폐 사용대금 이체	2000	전자방식
전자금융공동망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	2001	전자방식
B2B 지급결제시스템	기업간 전자외상매출채권을 이용한 지급결제	2002	전자방식
G2B 지급결제시스템	정부·기업간 전자상거래 사용대금 이체	2002	전자방식

16)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해설, 2009. 1, 8쪽.

구 분	결 제 대 상	도입연도	결 제 방 식
B2C 지급결제시스템	기업·개인간 소액 전자상거래 사용대금 이체	2000	전자방식

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2009.12

### 3. 증권결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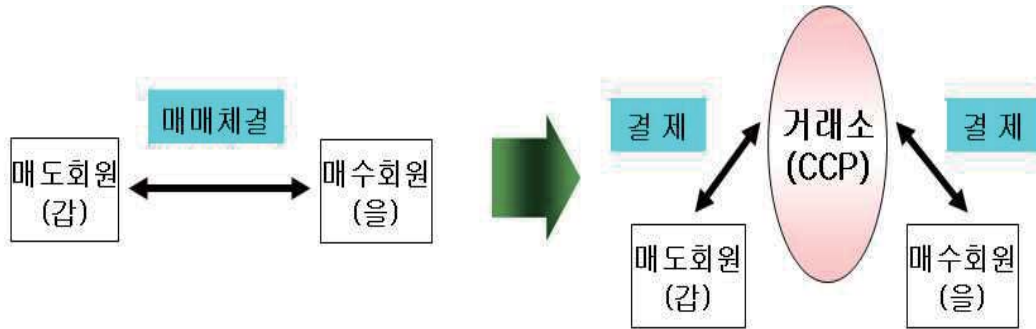
증권결제시스템은 주식이나 채권 등을 사고 팔 때 그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결제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이다. 증권실물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증권의 소유권을 장부상으로 매도자로부터 매수자 앞으로 이전하는 계좌대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증권 매매대금은 신한은금융망을 통하거나 시중은행 상호간의 계정을 통하여 결제된다. 증권결제시스템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 코스닥 및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채권기관투자자, 주식기관투자자 및 기관간 RP 결제시스템이 있다.

증권결제시스템에서의 청산은 회원간에 성립된 매매거래에 개입하여 모든 매도자에 대해서는 매수자, 모든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됨으로써, 중앙거래당사자(CCP)의 지위에서 매도·매수자간(CCP와 회원간) 채권·채무를 차감하여 확정하고 결제기관에 결제지시를 하며 결제가 이행되기까지 결제를 보증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에서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대신하여 그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의한 채권·채무에 대한 그 채권을 행사 또는 취득하거나 그 채무를 이행 또는 인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한국거래소에게 결제이행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 그림 - 1 > 증권시장의 청산·결제



자료 : 정석호, “증권결제시장의 운영현황과 증권결제리스크 관리방안”, 한국 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1. 4. 15, 34쪽.

#### 4. 외환결제시스템

외환결제시스템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매도기관과 매입기관간에 사고 판 통화를 서로 교환·지급함으로써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지급결제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외환결제는 환거래은행을 통한 건별 결제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환거래은행을 통한 결제방식은 지역간 영업시간이 달라 매입통화와 매도통화의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은행이 매도통화를 이미 지급한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이 파산하는 경우 매입통화를 수취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리스크를 없애기 위하여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은행을 통해 외화가 동시에 결제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이 2002년 9월 구축되어 국제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12월에 도입되었다.

5.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조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 전체의 구조를 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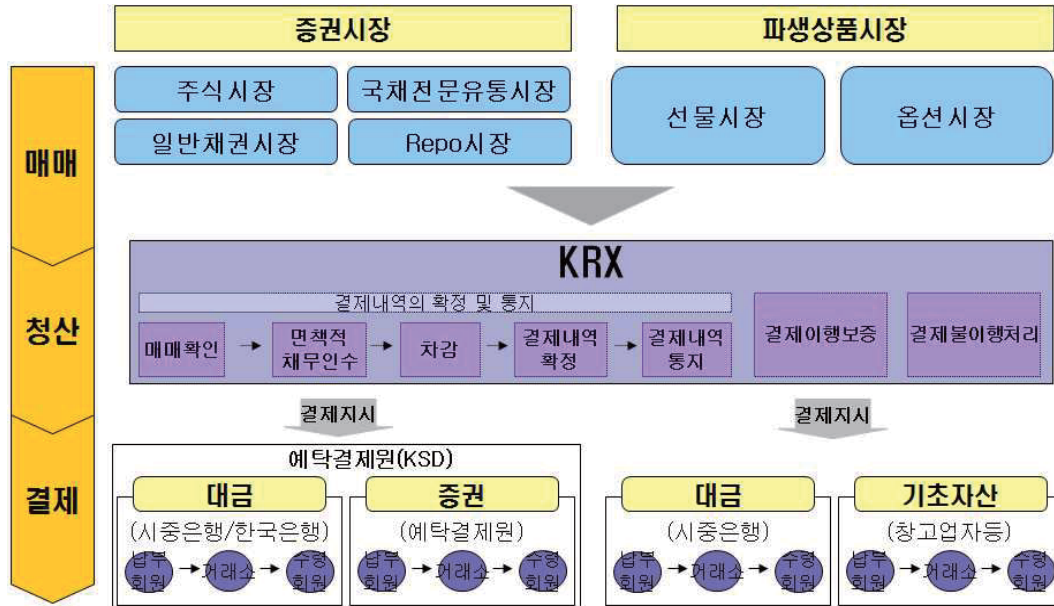
< 그림 - 2 >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구조



자료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2009. 12, 52쪽.

한편,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의 구조를 보면 아래와 같다.

< 그림 - 3 > 증권결제시스템의 구조



자료 : 정석호, 앞의 자료집, 36쪽.

### Ⅲ. 지급결제리스크의 개념 및 관리제도

#### 1. 지급결제리스크의 개념<sup>17)</sup>

결제리스크(settlement risk)는 이체시스템에서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을 지칭하는 일반 용어로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를 포함한다.<sup>18)</sup> 즉 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어느 기관이 금융거래체

17) 지급결제리스크에 대해서는 이병목, “지급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운영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1. 4. 15, 55쪽 이하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18) general term used to designate the risk that settlement in a transfer system will not take place as expected. This risk may comprise both credit and liquidity risk(BIS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A glossary of terms used in payments and settlement systems*, Jan. 2001, p.39).

결 후 상대방 기관이 결제를 불이행할 가능성 또는 그로 인하여 야기 되는 손실발생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제리스크는 거래 시점과 결제시점간의 차이, 결제방식, 참가기관의 재무건전성 등에 따라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법률리스크 및 시스템리스크로 구분된다.

### (1) 신용리스크

신용리스크(credit risk)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결제시점 또는 특정시점에 결제대금 전액을 완전히 결제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로 원금리스크(principal risk)와 대체비용리스크(replacement cost risk)로 나누어진다.

원금리스크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인도와 거래대금의 결제가 동시이행되지 않는 경우 채무를 먼저 이행하는 당사자가 거래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시 부담하게 되는 손실발생 가능성을 말한다. 예컨대, 증권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했으나 증권을 인수하지 못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발생한다. 특히 국가간 결제 시간대가 다른 외환거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원금리스크로 인한 손실범위에는 거래원금전체가 포함된다. 대체비용리스크는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거래당사자 일방의 거래 취소 또는 파산 등으로 거래상대방이 원래 거래를 다른 거래로 대체하는 데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따른 위험을 말한다. 예컨대, 외환 또는 증권거래시 계약 시점과 대금결제 시점 사이에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 발생가능하다. 증권의 시장가격이 계약가격보다 상승할 경우에는 증권의 매수인이, 그 반대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각각 대체비용리스크에 노출된다. 대체비용리스크의 크기는 매매 대상이 되는 증권이나 외환의 가격변동성과 결제기간의 증가에 비례하여 커지며, 손실의 범위는 당초 계약보다 높아진 비용에 한정된다.



(2)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단기적인 자금부족으로 정해진 결제시점에 결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금융기관 자체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해당 금융기관이 예정된 시간에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대체자금도 조달하기 어려워 일시적으로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유동성리스크는 다른 금융거래계약에 대한 불이행이나 파산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제로는 유동성리스크와 신용리스크를 구별하기 어렵다.

(3)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내부통제의 결함, 전산시스템 운영자의 업무미숙이나 기술적 오류로 인한 전산 및 통신 장애, 또는 태풍·지진·화재·전력공급 중단 등과 같은 재해나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운영인력의 감염 등에 따른 업무수행곤란 등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을 말한다. 최근에는 전자방식의 실시간 자금이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산시스템 및 통신네트워크 등의 장애로 실시간 자금이체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크기가 증대되고 있다.

(4) 법률리스크

법률리스크(legal risk)는 법률이나 제도에 미비점이 있거나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결되지 못해 신용리스크나 유동성리스크가 발생 내지 악화될 위험을 말한다. 결제관련 법령, 운영기관의 운영규정 및 참가기간간 규약 등과 관련하여 발생가능하다.

(5) 시스템리스크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는 지급결제시스템에서 특정참가기관의 신용리스크 또는 유동성리스크 등으로 인한 결제불이행이 다른 기관



으로 확산되어 연쇄적인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지급결제시스템과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말한다. 지급결제시스템간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이 증가하고 중요참가기관도 복수의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특정 시스템 또는 특정 기관의 리스크가 쉽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2. 지급결제리스크와 금융규제의 영향

지급결제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용손실 충격 발생 이전인 정상 시기에서 자기자본규제 및 유동성커버리지비율규제의 강화는 은행의 충격흡수능력을 높임으로써 시스템리스크를 낮춘다. 즉, 자기자본규제는 신용손실의 충격흡수 능력을 제고하여 원초 도산을 예방하고 그 결과 은행간 익스포저를 통한 전염위험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sup>19)</sup>

한편, 위기발생 후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금융규제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회수나 자산급매각을 줄임으로써 위기에 따른 손실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신용 손실 충격이 발생하여 은행들이 최저 자기자본 규제 수준에 미달할 때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면 시스템리스크가 오히려 커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에서 자기자본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면 자산급매각을 통한 자산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염 도산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0)</sup>

이와 같은 지급결제시스템리스크 사전·사후적 관리 및 예방을 위하여 각 국에서는 지급결제 운영상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19) 이승환, “시스템리스크와 금융규제”, 금융경제연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11. 5, 24쪽.

20) 이승환, 위의 논문, 24쪽.

### 3. 지급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소액결제의 지급결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도적인 방안을 설정해 놓고 있다.

첫째, 신용한도의 설정<sup>21)</sup>을 들 수 있는데, 차액결제참가기관간 미결제 채무를 일정 범위내로 사전에 제한하기 위하여 참가기관의 자본금, 차입능력, 거래실적 등을 기초로 참가기관의 일중 순채무한도 또는 순이체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내에서만 자금이체지시를 허용하고 있다.<sup>22)</sup>

이에 따라 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리스크는 동 신용한도 범위내로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순채무관리지침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금융결제원의 ‘순채무한도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되는데, 여기에서 순채무는 자금이체에서 참가기관이 고객의 이체지시를 처리함에 따라 부담하는 다른 모든 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채무한도는 일정 기간 중 발생한 순채무액의 상한을 의미한다.<sup>23)</sup>

금융결제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금이체는 고객계좌의 입·출금일(D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일(D+1) 한국은행 당좌계좌를 통해 참가기관 간 차액결제가 이루어짐으로써 결제가 마무리되는 구조를 가진다. 차액거래란 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간 상호 지급액 및 수취액을 상계하고 차액을 산출하여 정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금이체 처리과정에서 차액결제 이전에 고객계좌에 대한 입금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래(실시간 이체거래)는 참가기관 간 신용리스크를 발생시

---

21) 신용한도는 개별 참가기관이 시스템에 참가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총액의 상한을 정하는 다자간 순채무한도(multilateral net debit caps)방식과 개별 참가기관의 다른 참가기관들 각각에 대한 순신용공여액을 일정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상대순신용한도(bilateral net credit limits)방식이 있다.

22) 이병목, 앞의 자료집, 60쪽.

23) 한정미,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제연구”, 법제연구 제36호, 한국법제연구원, 2009. 6, 449쪽.

킬 수 있는데, 이로 인한 결제불이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순채무 한도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운영규정 제19조).<sup>24)</sup>

셋째, 사전담보제(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예치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순채무한도제와 같은 신용한도 설정만으로는 결제불이행 사태의 발생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므로, 일부 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연쇄적인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순채무를 결제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하고 결제불이행시 담보를 처분하여 결제의 종료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sup>25)</sup>

넷째,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loss-sharing)제도를 두고 있다. 결제부족자금(또는 손실) 공동분담제도는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를 여타 참가기관들이 공동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sup>26)</sup>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의 실행여부는 결제불이행 은행의 담보규모 및 추가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일단 공동분담이 정해지면 한국은행은 은행별 공동분담자금과 결제시점을 결정하여 참가기관과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에 통보하게 된다.<sup>27)</sup>

다섯째, 차액결제대행제도를 들 수 있다. 금융결제원을 통한 자금이체 거래는 소액거래로서 거래대상이 광범위하고 거래건수가 매우 많은 특

24)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해설, 2009. 1, 22쪽.

25) 김병목, 앞의 자료집, 61쪽.

26) 김병목, 위의 자료집, 62쪽.

27)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별 공동분담금 내역과 결제시간을 통보받은 금융결제원은 통보받은 은행별 공동분담금을 포함하는 차액결제청구서를 재작성하여 결제시점 전까지 한국은행에 송부하며, 각 공동분담은행은 결제시점까지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에 분담금을 납입한다. 한국은행은 재작성된 차액결제청구서에 따라 결제시점에 차액결제를 실시하는데, 만일 공동분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은행이 있을 경우 해당은행이 제공한 담보증권을 처분하는 등의 절차를 밟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동 부족분을 다른 은행들이 재분담하도록 한다. 결제불이행은행은 한국은행 여신최고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공동분담은행들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정이 있기 때문에 참가기관 간 청산·결제를 건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자금이체거래를 대상으로 하여 참가기관 간 자금정산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 차액결제란 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 간 상호 지급액 및 수취액을 상계하고 차액을 산출하여 이를 주고받는 정산방식을 의미한다.<sup>28)</sup>

현재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자금이체는 금융결제원의 다자간 청산과정을 거쳐 거래일 이후(통상 D+1일) 참가기관의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 간 자금이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산 처리되고 있다.<sup>29)</sup>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시스템을 보면,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한 자금이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행은행을 선정하고 차액결제는 대행은행이 수행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는 이와 관련한 근거규정이 없으며, 금융결제원의 규약이나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규정방식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는 사실상 지급과 청산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 표 - 5 > 차액결제대행제도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차액결제대행	주업무	대행은행의 위탁기관 차액결제채무 이행	위탁기관을 대신해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결제채무를 이행
	결제리스크 관리업무	순채무한도 설정 및 관리	은행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위탁기관의 순채무한도를 설정하고 관리

28)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해설」, 2009. 1, 60쪽.

29)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위의 보고서, 60쪽.

구 분		내 용
	사전 담보 납입	대행은행은 위탁기관의 차액결제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에 추가 담보납입 책임 부담 위탁기관은 차액결제대행한도의 100% 해당금액 이상을 대행은행에 담보로 제공
	대행은행의 유동성 공급	위탁기관의 결제자금 부족시 대행은행이 결제유동성을 공급
직접결제	긴급시 직접 차액 결제 참가	대행은행에 전산장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위탁기관의 차액결제 직접 참가를 허용

자료 : 김병목, 앞의 자료집, 65쪽.

## 제 2 절 지급결제산업의 운영현황

### I. 지급결제산업의 변화추이 분석

#### 1.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들은 개인을 대상으로 자금이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자금이체 업무는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수행하되 차액결제는 대행은행을 통해 처리토록 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단계에서부터 차액결제 리스크가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였다. 2010년 2월 말 현재 25개 금융투자회사가 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차액결제는 8개 은행이 대행하고 있다.<sup>30)</sup> 한편, 2009년 말 현재 신한은 금융망을 통한 소액결제 참가기관은 54개 금융투자회사에 달하고 있다.

## II. 전자방식 지급결제산업의 확대

### 1.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현황

2009년 말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한 아이폰(iPhone)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의 보급은 국내 정보통신 산업과 모바일 산업, 금융산업 및 기타 서비스 산업의 모습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한 파급효과는 산업적 쓰나미와도 같이 빠르고 강력하게 국내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sup>31)</sup> 스마트폰<sup>32)</sup> 이전의 모바일 금융 또는 서비스라는 것은 단지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통신사의 폰 결제서비스, 은행권의 칩(Chip) बैं킹,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비접촉식 교통요금 결제 등 단순한 휴대폰 결제 또는 이에 관련한 단품적인 서비스가 중심이었으나 스마트폰의 보급을 통하여 대부분의 지급결제 서비스는 빠르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서비스로 발전되었다.<sup>33)</sup>

2010년 3월 말 현재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는 3개 은행, 6개 증권회사 등 9개 금융회사가 제공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109천명(뱅크서비스 93천명, 증권거래서비스 16천명)이다.<sup>34)</sup>

30)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보고서」, 2010. 4, 8쪽.

31) 김동현, “금융 표준화 관련 국제기준 동향과 법적 대응(스마트폰의 전자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1. 8. 9, 13쪽.

32) 스마트폰은 휴대폰의 기능 이외에 컴퓨터와 유사한 수준의 고기능 환경 구현이 가능한 범용운영체제(Operating System)를 탑재하여 사용자가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확장성을 보장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이다. 현재 대중화되어 있는 휴대폰과 스마트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방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운영체제의 개방성과 응용 프로그램의 개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지급결제 서비스의 고도화·본격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소이, “스마트폰과 지급결제 부문의 컨버전스 현황 및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2010. 1, 3쪽.

33) 김동현, 앞의 자료집, 14쪽.

3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0.3월말 현재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현황 및 향후 제공

&lt; 표 - 6 &gt;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현황

구 분	최초 개시일	제공 금융 회사수	이용실적 (개시 ~ '10.3월말)			제공되는 스마트폰(수)
			가입자 수 (천명)	이체 (매매) 건수 (천건)	이체 (매매) 금액 (억원)	
뱅킹서비스	09.12.10	3	93	306	2,701	아이폰(3) 윈도우 모바일(1)
증권거래 서비스 (PDA 거래 제외)	10. 2. 9	6	16	68	1,531	아이폰(6) 안드로이드 (1)
계		9	109	374	4,232	

위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아이폰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개 금융회사는 안드로이드, 윈도우모바일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짧은 서비스 제공기간에 비해 적극적으로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스마트폰의 상용화와 함께 모바일 금융서비스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5개 금융회사(은행 12개, 증권 7개, 신용카드사 6개)가 추가적으로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고, 34개 금융회사가 banking, 증권거래, 신용카드결제 등 대부분의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어,<sup>35)</sup>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제공, 스마트폰이 금융매체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36)</sup>

계획', 2010. 4. 12. 참조.

35) 금융감독원 위의 보도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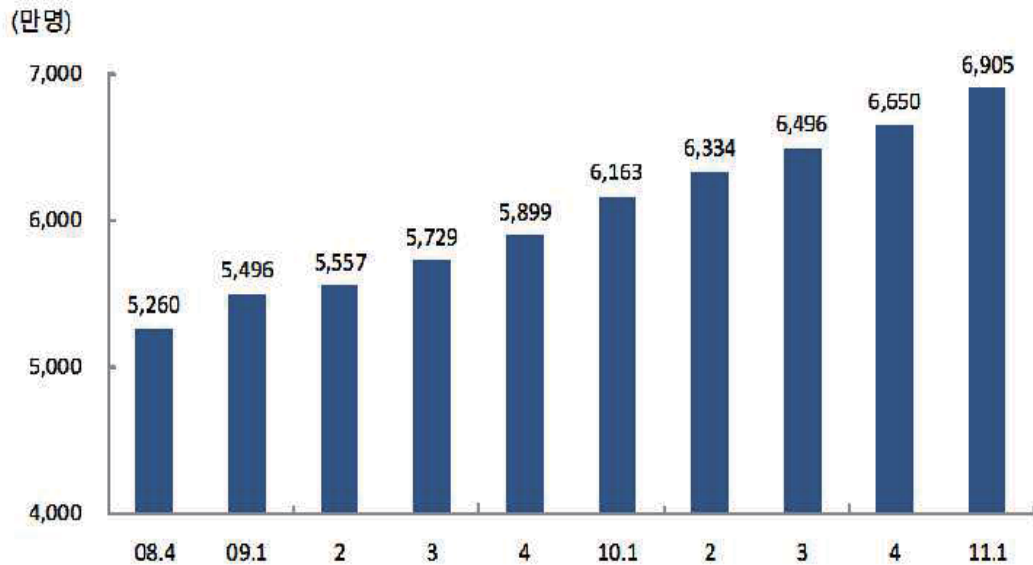
36) 한정미, "일본 모바일 전문은행 제도의 시사점과 국내 모바일 전문은행 설립에



## 2. 인터넷뱅킹 이용률

2011년 3월말 현재 19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이용고객수는 6,905만 명으로 전분기말(6,650만 명)대비 3.8%(254만 명) 늘어 이용자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수치는 일반은행이 운영하는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대한 이용고객 수라는 한계가 있지만, 영업점을 이용하는 고객 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는 반증은 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이용 고객 수의 증가는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능 한 금융상품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금융상품의 이용도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sup>37)</sup>

< 그림 - 4 > 인터넷 뱅킹 등록고객 증가추이



자료 : 한국은행, 2011년 1/4분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2011. 5. 4. 보도자료 참조.

관한 소고”, 지급결제학회지 제5권 제1호, 2011. 6. 30, 75쪽.  
37) 한정미, 위의 논문, 76쪽.



## 제 3 절 지급결제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성

### I.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산업 확대 문제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에서도 은행과 같은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허용은 금융투자회사가 증권업·자산운용업·선물업·신탁업 등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증권사에 지급결제서비스가 허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sup>38)39)</sup>

「자본시장법」의 시행이전에는 증권사의 증권계좌는 지급결제 기능이 없었으므로 특정은행과의 업무 제휴를 통한 연계계좌를 만들어 급여계좌로 사용토록 하면서 간접적으로 결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40)</sup> 그러나 이런 연계계좌를 통한 부가서비스로 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예컨대 은행 영업시간에만 가능하고, 일부 서비스는 제외되는 등의 불편함이 있어, 금융기관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을 들 수 있다.<sup>41)</sup> 「자본

38) 2009년 2월말 현재 25개 증권회사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를 신청하였다. 한국은행, 2008년도 지급결제제도 운영보고서 57쪽 참고.

39) 한정미,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제연구”, 법제연구 제36호, 한국법제연구원, 2009. 6, 438쪽.

40)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증권회사의 자금이체업무 취급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는 (구)증권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근거로 하고 있었으며, 이 경우 은행과 제휴한 증권회사의 경우 가상계좌방식이나 증권회사 예수방식을 통한 것으로 제한되었다. 「자본시장법」 시행이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가 일정한 방식의 전자자금이체 업무를 행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등록 없이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전자자금이체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면서 단서조항으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자본시장법」의 투자매매업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41) 도제문, “왜, 은행이 차액지급결제 제도의 주체인가?”, 금융, 은행연합회, 2006. 6, 31쪽.

시장법」을 통하여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한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주식예탁계좌를 은행예금계좌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시장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허용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이러한 지급결제업무가 은행으로 대표되는 예금수취기관의 고유업무로 인식되어 왔던 점, 금융업간의 겸업 추세 확대 및 자금이체의 이용증가와 관련하여 결제리스크 발생가능성이 증가되는 점, 지급결제 참가기관의 확대에 따른 리스크 증가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sup>42)</sup>

또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담보방안이나 사후적인 감독기능도 금융위기 이후의 주요국의 감독체제 강화사례에 비추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금융업간의 겸업과 금융기관의 대형화는 「자본시장법」의 제정 이유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금융의 활성화 추세에 따른 금융이용자의 보호방안의 측면의 고려나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에 따른 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안정성 확보방안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sup>43)</sup>

## II.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표준화 문제

최근 급격한 기술의 발달로 금융환경 변화로 인하여 개별 은행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들 중 공통핵심 기능 예컨대, 금융 IC카드 같은 기술의 표준화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 또한, 금융전반에 IT기술이 적용되면서 고객들의 기술 이용요구와 보수적인 금융권의 IT적용자세의 능동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전자화의 주요 변화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42) 한정미, 앞의 논문, 438쪽.

43) 한정미, 앞의 논문, 438쪽.

첫째, 지급수단의 전자화이다. 어음·수표 등 장표지급 수단의 교환 정보를 전자화(truncation)하는 범위에서부터 전자어음 내지 전자자금이체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이 등장하여 장표지급 수단을 획기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둘째, 금융업무의 전자화이다. 금융기관의 업무전달 채널이 전자화되면서 금융기관의 비용절감 및 고객의 필요를 충족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신상품 개발 등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업무의 전자화가 금융기관의 생존전략으로 변모하고 있다.

셋째, 전자비금융의 금융화이다. 새로운 지급수단의 등장과 금융업무의 전자화 과정에서 새로운 참여자들이 지급결제 업무에 참여하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그 참여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sup>44)</sup>

이러한 지급결제산업의 전자화 추세에 맞추어, 세계 각국 금융권의 국가경쟁력 우위와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sup>4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표준화에 대한 대응이 부진한데 이러한 요인은 첫째, 금융권의 금융표준화 인식의 부재가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고객이 서비스제공 은행을 선택하는 관행으로 은행간 호환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별은행의 차별화된 서비스제공으로 표준화 필요성이 낮았다.

둘째, OIT기술 적용에 대한 금융권의 보수적 태도를 들 수 있다. 금융공동망 등 은행간 호환이 필요한 금융서비스(CD/ATM 등)는 이미 해결되었고, 새로운 IT기술이 바로 금융권에 적용되지 않는 보수적인 분위기 탓에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sup>46)</sup>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표준화 추세에 맞는 법제 검토가 필요하다.

44) 지급결제연구회 편, 「지급결제제도의 이해」, 한국금융연구원, 2006. 9, 19쪽.

45) 이기한, 위의 자료집, 21쪽.

46) 이기한, “지급결제수단의 국내외 표준화 현황 및 과제”, 2009년도 전자금융세미나 자료집, 2009. 10. 7, 21쪽.

### Ⅲ. 정보통신기술발달에 따른 지급결제 이용수단의 다변화

최근 각 산업분야는 정보통신기술의 혁신과 함께 급변하고 있다. 금융산업과 지급결제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급결제수단 편리성의 전반에 대하여 많은 영향을 끼쳤다.

모바일 정보통신의 활용영역이나 제공자 선택의 자유가 크게 넓어져 이를 이용한 금융서비스의 유형도 다양해졌고,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의 보급에 따라, 전문적 지식이나 설비, 관리조직이 없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정보통신을 통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존의 산업분야는 끊임없는 산업간 컨버전스를 시도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야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급변하는 영업모델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이를 수용하지 못하면 결국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문제에 당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급결제에 관한 분야도 기존의 금융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업무제휴나 업역의 컨버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바일 카드시장이나 모바일 뱅킹, 모바일 선불금융상품의 제공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즉, 2세대, 3세대 이동통신산업의 발전으로 금융·통신간 컨버전스가 시도되었던 지급결제 부문에서도 새로운 가치창출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sup>47)</sup>

지급결제 부문의 컨버전스 가능성의 근거에는 스마트폰의 상용화가 있다. 스마트폰은 휴대폰의 기능 이외에 컴퓨터와 유사한 수준의 고기능 환경 구현이 가능한 범용운영체제(Operating System)를 탑재하여

---

47) 木下信行, 「銀行の機能と法制度の研究」, 東洋經濟新報社, 2005, 269면.

사용자가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확장성을 보장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이다.<sup>48)</sup> 현재 대중화되어 있는 휴대폰과 스마트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방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운영체제의 개방성과 응용 프로그램의 개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지급결제서비스의 고도화·본격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sup>49)</sup> 특히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금융과 통신간 컨버전스를 한층 심화시켜 모바일 관련 금융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다변화와 질적 성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sup>50)</sup>

---

48) 김소이, “스마트폰과 지급결제 부문의 컨버전스 현황 및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 기술, 2010. 1, 3쪽.

49)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소이, 앞의 논문 참조.

50) 한정미, “일본 모바일 전문은행 제도의 시사점과 국내 모바일 전문은행 설립에 관한 소고”, 지급결제학회지 제5권 제1호, 2011. 6. 30, 71쪽.

## 제 3 장 지급결제 관련 법제

### 제 1 절 지급결제 관련 국내법제

#### I. 지급결제 관련 법령

지급결제서비스를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관에 관한 법령 및 금융거래에 관한 법령에 업무수행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법령의 규정상으로는 자금이체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지급결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본고의 법령 검토에 있어서는 자금이체를 포함하여 검토하였으며, 여기에서는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을 그 검토대상으로 하였다.

##### 1. 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에 따라 중앙은행은 민간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미비점 등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인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oversight)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자치적인 결제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중앙은행이 점검하는 일종의 공법적 규제장치라 할 수 있다.<sup>51)</sup>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는 중앙은행의 고유한 책무로서 주요국 중앙은행은 감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sup>52)</sup>

51) 이병목, “지급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운영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위크숍 자료집, 2011. 4. 15, 65쪽.

52) 금융시스템에서 금융기관은 각종 금융거래 및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민간 경제주체가 제공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그 혼란은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래결제시스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지급결제제도는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신용정책의 파급경로로서 기능하는 점에서 원활하고 안전한 지급결제

금융시스템에서 금융기관은 각종 금융거래 및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민간 경제주체가 제공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시스템릭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그 혼란은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지급결제제도는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신용정책의 과급경로로서 기능하는 점에서 원활하고 안전한 지급결제제도의 구축·운영은 중앙은행의 핵심업무에 해당한다.<sup>53)</sup>

한편, 「한국은행법」은 최근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이 이루어졌다.<sup>54)</sup> 「한국은행법」 제1조 목적규정에 제2항을 신설하여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이후 세계적으로 거시건전성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하는 국제적인 추세<sup>55)</sup> 및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의 수행으로 시스템리스크 확대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sup>56)</sup>

---

제도의 구축·운영은 중앙은행의 핵심업무에 해당한다.

53) 이병목, 앞의 자료집, 66쪽.

54) 2009년 11월 국회 재정위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1년 9개월 만에 201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한국은행법」이 개정되게 되었다.

55) BIS 산하 세계금융제도위원회(CGFS)는 “거시건전성정책 설계 및 수행에 관한 7대 원칙”을 제시(2011.1)하면서 거시건전성정책은 독립적 중앙기구 또는 공식 위원회를 통해 수행되며 중앙은행은 동 정책 수행의 주체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을 강조하였다.

56) 최근 발생한 금융 위기는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위험 보다는 파생상품 등을 통한 금융 중첩화(financial layering)와 금융기관 간 상호의존성 확대에 따른 시장 경색으로부터 촉발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 안정에 있어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전반적인 시장의 자금 흐름을 관리하고, 위기 시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은행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8. 11, 6쪽. ; 다만, 2008년 7월 14일 제출되었던 개정안에서의 “금융제도의 안정”이라는 표현에서 “금융제도”는 금융규제·감독, 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금융규제나 감독에 대하여는 대부분 법령으로



지급결제제도 운영의 법적근거도 「한국은행법」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은행법」 제81조는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우리나라 전체 지급결제제도를 대상으로 한국은행에 필요한 공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2.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제40조 제4호에서 금융투자업자의 금융업무의 범위에 자금이체업무를 규정하면서, “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sup>57)</sup>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로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는 그 서비스 대상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는데, 법인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한하고,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개인의 이용목적으로만 우선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sup>58)</sup>

이는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취급으로 대규모 기업자금 등이 은행계좌에서 금융투자상품 계좌로 대거 이동함으로써 금융시스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대행은행의 결제유동성의 범위를 넘어서 금융투자회사의 차액결제규모가 증가할 경우 지급

---

규율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상 국제금융제도는 기획재정부, 국내금융제도는 금융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표현으로 완화하여 규정되었다.

57) 여기에서의 투자자예탁금은 「자본시장법」 제74조 제1항에서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58) 금융투자회사와 금융결제원 간에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금융투자회사 내 법인계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입·출금거래 및 법인 명의의 타행송금거래가 제한되는 것이다.



결제시스템 전체의 결제리스크가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이다.<sup>59)</sup>

한편,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에서는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및 검사·공동검사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의 권한 행사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예컨대, 자료제출의 경우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의 지급결제업무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제419조 제2항)로 제한하고 있으며, 검사·공동검사권 요구의 경우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제419조 제3항)로 제한하고 있다.<sup>60)</sup>

### 3. 은행법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은행법」은 일반은행의 고유업무로 “예금·적금의 수입”을 규정한 것에 관련이 있다. 이 규정으로 지급결제업무가 은행의 고유업무라 판단하여 그간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여 왔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업무는 「은행법」과 동법 시행령 및 ‘은행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규정되고 있는데, 일반은행은 고유업무 및 부수업무의 경우 별도의 인가 없이 영위할 수 있으나 은행업이 아닌 다른 업무로서 신탁업무 등을 직접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10년 「은행법」의 개정으로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

---

59)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앞의 보고서, 41쪽.

60) 한정미,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제연구”, 법제연구 제36호, 한국법제연구원, 2009. 6, 446쪽.

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조항에 밝힘으로써 은행의 건전한 운영과 예금자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이 개정에서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 및 자산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은행업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4. 전자금융거래법

지급결제제도와 직접관련이 있는 규정을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 41조의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들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화폐발행자 및 전자자금이체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 5.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1) 결제완결성의 보장<sup>61)</sup>

지급결제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결제의 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결제완결성은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체지시·청산·결제 등이 참가기관의 파산 등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취소되지 않고 해당 지급결

61) 이하 「통합도산법」에 따른 결제완결성 보장에 관한 내용은 이병목, 앞의 자료집, 67-68쪽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제시스템의 운영규정에 따라 당사자간에 결제가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결제완결성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지급결제시스템과 이연차액결제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차액결제시스템(소액결제시스템)의 경우에 모두 필요하나, 특히 문제되는 것은 차액결제시스템에 있어서 다자간 차감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결제방식이다. 예컨대, 참가기관이 파산할 경우 파산관재인이 이미 이루어진 결제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를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이미 결제가 이루어진 차액결제에 포함된 파산기관의 결제행위의 효력을 문제삼을 경우 전체 참가기관간 차액결제가 완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4월에 시행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에서 결제완결성 보장이 입법화되었다(동법 제120조). 이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는 일부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참가기관에 연쇄적으로 파급될 위험이 있고, 결제규모 및 이체지시의 처리방법 등을 고려할 때 결제가 완결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의 정상적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지급결제시스템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선정할 수 있다(동법 제120조 제1항62), 동법 시행령 제6조).

## (2) 지급결제제도와 청산결제제도의 구분

통합도산법에서는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지급결제제도를 보면, 제120조 제1항에서 지급결

---

62) 통합도산법 제120조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① 지급결제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이 항에서 “지급결제제도”라고 한다)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참가자에 관련된 이체지시 또는 지급 및 이와 관련된 이행, 정산, 차감, 증거금 등 담보의 제공·처분·충당 그 밖의 결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지급결제제도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는 그 참가자에 관련된 이체지시 또는 지급 및 이와 관련된 이행, 정산, 차감, 증거금 등 담보의 제공·처분·충당 그 밖의 결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청산결제제도에 관하여는 「통합도산법」 제120조 제2항에서 “「자본시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증권·파생금융거래의 청산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가 운영하는 청산결제제도는 그 참가자와 관련된 채무의 인수, 정산, 차감, 증거금 그 밖의 담보의 제공·처분·충당 그 밖의 청산결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청산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CLS시스템” 등 5개 시스템이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되어 있다(2006.8월 지정).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에서는 참가기관의 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참가기관간의 결제의 효력이 법적으로 보장됨으로써 결제완결성이 보장되고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은 「통합도산법」 제120조 제2항63)에 따라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결제완결성 보장을 받고 있다.

---

63) 통합도산법 제120조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증권·파생금융거래의 청산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가 운영하는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참가자와 관련된 채무의 인수, 정산, 차감, 증거금 그 밖의 담보의 제공·처분·충당 그 밖의 청산결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청산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II. 지급결제 관련 규정 등

### 1.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한국은행법 제81조).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을 운영하고,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시행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법 제28조 제10호)을 거쳐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을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한은금융망 운영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운영규정에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결제리스크의 관리,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세칙과 절차규정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sup>64)</sup>

개략적인 구성을 보면, 총칙에는 규정의 목적·정의규정과 함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목표로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였다. 한은금융망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취급업무·가입자격·전문의 처리·업무지속성 확보(BCP)·C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결제리스크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순채무한도제·사전담보제·결제부족자금의 공동분담제와 차액결제 대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그 밖에 지급결제제도의 감시에 관한 사항으로는 감시업무의 범위·감시대상 시스템의 분류·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요청 등을 규정하였다.<sup>65)</sup>

64) 한정미, 앞의 논문, 447쪽.

65)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해설」, 2009. 1, 26쪽.

## 2.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

이 절차는 본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이하 “세칙”이라 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지만, 신한은금융망의 가입기준과 결제리스크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

세칙 제4조에 따른 신한은금융망 가입기준의 규정을 보면, 신한은금융망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관은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기관으로서 ① 신한은금융망 가입신청일 직전 회계연도말의 경영비율(신설기관의 경우 신한은금융망 가입신청일이 속한 회계연도말의 예상비율)이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지도비율을 충족 할 것, ② 신한은금융망 가입신청기관의 예상 이용건수는 가입 이후 1년간 월평균 50건 이상일 것, ③ 전담인력은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사용자 2명, 단말기 사용자 2명 등 총 4명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제 2 절 주요국의 지급결제 관련 법제

### I. 서 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국, 미국 등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금융제도의 하부구조로서 각종 거래에 따른 경제주체들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가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하였으나, 일부 장외과생상품거래에 있어서는 청산결제제도가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금융위기의 리스크를 증폭시켜다고 평가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CCP(중앙청산기관)를 통하여 청산되지 않는 CDS거래에 따른 결제의 불확실성이 금융위기시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크게 증폭시킨 사례라 할 수

있다.<sup>66)</sup> 이에 따라 선진 각국에서는 지급결제체도의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각국의 지급결제 유형도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 예로 전 세계적으로 수표 사용 규모가 약 70% 감소한 것을 들 수 있다.<sup>67)</sup> 반면,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캐나다 국민들의 카드 지급결제가 두 배 증가하여 67%가 되었고, 전자지급결제 규모는 비현금 결제규모의 약 80%를 차지하였으며, 수표 이용은 37% 감소했다.<sup>68)</sup> 네덜란드는 실질적으로 수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은 2018년에 금지하기로 되어있다. 호주 등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추세를 대비해 대체적인 전략이 개발되었다.

< 표 - 7 > 주요국의 소액지급수단 사용비중(현금 제외-2007년 기준)

	수 표	전자자금 이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전자화폐
미 국	28.6	16.9	54.5	-
캐나다	14.8	20.0	65.2	-
영 국	10.7	40.0	48.3	-
프랑스	23.8	36.0	40.0	0.2
독 일	0.6	84.5	14.5	0.4

자료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미국의 P2P 전자자금이체 현황 및 정책과제”, 지급결제정보 제2010-2호, 2010. 3. 12, 2쪽.

66) 이병목, “지급결제리스크 관리체도의 운영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1. 4. 15, 54쪽.

67) Payments Industry Environmental Scan 2007-CPA, June 2007.

68) Global Payments: Trends, Opportunities, and Impact on the Canadian Payments Industry --TowerGroup. February 2008.



2010년 이후로 표준화와 경쟁이 증가하면서 지급결제의 상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10년간은 지급결제의 개요가 급격히 변화될 것이다. 지급결제서비스 회사들은 새롭고 혁신적인 지급결제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지급결제 가치사슬의 틈새시장을 더욱 개발하고 증가시킬 것이다. 국제 신용카드 회사들은 소매업체의 모든 지급결제의 경쟁을 불러일으키며 비신용(non-credit) 소매시장에 진입 할 것이다. 휴대폰 결제와 같은 신용 결제수단의 이용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sup>69)</sup> 앞으로 가장 흔한 소비자 결제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은 정부 규제 및 법률의 현대화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업체 및 신용 시장 진출업체에 적용되는 규율의 표준화, 그리고 지급결제 주주들과 사용자를 보다 많이 배려하는 등 보다 다양한 관리 체제를 마련하는 추세이다. 또한, 세계 경제는 국내외 지급결제의 효율성이 더욱 증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 무역이 증가하고 세계화가 됨으로써 국제지급결제의 수요가 증가시키고 있으며 기존의 국제지급결제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여러 국가들은 더욱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간 지급결제 가능하게 하는 국제 표준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70)</sup>

## II. 캐나다

### 1. 지급결제시스템과 관련 법제

#### (1) 지급결제법과 운영주체

캐나다는 연방법률에 의한 규제와 주법률에 의한 규제로 금융업무의 영역과 감독기관 및 감독방식이 달라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연방

69) CPA Competitive Landscape and Relevancy Position Paper Part I Market Research - CPA, November 2009.

70) 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CPA Payments Strategy Vision 2020", February 2010, p.2.



법률에 해당하는 「은행법(Bank Act, Trust and Loan Companies Act)」, 「신용협동조합법(Cooperative Credit Associations Act)」, 「보험회사법(Insurance Companies Act)」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독책임은 금융감독청에 부여되고 있으며, 주법률에 해당하는 「증권법(Securities Act)」은 주 증권위원회에 증권시장과 자본시장의 감독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캐나다의 지급결제시스템은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s Act ; CP Act)」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민간 지급결제기관인 캐나다지급협회(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 CPA)가 거액 및 소액결제시스템을 소유·운영하면서 해당 거래의 청산을 담당하고, 캐나다 중앙은행(The Bank of Canada)이 이에 따른 자금의 결제를 담당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캐나다의 거액결제시스템인 LVTS(Large Value Transfer System)는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과 차액결제 시스템을 결합한 혼합결제시스템이며, 소액결제시스템인 ACSS(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는 전자 및 장표기반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이연차액결제시스템이다.<sup>71)</sup>

CP Act에 따라 캐나다의 비예금 수취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예금수취기관이 제공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의 간접적인 이용자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sup>72)</sup>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의 변화에 대해서는 2001년 CP Act의 개정과 2003년 CPA의 신설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2001년 CP Act 이전, 지급결제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CPA의 회원의 자격을 갖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2001년 CP Act에서 CPA의 회원자격을 예금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확대하였다. 즉, CPA의 정식구성원으로 캐나다 중앙은행, 은행, 인가된 외국은행 등을 규정하고,<sup>73)</sup> 확대 구성원으로서 생명보험회사,

71) 진재석, “캐나다의 지급결제제도”,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금융결제원, 2008. 4, 85쪽.

72) 김자봉, 앞의 보고서, 33쪽.

73) CP Act §4(1)(a)-(d)

증권사, 신용협동조합, MMMF(Money market mutual fund) 등을 규정한 것이다.<sup>74)</sup> 따라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증권사, 보험회사 등이 CPA에 가입하여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단, 보험회사의 경우 거치연금(deferred annuity)상품<sup>75)</sup>을 통해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sup>76)</sup>

그런데 2003년 CPA의 신설규정으로 이 내용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우선, CPA의 규정의 의미를 보면, CP Act에 따라 CPA에 ① 납부 또는 지급결제 된 금액의 청산과 결제, 교환 등을 합의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의 설립 및 운영, ② 청산·결제 시스템과 CPA 지급결제 시스템 외 다른 시스템의 연계, ③ 새로운 지급결제방법과 해당 기술의 발전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위임하였다.<sup>77)</sup>

이러한 CP Act에 따라 CPA 이사회에서 2003년 제정한 CPA 규정 No.378)에서는 지급결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CPA의 ACSS 직접참가기관 요건으로는 캐나다 중앙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캐나다 중앙은행과의 대출약정 계약을 가지며, ACSS 지급결제 처리 건수 0.5%이상, 기술적·재정적 요구사항 등을 충족하도록 하였다.<sup>79)</sup>

이 규정은 ACSS의 직접 차액결제 참가기관이 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조건을 정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은행 및 예금수취기관이 아니면 충족시키기 힘든 수준의 것이며, 따라서 이들 조건은 지급결제시

74) CP Act §4(2)(a)-(h)

75) 거치연금은 연금수급권을 획득한 뒤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뒤 지급이 개시되는 연금을 말한다. 예컨대 확정연금, 종신연금, 정기생명연금이 이에 해당된다. 황선철,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업무 참가 확대에 따른 변화 및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금융결제원, 2009. 1, 36쪽.

76) 한정미,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제연구”, 법제연구 통권 제36호, 2009. 6, 450쪽.

77) 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CPA Payments Strategy Vision 2020”, February 2010, p.6.

78) 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By-law No.3-Payment Items and 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 <http://www.canlii.org/en/ca/laws/regu/sor-2003-346/latest/sor-2003-346.html>

79) 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By-law No.3 §26(a)-(d)

시스템의 직접참가를 사실상 은행 및 예금수취기관만으로 제한되도록 한 효과를 나타냈다.<sup>80)</sup>

한편, 이에 대한 예외로써 비은행 금융기관 중 MMMF(Money Market Mutual Fund)취급회사, 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ACSS 직접참가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sup>81)</sup> 이들 기관의 경우에는 대항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차액결제하도록 하고 있다.<sup>82)</sup>

## (2) 지급결제기관에 대한 감독

CP Act에서는 재무부의 CPA에 대한 일정한 감독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재무부가 CPA에서 제정한 규정 등(by-law, rule, standard)에 대하여 공익의 목적에 의하여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하거나<sup>83)</sup> 중요한 부분의 감독에 대하여 CPA 이사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sup>84)</sup>의 규정이 있다.

## 2. CPA의 ‘소액결제제도 vision 2020’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급결제제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지급결제서비스 공급자 및 시장진출 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캐나다의 지급결제체계는 지난 10년간 급속하게 발전해왔다. 이러한 추세를 인식하고 2008년 CPA는 장기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광범위한 활동에 착수하였으며, 이 전략은 청산·결제를 위한 CPA 체제가 계속해서 모든 소비자와 캐나다 국민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CPA의 ‘소액결제제도 Vision 2020’은 회원 및 주주, 세계의 지급결제협의체들이 참여한 연구 프로그램과 지급결제 산업의 필요성을 입증한 포괄적 협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구축하였다. 비전 2020은 캐나다 지급결제제도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캐나다 사회의 최우선

80) 김자봉, 앞의 보고서, 36쪽.

81) 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By-law No.3 §32

82) 한정미, 앞의 논문, 451쪽.

83) CP Act §19.3(1)

84) CP Act §19.3(2)

전략들을 반영하여 CPA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CPA 이사회의 우선적인 전략을 기반으로 다섯 가지 주요 분야로 구축되었다.<sup>85)</sup>

< 표 - 8 > 소액결제제도 비전 2020 개관

전자지급결제의 발전을 위한 지원	전자지급결제의 도입과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적이고 창의적이며 안전하고 건전한 체제의 확립
지급결제의 효율성 증대	CPA 청산·결제 시스템을 위한 자동처리(STP)능력과 상호운용성의 향상가능성 확인, 비용절감을 통해 청산·결제 시스템과 CPA 회원, 지급결제 이용자를 위한 효율성 증대
CPA 법체제의 현대화	청산에 대한 새로운 합의와 사업모델, 신흥시장 참여자 및 지급 결과물(payment products)을 반영하고 더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CPA 법적 체제(법률과 조례, 질서)의 현대화
CPA의 교환 및 청산, 결제 기술의 향상	청산·결제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키고, 전자 지급결제의 발전에 부응하는 다년간의 기술 전략의 개발 및 구현을 통해 청산·결제를 위한 CPA의 기술과 네트워크, 적용프로그램의 견고함과 융통성을 향상
부가서비스의 확장	CPA의 청산·결제시스템 관련 당사자들과 이용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식 및 정보 서비스를 강화

자료 : CPA, “CPA Payments Strategy Vision 2020 Overview”, “CPA Payments Strategy Vision 2020”, February 2010, p.3.

85) 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CPA Payments Strategy Vision 2020”, February 2010, p.2.

한편, CPA의 소액결제제도 비전 2020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및 계획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표 - 9 > 소액결제제도 비전 2020의 전략 및 계획

목 표	세부목표	전략 및 계획
전자지급 결제의 발전을 위한 지원	서면지급 결제에서 전자기반 지급결제로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가하는 전자지급결제시스템 상용화를 가로막는 장애물 검토 및 전환기회의 모색</li> <li>• 사전대책을 위한 체제 수립, 전자지급결제 시스템의 이용 촉진</li> <li>• CPA와 회원으로부터 이미지 기술 투자를 위한 기회 확보</li> <li>• 자동이체와 전자정보 지급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새로운 잠재고객 파악 및 확인</li> </ul>
	CPA 전자 지급결제 시스템의 발전	변화하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 대면하는 매장(POS) 거래와 원거리 매장 판매</li> <li>• 전자 계산서 지급결제 시스템 제도</li> </ul>
	신흥 지급결제 수단의 지원시스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롭고 획기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의 청산 및 결제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과 규율을 수립 (예 : 모바일 결제 시스템, 전자칩카드 적용)</li> </ul>
지급결제의 효율성 증대	효율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다 나은 송금데이터기준을 수립</li> <li>• 소매 및 도매 납부 시스템(retail and wholesale payments)을 위해 자동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와 연관된 기회와 비용을 모색</li> </ul>

목 표	세부목표	전략 및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인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청산 및 결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기회를 찾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속도 향상(예 : 지속적으로 적합성과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사례와 비교하여 ACSS모델 검토)</li> </ul>
	국제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기준을 국제기준과 연계 수립(예 : 협회 기준을 ISO(국제표준화기구) 20022와 EPN 820 등과 연관시켜 수립)</li> <li>• 회원들과 협력하여 국제적으로 상호운용을 위해 보다 나은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제포럼에 참석(예 : ISO와 SWIFT(금융 텔레커뮤니케이션 협회), GPF(종합적인 보호 결합) 등)</li> </ul>
CPA 법체제의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산 및 결제시스템의 운영 위험성 증가에 따라 현재의 모델 및 규정을 검토하고 업데이트 함</li> <li>• 법률 제도에 산업의 동향을 반영하고 회원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업데이트 함</li> <li>• 객관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소매지급결제 청산 시스템에(retail payments clearing system)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델을 평가</li> <li>• 대중을 위한 상담절차의 효율성을 향상</li> <li>• 협회와 회원기업, 주주들에게 보다 원칙에 기반한 법률을 적용시킴으로써 취할 수 있는 이득을 평가함</li> <li>• 시장에 개선된 규정의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모델을 발달시킨다.</li> <li>• 현재의 회원기업 기준과 관리 모델, 준수 체계, 현 권한 하에서 접근 가능한 재정적인 지원과 협회 회비 등을 검토하고 권고사항을 수립</li> </ul>

제 3 장 지급결제 관련 법제

목 표	세부목표	전략 및 계획
CPA의 교환 및 청산·결제 기술의 향상	협회의 거래와 청산·결제에 관한 기술 시스템과 응용 프로그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PA의 장기적인 기술 전략과 계획을 구축하고 실행</li> <li>• 납부시스템 업체들의 변화하는 필요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최우선 순위의 기술시스템 계획안을 착수</li> <li>• 정보보안 운영프로그램을 발달시켜 이를 통해 협회의 기술 시스템 보안을 강화</li> </ul>
부가서비스의 확장	업계간의 소통 도모 및 쟁점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PA는 업계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당사자의 공동관심사를 포착하고 효과적인 방법 개발 (예 : CPA 또는 회원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사안을 다루는 지급결제시스템 포럼과 주주들 간 제휴)</li> </ul>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교육과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PA는 지급결제시스템과 규정, 청산 및 결제 시스템에 대한 내부의 전문기술과 역량을 강화</li> </ul>

자료 : CPA, “CPA Payments Strategy Vision 2020 Overview”, “CPA Payments Strategy Vision 2020”, February 2010, p.7~11의 내용 요약·정리.

### III. 호 주

#### 1. 지급결제시스템과 관련 법제

호주의 소액결제시스템은 수표 등 장표거래를 처리하는 APCS(Australian Paper Clearing System), 은행 간 전자자금이체를 처리하는 BECS(Bulk



Electronic Clearing System), ATM·POS 등에서의 직불카드 거래를 처리하는 CECS(Consumer Electronic Clearing System) 및 전자납부 거래를 처리하는 BPAY로 구성되어있다.<sup>86)</sup> 호주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호주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 ASIC)<sup>87)</sup>와 호주금융감독청(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 APRA)에서 맡고 있다. ASIC는 시장의 건전성 감독, 금융소비자보호, 그리고 투자은행 및 금융회사 등과 같은 금융기관의 규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APRA는 은행, 보험회사, 신용카드사 등에 대한 인허가업무 및 감독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과 인허가,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ASIC와 APRA 이외에 지급결제 시스템 및 통화정책에 대한 직접책임은 중앙은행이 지고 있다.

호주는 「중앙은행법(Reserve Bank Act)」에 따라 호주준비은행을 설립(1960년)하고, 이 법에서 통화신용정책과 지급결제제도의 구분, 호주 중앙은행 내의 업무수행 이사회<sup>88)</sup>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이 법에서는 호주 국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급결제정책 수행, 금융시스템의 위험 통제,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것을 규정하여 중앙은행의 권한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sup>89)</sup>

지급결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1998년 「지급결제시스템규제법(Payments Systems Regulation Act ; 이하 ‘PSRA’라 한다)」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PSRA는 중앙은행에 지급결제시스템 감시권한을 부여하고,

86) 김서영, “주요국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구조 비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2011. 7, 45쪽.

87) 2010년 4월에 청산 및 결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88) 호주 준비은행은 준비은행이사회(Reserve Bank Board)와 지급결제제도 이사회(Payments System Board : PSB)라는 내부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89) Reserve Bank Act 1959, Sections 10, 10B.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지정,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준,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분쟁의 조정,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의 의무, 가치저장형 지급수단에 대한 규제 및 준비은행의 자료요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으며,<sup>90)</sup> 호주중앙은행이 결제시스템 참가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정할 권한 및 분쟁해결에 관한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sup>91)</sup> 결제시스템 참여여부는 중앙은행이 공익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이 결제시스템 참가를 거부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은 연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sup>92)</sup> 중앙은행은 결제시스템의 기준을 위반하는 참여자들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고, 행정지도에 불응한 경우 적절한 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sup>93)94)</sup>

## 2. 소액결제시스템에 관한 규정

PSRA 이외에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하여 호주지급결제협회(Australian Payments Clearing Association; APCA)<sup>95)</sup>의 지급결제 관련 규정들이 있다. 이 규정들은 협회차원의 자치법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자치법규라고 하여 그 효과가 미미한 것은 아니고, APCA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들을 준수하여야 하고, APCA의 운영 및 규정제정에 중앙은행의 참여도 있으므로

---

90) PSRA Division 2.

91) PSRA Division 3.

92) PSRA Division 3 Subdivision A, B.

93) PSRA Division 6

94) 김희철, “미국·호주·영국의 지급결제 관련 법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1. 7. 27, 21쪽.

95) APCS, BECS, CECS는 호주지급결제협회에서 운영한다. APCA는 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이 지분을 보유하는 비영리법인으로 1992년 설립되었다. APCA는 시스템별 관리위원회를 통해 각 시스템의 청산과 관련된 각종 규정, 절차, 표준 등을 제정·운영하며, 운영비용은 각 회원사(현재 80개 금융기관)가 거래량에 비례하여 부담하고 있다. 김서영, 앞의 자료, 45쪽.

지급결제 운영상의 실무적인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타방에게 화폐가치의 이전이 가능한 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그 청산 및 결제를 위하여 동 시스템의 참여기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APCA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야 참여자가 될 수 있고, APCA의 엄격한 관리·감독의 대상이 된다.<sup>96)</sup>

은행, 주택조합(building societies), 그리고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은 지급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개방형 시스템(open system)<sup>97)</sup>의 참여기관이고, 카드회사 등은 본인이 직접 지급서비스의 제공자가 아니라 카드사의 고객들이 가치를 타방에게 이전시키는 주체라는 점에서 폐쇄형 시스템(close system)<sup>98)</sup>의 참여자로 구분하고 있다.<sup>99)</sup>

APCA가 정하고 있는 몇 가지 규정을 정리하면 첫째, 수표 등 장표 기반 지급거래의 교환·결제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993년 12월 장표 청산시스템을 도입하고, ‘장표청산시스템 규정(Regulation for Australian Paper Clearing System)’을 두고 있다. 이 시스템의 참가기관은 교환 및 결제과정의 참가 형태에 따라 Tier 1A,<sup>100)</sup> Tier 1B, Tier 2의 형태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참가기관의 채무불이행이나 부도의 발생, 다른 참여기관의 부도발생을 의심할 만한 사유에 대하여 참가기관들이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1994년 12월부터 시행된 ‘대량전자청산시스템에 관한 규정(Regulations for Bulk Electronic Clearing System)’이 있다. 이 규정은 입·출금거래를 처리하는 대량전자거래청산시스템으로 대량의 소액전자거

96) 김희철, 앞의 자료집, 20쪽.

97)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고 다수의 거래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8) 사용지역이 협소하거나 단일 혹은 제한된 목적에 이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99) 김희철, 앞의 자료집, 21쪽.

100) 특정지역에서 2% 이상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거나 전국에서 0.5%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Tier1A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래에 주로 사용되며, APCA 내에 대량전자청산시스템 관리위원회가 시스템 운영을 주관하고 있다. 대량전자청산시스템의 운영위원회는 대량전자청산시스템 운영규정과 운영절차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참가기관에 대하여 감독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참가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참가기관들이 정한 합의에 따라 또는 참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참가기관의 부도 등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참가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셋째, 2000년 12월부터 시행된 ‘소비자전자청산시스템에 관한 규정(Regulations for Consumer Electronic Clearing System)’이 있다.<sup>101)</sup> 이는 직불카드 기반의 ATM 및 EFTPOS 거래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참가기관의 자격은 호주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소비자 전자 결제를 위한 CECS 매뉴얼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기술, 운영, 그리고 보안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고급청산시스템 규정(Regulations for High value clearing system)’이 있다. 참가기관은 손실, 비용 등에 있어서 지급책임을 지고(Part4), 청산결제를 위한 기술수준 및 운영기준을 상시 유지하여야 하며(Part 5), 시스템 참가비(\$25,000) 및 운영비, 추가 징수되는 각종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진다(Part6).<sup>102)</sup>

### 3. 소액결제 발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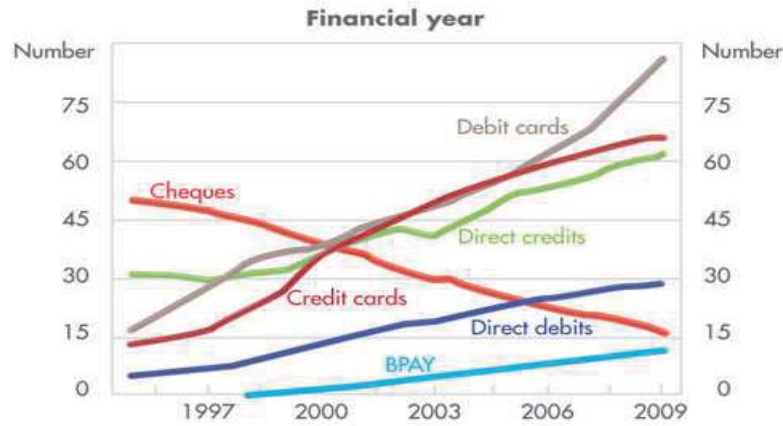
호주의 비현금 결제 서비스는 다양하고, 호주 소비자와 비즈니스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다. 2010년 6월까지 1년 동안 평균 286건의 비현금 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sup>103)</sup>

101) 2010년 3월 현재 17개 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김소이, 앞의 자료, 73쪽.

102) 김희철, 앞의 자료집, 24쪽.

103) 호주중앙은행, 「2010 지급시스템이사회 연차보고서」, 2010, 8쪽.

&lt; 그림 - 6 &gt; 지급수단별 증감추이



자료 : APCA, 2011. 4.

위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주는 지속적으로 지급결제산업의 전자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급결제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단별 사용 증감을 보면, 수표사용의 감소 및 대체결제수단의 등장으로 인하여 소액지급결제제도의 재정비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성, 안전성, 효율성, 편의성 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사업영역확대, 국제기준에 적합한 시스템 제공, 결제 리스크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104)</sup>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호주의 지급결제산업 자율규제기관인 지급결제협회(APCA)는 2008년 12월 ‘소액결제 발전전략(Low Value Payments Roadmap)’을 수립하였고, 2011년 3월 현재 이를 보강한 발전전략(Low Value Payments Roadmap : Update on Progress)이 추가적으로 발표되었다. 동 발전전략의 핵심내용으로는 ① 호주 소매 지급결제 방식의 인프라와 서

104) 김희철, 앞의 자료집, 17쪽.

제 3 장 지급결제 관련 법제

비스의 장래 점진적인 발전에 대한 전망 제시, ② 업계 프로젝트 활동 안내, ③ 주요 투자와 지급결제 서비스 결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지급결제 시스템 관련당사자와 서비스 제공업자 원조, ④ 지급결제 시스템 이용자와 여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업계 방향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전략의 추진시기는 아래 그래프에 나타나 있다.

< 그림 - 7 > 소액결제발전전략 추진시기

간트차트	2008	2009					2010					2011																			
	Jan-Jun					Jul-Dec					Jan-Jun					Jul-Dec															
	N	D	J	F	M	A	M	J	J	A	S	O	N	D	J	F	M	A	M	J	J	A	S	O	N	D	J	F	M	A	M
소액 지급결제 발전 지침	[Progress bar]																														
<b>A 네트워크 정비</b>	[Progress bar]																														
A.1 네트워크 개선(전술적)	[Progress bar]																														
A.2 정보처리 상호 운용에 관한 최소 요구사항(전술적)	[Progress bar]																														
A.3 장기 네트워크 개발(전략적)	[Progress bar]																														
<b>B 결제 과정</b>	[Progress bar]																														
B.1 신 BECS 결제 시스템(전술적/전략적)	[Progress bar]																														
B.2 확장된 결제 능력(RBA프로젝트) (전략적)	[Progress bar]																														
<b>C 거래 참고 정보 및 결제 과정</b>	[Progress bar]																														
C.1 국제 및 국내 기준 지도제작 및 차이 분석(전략적)	[Progress bar]																														
C.2 직접적인 지급결제에 대한 개선(전술적인)	[Progress bar]																														
C.3 신 기준 지급 모형의 실현 가능성(전략적)	[Progress bar]																														
<b>D 기타</b>	[Progress bar]																														
D.1 용지 지급결제 시스템의 미래 (전략적)	[Progress bar]																														

자료 : APCA, “Low Value Payments Roadmap : Update on Progress”, 2011. 3, p.3.

결제시스템이사회(Payments System Board, PSB)의 공공 정책 감독과 함께, 경쟁, 접근성 및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업계 노력이 계속돼 왔다. 호주 경제는 경쟁적인 호주 결제시스템을 통해 상대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누려왔고, 이것이 지속되는 것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업계의 헌신과 공공 정책 감독이 존재한다.

뱅킹 서비스의 보다 폭넓은 범주 중에서 결제서비스의 특징적인 성격은 바로 서비스의 네트워크화 된 성격이다. 이는 결제서비스 제공업

체들이 자사 고객들에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는 와중에도, 제공업체들 사이에서 결제가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업체들 간의 공조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호주에서 결제 인프라는 대부분 사적으로 대형 및 소형 금융 기관, 주요 소매점, 전문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와 Visa, Master Card, BPAY 및 PayPal 같은 결제 방식 운영업체들에 의해 소유, 유지 및 개발된다.

핵심 경제 인프라의 공급에 관한 경쟁업체들 간의 공조 필요성은 결제 부문의 경쟁, 혁신 그리고 접근성을 포함, 결제 서비스의 광범위한 정책 감독으로 이어졌다. 1998년 이후, 호주지급은행의 결제시스템 이사회(Payments System Board ; PSB)가 이 기능을 수행해왔다. 호주 지급결제협회와 마찬가지로, PSB는 장기적으로 결제 부문에서 효율성과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경쟁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주안점을 두고 있다. 2010년 결제시스템이사회 연차보고서는 경쟁, 혁신 및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업계의 노력에 대한 요약본을 제공하였는데, 연차보고서에서 규명한 주요 사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첫째, 2009년 국제 카드 결제 도구에 대한 경쟁업체인 EFTPOS 시스템을 위한 비즈니스 개발 도구로서의 호주 EFTPOS 결제 Ltd. 설립

둘째, BPAY에서 운영하게 될 신규 시스템인 MAMBO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은행들의 약속으로서, 이는 다른 무엇보다 카드, 금융 기관을 통한 인터넷 “pay anyone” 서비스, 그리고 PayPal, Paymate, 및 POLi 같은 직접적인 서비스 이외의 온라인 결제에 대해 새로운 옵션을 제공한다.

셋째, 2011년 동안 APCA와 협회 회원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공동 결제 네트워크는 현재 협회가 진행 중인 기타 접근성 개선 노력과 함께, 결제 서비스 부문의 경쟁업체들에 대한 접근성 방식을 강화할 것이다.<sup>105)</sup>

105) APCA, “Submission to the Senate Standing Committee on Economics Inquiry into



## IV. 영 국

### 1. 지급결제시스템과 운영주체

영국은 지급결제시스템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은행 간의 지급결제의 경우와 증권결제시스템(SSSs) 또는 청산소시스템(CCPs)을 통하는 경우이다.<sup>106)</sup> 이에 따라 은행 간의 지급결제에 대해서는 「은행법(Banking Act)」<sup>107)</sup>에서, SSSs나 CCPs를 통한 결제에 대하여는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 FSMA)」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은행법」의 제정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권한을 크게 강화하였다.<sup>108)</sup>

한편,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은 주요 은행간 지급결제시스템으로 거액결제시스템인 CHAPS(Clearing House Automated Payment System)와 소액지급결제시스템으로 은행계좌간 전자자금이체를 담당하는 BACS(Bankers Automated Clearing Services), 수표 및 장표기반 입금이체를 담당하는 Cheque and Credit Clearings로 구분할 수 있다.<sup>109)</sup>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은 APACS(Association for Payment Clearing Service) 산하의 독립법인들에 의해 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APACS의 모든 회원들 즉,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서비스시장법」에 의한 인가를 요하고 있다.

이와 같은 APACS회원의 자격요건으로는 영란은행에 결제계좌를 가지고 있을 것, EU 또는 유럽경제지역의 금융기관일 것, 기술적인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것, 가입비와 분담금을 지급할 것 등을 제시하고

---

Competition within the Australian banking sector”, 2010. 11. 30, p.4.

106) 김희철, 위의 자료집, 26쪽.

107) 전문은 [http://www.opsi.gov.uk/acts/acts2009/pdf/ukpga\\_20090001\\_en.pdf](http://www.opsi.gov.uk/acts/acts2009/pdf/ukpga_20090001_en.pdf) 참조

108) Banking Act Part 5.

109) 이찬웅,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2007. 7, 56쪽.

있으며, 회원은 BACS의 청산과정을 통해 발생한 은행 간 채무를 결제할 책임이 있다.

## 2. 「은행법」과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권한<sup>110)</sup>

최근 영국의 대형 모기지 금융기관이었던 Northern Rock Bank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하여 영란은행의 감독기능 부재, 결제시스템 감시기능의 미흡, 비효율적인 부실은행 정리제도 등 현행 금융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sup>111)</sup> 따라서 「은행법」에서는 제2조에 금융안정을 추가하여,<sup>112)</sup> 영란은행의 목적을 통화가치안정 및 금융안정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은행법」은 제5장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181조에서 영란은행에 지급결제시스템을 감시하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였다. 다만,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재무부가 지정하며,<sup>113)</sup> 영란은행은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하였다.<sup>114)</sup> 이는 기존의 영란은행, 재무부, 금융감독청의 3개 기관이 분담하여 수행하여온 감독업무의 실효성 문제와 시스템상의 문제발생에 따른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에 대한 수정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란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원칙, 규정 및 절차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sup>115)</sup> 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내규에 대해서도 제·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영기관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영란은행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였다.<sup>116)</sup>

110) 한정미,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제연구”, 법제연구 통권 제36호, 2009. 6, 456-457쪽.

111) 박진호, “최근 영국의 금융시스템 및 통화정책 운영방식 개편과 시사점”, 한국은행 조사국, 2009. 4, 1쪽.

112) Banking Act part 7 Miscellaneous : “After section 2 of the Bank of England Act 1998(functions of court of directors) insert 2A Financial Stability Objective”

113) Banking Act §184.

114) Banking Act §188(2).

115) Banking Act §189

116) Banking Act §190(1)(2)



또한, 구체적인 감독사항에 대해 규정하면서<sup>117)</sup>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 영란은행의 규정위반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벌금부과 등의 형태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감독규정 위반이 금융시스템 안정에 위협이 되는 경우 해당 결제시스템 운영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118)</sup>

다만, 이 법으로 인하여 금융감독청의 감독기능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 증권·의 청산 및 결제시스템, 금융상품거래소 등에 대한 감독기능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여,<sup>119)</sup> 「은행법」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sup>120)</sup>

### 3. 지급결제 서비스 규정

영국은 2009년 ‘지급결제 서비스 규정(Payment Service Regulation 2009 ; PSR)’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EU의 ‘Payment Service Directive’의 수용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며, 은행뿐만 아니라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에 적용되도록 하였다.<sup>121)</sup>

PSR은 지급결제에 참여하는 기관의 행동지침에 준하는 것으로, 참가기관에서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내부적인 통제시스템을 갖출 것,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규정을 준수 할 것 등을 정하고, 이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을 FSA의 관할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감독기관으로서의

---

117) Banking Act §191(1)-(3)

118) Banking Act §191(4)

119) Banking Act §192

120) 기타 지급결제서비스와 관련된 법률로는 1882년 환어음법(Bills of Exchange Act), 1957년과 1992년 수표법(Cheques Act), 1996년 규제완화(환어음)명령(Deregulation (Bills of Exchange) Order)가 있고, EC의 결제완결성에 관한 지침(EC Settlement Finality Directive)를 반영한 ‘1999년 금융시장 및 파산(결제완결성) 규정(Financial Markets and Insolvency(Settlement Finality) Regulation’이 있는데 이 규정에서는 영란은행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만 ‘금융시장 및 파산(결제완결성) 규정’에 의해 보호되도록 규정하였다. 이찬웅, 앞의 논문, 58쪽.

121) PSR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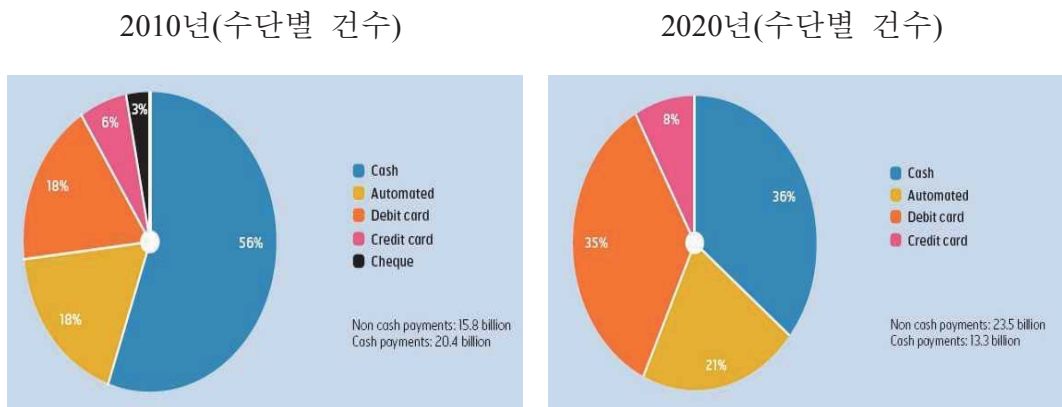
FSA의 의사결정과정 등 감독기관의 투명성을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sup>122)</sup>

#### 4. 국가 지급결제 발전계획

영국의 민간 자율기구인 지급결제위원회(Payments Council)<sup>123)</sup>는 2008년 5월 ‘국가지급결제 발전계획(National Payments Plan ; NPP)’<sup>124)</sup>을 마련하였다.

이 중 특징적인 것은 영국 내의 개인 수표 이용규모의 급속한 감소와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급속한 증가를 반영하여 2016년에 수표폐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위한 대체지급수단의 개발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 그림 - 8 > 영국 지급결제수단별 비중



Payment Council, 「Updating the National Payments Plan A consultation for the 2011 Review of the NPP」, 2011, p. 12-13.

122) 김희철, 앞의 자료, 28쪽.

123) 지급결제위원회(Payments Council)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금융기관 등이 참가하는 민간 회원제 조직으로 2007년 3월에 설립되었다. 영란은행은 지급결제위원회와 정기적으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은행서비스 담당이사가 동 이사회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다.

124) Payments Council, “National Payments Plan: Setting the strategic vision for UK payments”, 2008. 5.

제 3 장 지급결제 관련 법제

또한, 지급결제위원회는 지급결제수단의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모바일 지급수단이나 지문인식을 통한 결제수단 등 다양한 대체지급수단의 개발을 추진해나갈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08년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표 - 10 > 영국의 부문별 수표 이용규모 및 대체 지급수단

구 분	이용건수 (백만건)	대체 지급수단
P2P	99	· Faster Payments, 선불카드, 모바일 계좌이체
P2B	136	· 직불·신용카드, 자동이체, Faster Payments, 전자금융 서비스 확대 등
소매점, 여행, 여가 분야 소비자 지급	175	· 직불·신용카드, Faster Payments, 모바일 계좌이체, 모바일카드, 선불카드
신용카드 대금납부	81	· Faster Payments, 직불카드, (납부자) 자동이체
기타 소비자 금융 거래	74	· Faster Payments, 직불·신용카드, (납부자) 자동이체 등
정기 요금납부 (공과금, 지방세 등)	96	· Faster Payments, 직불·신용카드, (납부자) 자동이체 등
수표이용 현금인출	60	· 카드 이용 ATM 또는 창구 출금
급여 및 개인연금	32	· BACS 대량입금, Faster Payments, CHAPS, 선불카드
배당금	22	· BACS 대량입금, Faster Payments, CHAPS, 전자상품권(virtual voucher)
기타 기업-개인간 거래(환불, 보험계약, 상금 등)	74	· BACS 대량입금, Faster Payments, CHAPS, 선불카드, 전자상품권

구 분	이용건수 (백만건)	대체 지급수단
기업-개인간 정기거래, 정부기관 지급거래	534	· BACS 대량입금, Faster Payments, CHAPS, 선불카드, 전자상품권

자료 : 김정규, “호주·영국의 지급결제 관련 발전전략”,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1. 7. 27, 80-81쪽.

그 밖에도 지급결제위원회는 금융기관 계좌번호 양식의 표준화, 모바일 결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의 필요성, 비접촉식 선불카드의 확대에 따른 표준안 마련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항을 계획하고 있다.<sup>125)</sup>

## V. 미 국

### 1. 지급결제시스템과 운영주체<sup>126)</sup>

미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와 The Clearing House Payments Company LCC 등 민간 지급결제기관이 다방면에 걸쳐 경쟁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은 연방준비제도가 운영하는 실시간 총액결제 시스템인 연방전신망(Fedwire Funds Service ; Fedwire)과 은행간 지급결제기관인 PaymentsCo가 운영하는 CHIPS(Cleaning House for Interbank Payment System)가 있으며, 연방준비제도는 민간 지급결제기관이 효율적으로 차액결제를 할 수 있도록 NSS(National Settlement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액결제시스템은 연방준비제도와 민간 지급결제

125) 이에 대한 상세는 김정규, “호주·영국의 지급결제 관련 발전전략”,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1. 7. 27, 84-86쪽 참조.

126) 한정미,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제연구”, 법제연구 통권 제36호, 2009. 6, 459쪽.

기관이 각각 운영하는 자동결제기관(ACH)<sup>127)</sup>인 FedACH와 EPN, 수표 시스템, 카드 네트워크 등이 있다.<sup>128)</sup>

미국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은 주·연방법, 규정(regulation), 판례 등에 의하여 규율되며, 구체적으로 Fedwire를 통한 지급거래 즉, 대량자금이체 또는 금융기관 간의 자금이체는 통일상법(Uniform Commercial Code)의 제4A편(Funds Transfers)를 구체화한 연방준비제도의 Regulation J<sup>129)</sup>가 적용된다. Regulation J는 자금양도인과 자금양수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Fedwire를 통한 이체의 절차,<sup>130)</sup> 지급의 완결성,<sup>131)</sup> 준비은행의 책임<sup>132)</sup>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ACH,<sup>133)</sup> ATM (Automated Teller Machine), POS(Point Of Sale) 단말기를 이용한 자금이체 등 소비자 자금이체는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 of 1978 : EFTA)<sup>134)</sup>과 연방준비제도의 Regulation E<sup>135)</sup>에 의해 규율된다.

한편, 전통적으로 미국은 유럽에 비해 여러 지급수단중 수표의 사용 비중(28.6%)이 높고 전자자금이체 사용(16.9%)은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 수표의 사용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타 주요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sup>136)</sup>

---

127) ACH(Automated Clearing House)서비스에 대한 상세는 백미연, “미국의 ACH서비스 제공현황”,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2006. 10. 참고

128) 진재석, “미국의 지급결제제도”,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금융결제원, 2008. 4, 70쪽.

129) 12 C.F.R. pt. 210. Collection of Checks and Other Items by Federal Reserve Banks and Funds Transfers through Fedwire를 Regulation J라 한다.

130) 12 C.F.R. §210.21-210.34

131) 12 C.F.R. §210.36.

132) 12 C.F.R. §210.38.

133) ACH는 NACHA 규약(NACHA Operating Rules)이 반영된 연방준비제도의 OC No.4 (Automated Clearing House Items)와 EPN의 규약(EPN Operating Rules)도 적용된다.

134) Title IX of Pub. L. No. 95-630(1978), 15 U.S.C. § 1693 et seq.(1982).

135) 12 C.F.R. pt. 205. Regulation E on Electronic Fund Transfers

136)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미국의 P2P 전자자금이체 현황 및 정책과제”, 지급결제 정보 제2010-2호, 2010. 3. 12, 2쪽.

미국의 P2P 전자자금이체가 부진한 것은 유럽에 비해서 전자자금이체 서비스의 도입이 늦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금지급방식의 이용 관행 차이, 전자자금이체 사용에 대한 유인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2. 금융규제개혁법

미국 정부는 2009년 6월 17일 금융개혁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상·하원의 독자적인 입법과정을 거쳐 상호 합의된 단일법인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 2010년 7월 22일 Obama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sup>137)</sup> 이 법은 총 16장 541절로 구성(총 848페이지)된 거대한 법률로, 대부분의 장들이 고유한 법명을 가지는 유니버스법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법을 통하여 9개 법을 신설하고 50여개 법을 개정(폐지)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후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인 미 연방준비제도(FRB) 및 여타 금융감독기관에게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권한을 새로이 부여하는 등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에 관한 별도의 감시법률이 금융개혁법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다.

「금융개혁법」은 미국의 금융감독체계를 대폭 개편한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는데, 금융감독기구의 개편내용 중 대표적인 기관으로 제1장에서 금융안정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 FSOC)를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sup>138)</sup> FSOC는 금융안정성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비은행 금융기관도 감독할 수 있게 하였으며, 주요 금

137) U.S. Senate, Brief Summary of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http://banking.senate.gov/public/\\_files/070110\\_Dodd\\_Frank\\_Wall\\_Street\\_Reform\\_comprehensive\\_summary\\_Final.pdf](http://banking.senate.gov/public/_files/070110_Dodd_Frank_Wall_Street_Reform_comprehensive_summary_Final.pdf)(2010. 8. 19) 참조.

138) Dodd-Frank Act §111.

금융규제기관에 대한 거시 건전성 규제, 투명성 감독 및 종합적인 금융 감독을 통하여 금융시스템에 대한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고 감시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였다.

FSOC는 금융업종에 관계없이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대형 금융회사들을 FRB의 특별감독을 받는 중요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sup>139)</sup>

한편, FSOC는 재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중요 금융규제기관으로 구성 되는데, 중요 금융규제기관에는 재무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통화감독청(OCC), 금융소비자보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연방주택금융청(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전문신용협동조합청이사회, 대통령이 지명하는 보험 전문가가 포함된다.<sup>140)</sup>

### 3. 지급 및 청산결제 감독에 관한 법률

#### (1) 제정의 의미

「금융개혁법」은 금융시스템 내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고 연방준비제도가 제공하는 금융 안정성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임은 이미 설명하였다. 따라서 연방정부에 리스크 관리에 관한 통일된 표준을 마련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및 그러한 기관의 지급 및 청산결제에 관한 감독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즉,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시장 유틸리티(FMU ; financial market utilities)의 유동성 강화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

139) FSOC는 투표위원 3분의 2이상 의결로 비은행 금융기관 중 FRB의 감독을 받을 중요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총 자산 500억 달러 이상의 대형 은행지주회사 및 저축조합지주회사 등 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FSOC의 의결 없이 FRB가 중요 금융기관을 지정한다. Dodd-Frank Act §113(a),(b).

140) 정대, “은행규제 개편의 방향 : 주요국 은행규제 개편의 비교법적 검토”, 은행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0. 10. 8, 12쪽.



이러한 연방정부의 지급 및 청산결제에 관한 감독의 역할을 규정한 것이 「금융규제개혁법」 제8장에 따른 「지급 및 청산결제 감독에 관한 법률(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upervision Act of 2009 ; PCSSA)」이다.

## (2) PCSSA상의 주요 개념 및 예외

PCSSA에서 지급 및 청산결제란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의 완결을 위하여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sup>141)</sup>

또한, 이 법에서 금융거래에는 펀드 이체, 증권(securities) 및 계약(future contracts), 채구매 계약, 외환 계약, 금융파생계약, 스왑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급 및 청산결제 행위에 증권의 청약 또는 판매, 견적(quotation) 또는 오더 기입(order entry) 등과 같은 사전 거래 및 사전이행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up>142)</sup>

특히, PCSSA는 FMU와 금융기관의 지급 및 청산결제를 구별하여 규제하여, 금융기관이 행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 및 청산결제에 대하여 PCSSA에 따로 정의된 FMU가 아니어서 규제되지 않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FMU란, 금융기관간 또는 금융기관과 개인간 이체, 청산, 결제, 납부, 증권 또는 그 밖에 다른 금융 거래를 위한 다자간 시스템을 운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특정의 등록된 거래 주체(거래소)와 등록된 데이터 저장소로서 CFTC의 감독 대상이 되는 기관은 FMU에서 제외되며, SEC의 감독 대상이 되는 등록 계약 시장 및 스왑 데이터 저장소, 증권거래소 및 스왑기관(swap execution facilities), 브로커, 딜러, 이체 대리인, 투자회사, 선물중개회사(future commission merchants)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중개인도 역시 제외 된다.<sup>143)</sup>

---

141) PCSSA §803

142) Donna Nordenberg, “Dodd-Frank Act, Title VIII : Supervision of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ivities”, CRS Report for Congress, 2010. 12. 10, p.17.

143) Donna Nordenberg, Ibid., p.17.



PCSSA에서 금융기관(FI; Financial Institution)이란, 예금취급 금융기관(depository institution), 외국은행의 지부 또는 대리인, 브로커 및 딜러, 선물중개회사, 그리고 그 밖에 본질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금융행위와 관련 있는 행위를 하는 회사를 포함하여, 여러 법령에 의해 정의되어 있는 특정된 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PCSSA에서 금융기관이란 CFTC와 SEC의 감독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DCOs 및 CAs에 해당하는 지정청산기관(designated clearing entities)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본다면, PCSSA의 규제 내용은 일반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FMU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제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PCSSA에서 감독기관이란, 연방준비은행과 증권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정되어 FMU에 대해 우선적 관할을 가진 연방 기관을 말하는 것이며, 등록 청산기관에 대해서는 SEC, 등록 파생청산기구에 대해서는 CFTC를 의미한다.

한편, 지정 행위(designated activity) 또는 지정 FMU이란, FSOC가 「금융규제개혁법」 제804조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정한 지급 및 청산결제행위 또는 유틸리티를 말한다. 여기에서 지정청산기관(designated clearing entity)이란, 등록 파생청산기구 또는 등록 청산기관인 지정 FMU를 말하는 것이다.

그 밖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는, FMU의 기능 또는 지급 및 청산결제 이행의 실패 또는 중단(disruption)이 금융기관 간 또는 시장간 상당한 유동성 또는 신용 문제의 위험을 창출하거나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미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3) FSOC의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지정

의회는 PCSSA를 통해 FSOC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FSOC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하거나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은 FMU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FSOC가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지급결제를 지정하게 되는데,<sup>144)145)</sup>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결정을 위해서는 ① 해당 유틸리티 또는 지급 및 청산결제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의 총 재정 가치, ② 해당 유틸리티 또는 금융기관의 상대 당사자에 대한 총액, ③ 해당 유틸리티 또는 지급 및 청산결제 행위와 다른 FMU 또는 지급 및 청산결제 행위와의 관계, 독립성, 그 밖에 다른 상호작용, ④ 해당 유틸리티 또는 지급 및 청산결제 행위의 실패 또는 중단이 주요 시장, 금융기관, 또는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4가지 열거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그 밖에도 FSOC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요소에 대해서도 고려하도록 하였다.<sup>146)</sup>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결정 절차로 FSOC는 해당 유틸리티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전에 결정내용을 알리고 문서 또는 구두의 청문 기회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해당 유틸리티 또는 지급 및 청산결제 행위가 금융시스템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FSOC의 위원장을 포함한 2/3의 표결로 이 절차를 유예 또는 변경할 수 있다. FSOC는 청문 이후 60일 이내 또는 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편,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평가를 위하여 FSOC는 유틸리티 또는 금융기관에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위 열거 기준에 부합함을 보여주는 합리적 근거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지정철회 역시 FSOC의 권한이 된다.

144) PCSSA §804(a).

145) 이 결정을 하기 결정 전에 FSOC는 관련 감독 기관 및 연방준비위원회에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다.

146) Donna Nordenberg, Ibid., p.18.

#### (4) 리스크 관리 기준의 설정

PCSSA는 연방준비위원회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FMU의 지급 및 청산결제, 금융기관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 및 청산결제를 규율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기준 설정 권한을 부여하였다.<sup>147)</sup>

연방준비위원회는 관련 국제 표준 및 기존의 요건을 고려하여 지침 또는 명령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CFTC와 SEC는 FSOC와 연방준비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DCOs와 CAs에 관한 유사한 범위의 리스크 관리 기준을 포함한 지침을 각각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연방준비위원회가 CFTC·SEC의 규정이 리스크의 방지·완화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CFTC·SEC가 규제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관리 표준을 적용할 수 있다.<sup>148)</sup>

한편, 연방준비위원회와 FSOC는 청산 요건, 거래 보고, 거래 집행의 승인을 포함한 CFTC·SEC 권한에 속하는 특정 영역에 관하여는 기준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연방준비위원회가 규정한 표준은 다른 권한에 의하여 설정된 덜 엄격한 요건보다 우선 적용된다.<sup>149)</sup>

#### (5) 지정된 FMU의 기능

PCSSA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정된 FMU에게 예금수취 금융기관에 제공되는 연방준비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① 지정 FMU는 예금수취 금융기관에 제공되는 연방준비은행의 특정 계좌 및 예금 계좌를 보유할 수 있고, ② 연방준비은행은 지정 유틸리티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잔액에 대하여 예금수취 금융기관에 부여하는 동일한 범위의 수익(이자)을 지불할 수 있다.<sup>150)</sup> ③ 연방

---

147) PCSSA §805(a).

148) CFTC 또는 SEC가 이러한 연방준비위원회 결정의 대상이 된 경우, 연방준비위원회는 그 결정 이후 60일 내에 어떠한 기관들이 리스크 관리 표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2/3의 표결로 결정함

149) PCSSA §811.

150) PCSSA §806(e).

준비위원회는 지정 유틸리티를 준비 요건에서 면제해 주거나 요건을 변경해 줄 수 있으며, ④ 연방준비은행에게 지정 유틸리티에 대하여 할인 또는 우대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6) 조사 및 집행

PCSSA는 감독기관이 수행한 건정성 등 조사에 관한 연방준비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지정된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조사는 해당 감독기구가 담당하되,<sup>151)</sup> 연방준비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FMU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정 환경 하에서의 금융기관 조사 자료제출요청 권한이 있다.<sup>152)</sup><sup>153)</sup>

감독기관은 최소 연 단위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FMU의 PCSSA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sup>154)</sup> 연방준비위원회는 언제든지 감독기관에게 미국 금융시장 및 금융 안정성에의 리스크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sup>155)</sup>

이와 같이 PCSSA 제808조는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 및 청산결제에 대하여 PCSSA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연방준비위원회는 그 감독기관에게 자문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7) 규제 및 협력

연방준비위원회에게 통일적인 리스크 관리 기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 기준을 감독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CFTC와 SEC의 지정 청산주체들에 대한 일반 규제 및 감독 권한은 그대로 인정하

---

151) PCSSA §807(a).

152) PCSSA §809(b).

153) 다만, 중복적인 자료요청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해당 감독기구들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도록 하였다. PCSSA §809(c).

154) 감독기관은 조사 범위에 대해 최소 연 단위로 연방준비위원회와 감독원의 자문을 얻어야 하며, 연방준비위원회는 재량으로 감독기관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PCSSA §807.

155) Donna Nordenberg, Ibid., p.20.

고 있다. 즉, 지정된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규정 위반시에도 일차적으로 연방준비위원회는 감독기구에 제재조치를 권고하고<sup>156)</sup> 제재는 해당 감독기구가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sup>157)</sup><sup>158)</sup>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1차적 감독기관의 동의 없이 조치를 취하거나 FSOC의 승인을 구할 수 있다. 예외적인 요건은 ① 제804조에 따라 시스템적 중요성을 결정함에 있어 감독원은 연방준비위원회와 감독기관의 자문을 얻어야 하고, ② 제809조에 따라 보고 의무 또는 기록 보관 요건을 부과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요청하기 위하여 연방준비위원회 또는 감독원은 감독기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③ 연방준비위원회, 감독원, 감독기관, 그리고 적절한 금융 규제자가 제809조 제e항에 따른 보고, 정보, 데이터를 공유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 서로 적절히 통지할 권한이 있을 것, ④ 연방준비위원회가 제한된 환경 하에서 백업 또는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제807조와 제808조에 따른 조사 및 집행 권한에의 협력이 요구될 경우가 해당된다.<sup>159)</sup>

또한, 연방준비위원회에게 유틸리티와 금융기관에 대한 주된 감독에 관한 자문을 얻을 것, 특정 권한을 행사할 경우 사전에 FSOC의 승인을 얻을 것을 규정하면서, 연방준비위원회는 감독기관과 협력하여 새로운 권한과 책임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 VI. 일 본

### 1. 지급결제시스템

일본에서는 자금결제 분야와 증권결제 분야로 크게 구분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형태는 우리나라

---

156) PCSSA §807(e).

157) PCSSA §807(c).

158) 김인규·조성민·최준환, “미국 금융개혁법의 주요내용”, 한은 조사연구 2010-7, 2010. 8, 16-17쪽.

159) PCSSA §807(f).

의 형태와 유사하다.

「일본은행법(日本銀行法)」에서는 일본 은행의 목적을 ‘중앙은행으로서 은행권(화폐)을 발행하는 것’, ‘통화 및 금융의 조절을 실시하는 것’,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사이에 행해지는 자금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신용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sup>160)</sup> 따라서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 통화 및 지급결제 업무를 주관하는 것과 같이 일본은행이 중앙은행으로 일본의 통화 및 지급결제시스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은 지급결제네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은행은 금융기관에 당좌계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BOJ-NET<sup>161)</sup>을 통해 참가기관 간에 자금이체를 처리하고 있다.

주요 민간지급결제시스템은 일본의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일본은행은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각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검토 및 평가, 지급결제시스템의 개선 촉진 등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거액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RTGS시스템인 BOJ-NET과 도쿄은행협회가 운영하는 국가 간 금융거래에 따른 엔화의 청산을 위한 시스템인 FXYCS<sup>162)</sup>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63)</sup>

한편, 일본은행은 2008년부터 실시간결총액결제시스템(Real Time Gross Settlement : RTGS)<sup>164)</sup>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대규

160) 「日本銀行法」 제1조.

161) BOJ-NET은 1988년 도입되어 지정시점 차액결제 및 RTGS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2001년 원칙적으로 RTGS방식으로 전환되었다.

162) FXYCS는 1980년에 국가 간 금융거래에 따른 엔화 지급의 청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1989년 도쿄은행협회가 중앙은행에 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BOJ-NET의 일부가 되었다.

163) 맹수석, 앞의 자료집, 63쪽.

164) 「日本銀行金融ネットワークシステム」은 일본은행과 그 거래처금융기관 사이의 자금이나 국채의 결제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로,



모(거액)자금결제의 효율화와 안전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는데, 1단계 대응으로 2008년 10월 유동성 절약기능의 도입과 외환엔결제거래의 완전 RTGS화를 실현하였다.<sup>165)</sup> 2단계 대응에는 대규모 국내거래의 RTGS화 2011년 11월 14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행넷과 전국은행시스템을 연결하는 새로운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1건에 1억엔 미만의 소규모 국내거래는 계속하여 전국은행시스템을 통한 시점넷결제에 의해 처리된다.<sup>166)</sup>

일본은행은 일본은행넷에 대해 장래의 발전성을 확보하고, 향후의 환경변화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보아 비용을 적극 억제하면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인 신일본넷(新日銀ネット)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sup>167)168)</sup>

---

약칭하여 ‘日銀ネット’라고도 한다. 日銀ネット는 일본은행이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행 전산센터와 일본은행 본지점 및 日銀ネット 참가금융기관이 통신회선에 의해 접속되고 있고, 일본은행 본지점이나 日銀ネット 참가금융기관으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는 센터에서 온라인 처리된다. 日銀ネット과 참가금융기관과의 접속에 관해서는 전용단말기의 설치에 의한 접속 외에 참가금융기관의 컴퓨터와의 직접 접속도 가능하다. 현재 日銀ネット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업무로는 당좌예금거래, 외환엔결제제도 관련사무, 국채매매 관련사무, 국채발행 관련사무, 국채등록 관련사무, 국채대체결제 관련사무, 국채자금동시인도 관련사무(국채 DVP) 등이 있다(일본은행 홈페이지 참조(<http://www.boj.or.jp/announcements/education/oshiete/kess/04202001.htm/>)). 맹수석, “일본의 지급결제 관련 법제의 변화와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1. 7. 27, 40쪽. 재인용.

165) 日本銀行, 「決済システムレポート(2010-2011)」, 2011. 6, 10쪽.

166) 2단계 대응으로 RTGS화 되는 대규모 국내거래는 건수에서는 내국거래 전체의 1%에 미치지 못하지만, 금액으로는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日本銀行, 앞의 리포트, 10쪽).

167) 日銀ネット(BOJ-Net; Bank of Japan Financial network system)는「日本銀行金融ネットワークシステム」의 약칭으로, 1988년 가동하기 시작되었던 것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이 新日銀ネット이다(그 구체적인 내용은, 「新日銀ネットの構築について」([http://www.boj.or.jp/announcements/release\\_2009/set0907a.htm/](http://www.boj.or.jp/announcements/release_2009/set0907a.htm/) 참조)). 이는 우선 2014년 초부터 같은 해 3월말까지를 목표로 오퍼레이션과 국채의 입찰 관련업무, 국채계 오퍼레이션 등의 인도 관련 업무를 선행적으로 가동시킬 예정이다. 나아가 2015년 가을부터 2016년 초까지를 목표로 일본은행 당좌예금 결제·국채결제 관련업무 등을 가동시킬 예정이다. 日本銀行, 앞의 리포트, 12쪽. 맹수석, 앞의 자료집, 41-42쪽 재인용.

168) 신일본넷의 기능검토를 위하여 2010년 4월 이후 3회에 걸쳐 일본은행넷의 이용

## 2.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일본에서는 2009년 6월 24일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 이하 ‘자금결제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지급결제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일반법이 아니라, 선불식지불수단의 발행, 은행 등 이외의 자가 하는 외환거래 및 은행 등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외환거래에 관한 채권채무의 청산에 대하여 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선불식 지급수단의 범위와 발행자에 대한 사항과 은행 등 이외의 자가 외환거래를 하는 경우(등록제), 자금청산업자(면허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적인 지급결제수단 및 방법에 비해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의 안전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법률이라 할 것이다.

「자금결제법」 제2조 제2항에서 ‘자금이동업’이란 “은행 등 이외의 자가 외환거래(소액의 거래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에 한한다)를 업으로써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법에 따른 자금이동업은 일반 소액지급결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의 외환거래에 대한 자금이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일본에서 지급결제의 일반에 대해서는 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나 소비자의 니즈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은행 설립형태를 유연화<sup>169)</sup>하거나 지급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

금융기관 등이 참가한 신일은행 구축에 관한 ‘의견교환회’를 개최하였다. 그 논의의 결과를 2011년 2월에 공표했는데, 그 주요 논점을 보면 ①국채결제의 원활화를 향한 대응(국채결제 기간의 단축 등), ②신일은행의 통신 메시지와 통신 네트워크의 채용(ISO20022에 대한 대응 등), ③신일은행의 가동시간의 연장 등이다. 日本銀行, 앞의 리포트, 12쪽.

169) 2000년 8월 3일 「기업중에 의한 은행참가 등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에 대한 면허심사·감독의 대응(운용상의 지침)」의 도입은 은행설립 형태의 유연화에 해당하는 예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함.



### 3. 은행법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은 “예금 또는 정기적금의 인수와 자금의 대여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함께 하는 것, 환거래를 하는 것”이 해당된다.<sup>170)</sup>

일본에서 은행업은 면허제로 운영되며, 신청이 있는 경우 내각총리 대신의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은행업의 공공적 성격, 면허의 구체적 기준설정의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미루어보면, 법규재량의 범주 안에는 행정재량의 소지가 비교적 많은 성격인 것으로 판단된다.<sup>171)</sup> 또한, 내각총리대신의 면허의 구체적 기준은 경제상황이나 시대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내각총리대신은 법률에 정한 규정에 따라 심사의 기준에 대하여 명백히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은행업 면허에 조건을 붙여 이를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72)</sup>

한편, 일본에서는 은행대리업제도를 두고 있다. 은행대리업제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금융이용자 니즈의 다양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아웃소싱에 의한 비용절감, 고객 확보 및 대고객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유연하고 전략적인 점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sup>173)</sup> 2005년 「은행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고 2006년에 시행되었다.

즉, ‘은행대리업’이란 소속은행<sup>174)</sup>을 위해 ① 예금 또는 정기적금 등의 인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 ②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또는 대리, ③ 환

---

170) 은행법 제2조 제2항.

171) 한정미, “일본 모바일 전문은행 제도의 시사점과 국내 모바일 전문은행 설립에 관한 소고”, 지급결제학회지 제5권 제1호, 2011. 6. 30, 84쪽.

172) 은행법 제4조 제4항.

173) 임연하, “일본의 은행대리업 제도 주요내용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조사연구 Review 2005 겨울, 4쪽.

174) 여기에서 ‘소속은행’이란 은행대리업자가 하는 행위로 인하여 예금, 정기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환거래를 하는 은행을 말한다(은행법 제2조 제10항).

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sup>175)176)</sup>

#### 4. 운용지침

일본에서는 일반회사 등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를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 움직임이 나타나자, 2000년 8월 3일 「이업종에 의한 은행참가 등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에 대한 면허심사·감독의 대응(운용상의 지침), (이하 ‘운용지침’이라 함)」<sup>177)</sup>을 제정하여<sup>178)</sup> 은행업의 진입을 완화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은행이 아닌 사업회사 등 이업종에 의한 은행업의 참가 움직임이나 편의점 등의 ATM을 설치하여 주된 결제서비스의 제공을 하는 업무형태, 새로운 점포망을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형태 등, 종래의 전통적인 은행업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은행을 설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금융기술의 혁신, 경쟁의 촉진 등을 통해 일본의 금융활성화나 이용자편리성의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sup>179)</sup>

이들 은행도 「은행법」상의 은행과 동등하게 예금을 수취할 수 있고, 지급결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175) 한정미, 앞의 논문, 86쪽.

176) 은행대리업을 위해서는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은행법 제52조의 36), 은행대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가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① 순자산액이 개인 3백만엔, 법인 5백만엔 이상(은행법 시행규칙 제34조의36 제1항)의 재산적 기초를 가진 자일 것, ② 은행대리업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적구성과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③ 다른 업무로 인하여 은행대리업을 운영하는 것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은행법 제52조의38 제1항)을 그 기준으로 하였다. 다만,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신고절차를 거치면 은행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다.

177) 異業種による銀行業参入等新たな形態の銀行業に対する免許審査・監督上の対応(運用上の指針), 2000. 8. 3. 금융개혁위원회, 금융청.

178) 한정미, 앞의 논문, 89쪽.

179) 한정미, 앞의 논문, 90쪽.

이후 2002년 4월 4일에 ‘사무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이업종에 의한 은행참가 등 새로운 형태의 은행’을 신설하였고, 운용지침은 폐지하였다.<sup>180)</sup> 이 ‘사무가이드라인’은 2005년 10월에 ‘주요은행 등의 총합적인 감독지침(이하 “주요은행 감독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면서 폐지하였고,<sup>181)</sup> 현재는 주요은행 감독지침(2011년 4월 최종개정) 제7장 ‘은행업에의 신규참여의 취급’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sup>182)</sup>

## VII. E U

### 1. 서 설

1973년 이래, 유럽연합 내에서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단일 시장이 형성되어 왔다. 유럽연합은 처음에는 금융 기관의 국경간 활동을 위한 안전하고 신중한 환경 제공에 중점을 두었으나, 금융 시장 자체는 대부분이 분열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유로화 도입 이후, 발전과 통합의 속도가 가속화되었다. 1999년 단행된 유로화로의 전환의 직접적인 결과로, 단일 통화를 채택한 회원국들 내의 단일 화폐 시장이 창설되었다. 이는 유럽연합 내의 금융 서비스를 위한 완전히 통합된 단일 시장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 중요한 걸음이 되었다. 그러나 효율적인 결제 및 유가증권 서비스 제공, 공정한 경쟁과 이들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의 개발 및 보장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장벽뿐만 아니라 법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법적 기본틀만이 결제, 유가증권 거래 및 금융담보약정의 안전성과 건전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이 과정에 참

180) <http://www.fsa.go.jp/news/newsj/13/ginkou/f-20020404-1.html>(일본 금융청 홈페이지, 2011. 5. 17. 접속)

181) <http://www.fsa.go.jp/news/newsj/17/ginkou/f-20051028-1.html>(일본 금융청 홈페이지, 2011. 5. 17. 접속)

182) 운용지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한정미, 앞의 논문, 90-96쪽 참조.

여하는 모든 당사자를 위한 법적 확실성의 존재를 보장할 수 있다.

## 2. 지급, 청산 및 결제에 관한 규범

### (1) 전자화폐 지침

본래의 전자화폐 지침(E-Money Directive 2000/46/EC)이 추구하는 바는 새로운 종류의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시장 접근성에 대한 규제였다. 지침의 조항 하에서, 전자화폐 발행인 즉, 제3자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 장치에 저장 가능한 발행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신용 기관과 부분적으로 동일시되었다. 특히, 전자화폐 발행인은 전자화폐 발행을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단일 여건”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허가와 감독 요건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침은 전자화폐 제공을 촉진을 추구했다.

그러나 이 제정법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2009년 9월 전자화폐 발행기관의 비즈니스의 지속, 추구 및 신중한 감독에 관한 지침 2009/110/EC의 재검토에 대한 제청했다.

초기 자본 요건을 백만 유로에서 35만 유로로 감면하고, 전자화폐 발행기관의 자체 자금의 계산에 대한 신규 규칙을 도입하는 등 재검토된 전자화폐 지침은 보다 가벼운 감독 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입법 당국은 배타성 원칙(the principle of exclusivity)의 폐지와 함께, 이들 신규 규칙은 전자화폐 발행기관(ELMIs: electronic money institutions)들이 다른 부문(통신산업 등)에서도 활동적으로 결제 시장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화폐 발행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된 활동의 범위가 넓어졌고, 이와 동시에 감독의 기본틀이 보다 완화되었고, 전자

화폐 발행기관은 더 이상 신용 기관으로 간주되지 않는다.<sup>183)</sup>

## (2) 공동체 내 국경간 결제에 관한 규칙

2009년 11월 1일, 공동체 내 국경간 결제에 관한 규칙(Regulation on Cross-border Payments in the Community : EC) No 924/2009가 발효되면서, 유로화의 국경간 결제에 관한 규칙(EC) No 2560/2001가 폐지되었다. 이 규칙은 최대 5만 유로까지 유로화의 국경 간 결제에 적용되는 수수료에 대해, 해당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동일한 화폐로 이루어진, 이에 상응하는 동일한 가치의 국내 결제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체 내의 국경 간 결제에 관한 규칙은 국내 및 국경간 결제에 대한 동일 수수료 원칙을 확대해서 자동이체(즉, 유로화의 국경간 결제에 관한 규제에서 이미 다루고 있던 입금이체(credit transfers), 전자결제(카드 거래를 포함하여)와 ATM 기기에서의 현금 인출과 함께)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본 규칙은 감독과 민원 처리 부문에 대해 결정권 있는 국가 당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당사자 합의에 의한 시정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또한, 5만 유로까지의 이체에 대해, 국경간 거래의 원활한 흐름에 장애가 되곤 했던 결제 기반 통계 보고 의무도 폐지하였다.

단일유로결제지역(SEPA: Single Euro Payment Area) 자동이체(direct debit) 계획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규칙은 은행 간 지급수수료(MIFs: multilateral interchange fees)와 자동이체 거래의 접근성(reachability)에 관한 임시 규칙을 도입했다. 이들 임시 규칙은 결제업체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규칙을 완전하게 준수하는 자동이체를 위한 장기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줄 전망이다. 이에 더해, 결제서비스 제공업체는 반드시, 적용 가능한 경우, 자사 고객들

---

183) European Central Bank, 「THE PAYMENT SYSTEM」, 2010, p.233.

에게 자신들의 국제은행 계좌번호(IBAN)와 기관의 은행인식코드(BIC)를 고지하여야만 한다. 거래를 시작하는 결제 사용자가 수령인의 국제은행 계좌번호 또는 은행인식코드를 결제서비스 제공업체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위원회가 그에 부응하는 고지를 받는 경우,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은 회원국들은 자국의 고유 통화에 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sup>184)</sup>

유로화의 국경간 결제에 관한 규칙의 채택은 유로화의 국경간 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현저하게 감축시키는데 기여했다. 따라서 이는 내부 시장(Internal Market) 내의 비현금 결제를 위한 단일 결제 지역으로 향하는 여정에 있어 중요한 걸음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은 단순히 국내 및 국경간 결제에 적용 가능한 가격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맞추는 것만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국경간 결제에 대한 단일 가격 형성을 촉진하지는 못했다. 공동체 내 국경간 결제에 관한 규칙은 결제 분야에서의(특히, 자동이체 거래에 대해) 보다 큰 조화를 준비한다.<sup>185)</sup>

### (3) 자금이체를 수반하는 결제인 관련 정보에 관한 규칙

자금이체를 수반하는 결제인 관련 정보에 관한 규칙(Regulation on Information on the Payer Accompanying Transfers of Funds (EC) No 1781/2006)은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반드시, 결제 과정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결제인과 관련된 완전한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정보에는 결제인의 성명, 주소 및 계좌번호가 포함된다. 이 정보는 자금이체에 앞서 결제인의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확인해주어야 한다. 결제인과 수령인 모두의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유

184) 2002년, 스웨덴 당국은 스웨덴 크로나화에 대해서도 본 규칙의 적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위원회에 통지하였다.

185) European Central Bank, 「THE PAYMENT SYSTEM」, 2010, p.234.



럽연합 내에 위치하는 경우, 결제는 결제인 또는 이체를 추적해 결제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고유 식별자의 계좌번호만 수반해도 된다.

본 규칙의 목표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 조사하고 추적하는 것이다. 이 규칙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sup>186</sup>의 특별권고안 VII를 유럽연합의 법으로 바꾸는 한편, 대 테러전쟁에 대한 유럽연합의 활동 계획의 일부를 형성했다.

#### (4) 결제서비스 지침

2005년 12월, 유럽위원회는 내부 시장에서의 결제 서비스에 관한 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을 위한 제청안을 제출했다. 2007년 4월,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위원회는 단일유로결제지역의(SEPA) 실현으로 가는 여정에서 결정적인 걸음이 될 유럽의회의 결제 서비스 지침 채택을 선언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결제 서비스 지침은 2007년 11월 마침내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채택되었고, 회원국들은 2009년 11월 1일까지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지침의 목표는 결제를 위한 조화된 법적 기본틀을 형성하여(특히, 단일유로결제지역을 위한 법적 기반 수립을 추구), 유럽연합 내에서 이뤄지는 국경 간 결제(특히, 입금이체, 자동이체 및 카드 결제)가 여러 회원국 내에서 이뤄지는 국내 결제와 마찬가지로 쉽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지급 기관(payment institutions)”이라는 개념(인허가 된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로, 은행보다 가벼운 감독 체제에서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수립했다. 이런 방식으로 시장을 개방하여, 유럽 입법부는 신규 서비스 제공업체가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기

---

186)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과 싸우기 위한 국내 및 국제 정책의 개발 및 촉진을 목표로 하는 정부간 기구이다.

존 참가자들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 경쟁 증대를 촉진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지급결제서비스의 제공기관으로 예금취급기관(credit institutions), 전자화폐 발행기관(electronic money institutions), 우체국(post office giro institutions), 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 유럽중앙은행(ECB), 회원국 중앙은행, 회원국 중앙 및 지방정부 등을 규정하고 지급서비스가 예금수취기관의 고유업무임을 규정하였다.<sup>187)</sup>

EU는 지급기관에 대하여 ① 건당 5만 유로 이하 전자방식 지급서비스만 제공, ②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자금은 지급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고 수취자금을 재원으로 한 대출은 금지, ③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시스템 및 중앙은행 운영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급기관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건을 정하였다.<sup>188)</sup>

이 지침은 투명한 환경과 일련의 조화된 정보 요건을 도입했고, 단일유로결제지역(SEPA) 결제 상품 또는 이미 국가적인 차원에서 존재 하던 상품의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들 요건의 대상이 된다. 이들 규칙은 고객을 위한 투명성 증대와 현재 회원국간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회원국들의 국내 규칙의 완전한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본 지침은 결제서비스의 사용자와 제공업체의 주된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명확성과 확실성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는 효율성 증대<sup>189)</sup>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들 조치의 목적은 결제 서비스 사용자(소비자, 소매업체, 대기업 또는 소기업, 공공 기관 등)들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보호를 확대하는 것이다.<sup>190)</sup>

187) 김자봉, 앞의 보고서, 37쪽.

188) 김자봉, 앞의 보고서, 37쪽.

189) 예를 들어, 결제인이 개시한 결제들은 결제 주문이 이뤄진 지 최대 하루 뒤에 완료되도록 보장하여, 소비자 보호 증진, 그리고 법적 확실성 증대(예를 들어, 책임 규정(rules on liability)과 결제 취소 가능성 조항(provisions on the revocability of payments)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90) European Central Bank, *Ibid*, p.235.



(5) 결제 완결성 지침

결제 완결성 지침은 시스템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결제 및 유가증권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성<sup>191)</sup>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이었다. 이 부문에서의 상황 전개에 대한 대응으로, 2009년 5월의 지침 2009/44/EC을 통해 결제 완결성 지침(Settlement Finality Directive)과 금융담보 지침이 업데이트되었다.

결제 완결성 지침은 본 지침의 감독을 받도록 지정된 유럽 연합 내의 모든 지급, 청산 및 결제시스템과 해당 시스템에의 참여와 관련하여 제공되거나 또는 회원국의 중앙은행 또는 유럽중앙은행에 제공된 모든 담보에 적용된다. 해당 시스템의 참여와 관련된 리스크(특히, 거래상대방(counterparty), 법적 및 시스템상의 리스크)을 회피를 목적으로, 결제 완결성 지침은 이체 신청 및 네팅(netting)은 법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하고, 제3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체 신청이 해당 파산절차의 개시 이전에 시스템에 입력된 경우, 파산절차가 시스템 참여자를 상대로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결제 완결성 지침은 파산절차가 파산절차 개시 이전에 이뤄진 참여자의 시스템 참여로부터, 또는 참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예를 들어, “0시간 규칙(zero-hour rules)”을 통해) 소급 효과를 갖지 못하도록 방지한다.

이에 더해, 본 지침은 ① 한 시스템 또는 상호운용이 가능한 시스템과 관련해 제공된 담보에 대한 참가자 또는 시스템 운영자의 권리뿐 아니라 ② 중앙은행에 제공된 근저당(collateral security)에 대한 중앙은행의 권리가 참가자, 시스템 운영자, 근저당을 제공하는 제3자 또는 중앙은행의 거래상대방을 상대로 개시된 파산절차의 영향을 받지 아

---

191) 특히, 1999년 1월 1일, 통화 동맹 설립과 이에 따른 전체 유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범유럽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TARGET)의 운영 시작을 감안한다.

니하도록 보장한다. 결제 완결성 지침의 목적에 따라, 근저당이라는 용어는 폭넓게 정의되며 비시장성 자산(credit claims)을 포함, 모든 실현 가능한 자산을 다루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지침은 진행 중인 합병(consolidation), 국경간 참여 및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신규 결제 절차에서 파생되는 법적 복잡성을 다루기 위해 2009년 업데이트되었다. 다른 무엇보다, 개정된 지침은 조화를 통해 상호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에 대비하고(특히, 교차시스템 결제(cross-system settlement)를 지원하기 위해 취소불가능 규칙(rules on irrevocability)과 이체신청이 시스템에 입력된 것으로 간주되는 순간을 조화시킴으로써), 야간 결제를 다루는 “영업일”의 개념을 제공하며, 지급 및 유가증권 결제 시스템의 직접 및 간접 참여자인 기관의 종류를 조화시킨다. 또한 다음의 두 사안을 ① 청산 시스템과 중앙결제기구(central counterparties)에 대한 지침의 적용성과 ② 참가자를 대신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의 보호를 명확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결제 완결성 지침은 한 회원국 내의 등기, 계정 또는 중앙유가증권예탁기관(central securities depository)에 법적으로 기록된 근저당(collateral security)이 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 시스템 운영업체 또는 시스템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국가간 법률 충돌을 관장하는 규칙을 담고 있다. 본 지침 하에서, 해당 근저당 소유자의 권리는 관련 등기, 계정 또는 중앙유가증권예탁기관이 소재한 회원국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결제 완결성 지침의 주요 업적은 다음과 같다. ① 지급결제 및 유가증권결제시스템이 노출되어 있는 법적 리스크의 대부분을 제거한다. ② 외국인 참여자 또는 외국의 상호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의 채무 불이행시 외국 파산법의 적용으로 시스템의 원활한 기능 작용을 위태롭게 만들지 않도록 보장한다. ③ 근저당의 법적 확실성(또한 중앙은행의 신용공여(extension of credit)을 유익하게 함)을 보장한다. 전체적으로,

이는 본 지침의 적용 범위 안에 지정된 시스템들이 모든 회원국의 안전한 법적 환경 내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주며, 이에 따라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의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Core Principles for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과 유가증권결제시스템(SSSs)과 중앙결제기구(CCPs)에 대한 CPSS-IOSCO(지급결제제도위원회와 국제유가증권감독기구) 및 ESCB-CESR(유럽중앙은행제도와 유럽유가증권감독위원회)의 권고안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형성된, 명확하고 투명한 법적 기반의 수립에 기여한다.<sup>192)</sup>

#### (6) 금융담보 지침

금융담보 지침(Financial Collateral Directive)은 유럽연합 내의 금융담보 조항을 관장하는 법적 규칙의 조화를 이뤄왔다. 금융담보지침의 목적은 ① 금융담보약정이 담보의 제공인 또는 수령인에 대해 청산 절차(winding-up proceedings) 또는 구조조정(reorganization)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약정의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되는 것을 보장하고, ② 담보의 국경간 사용에 대한 주요 장애물을 제거하며, ③ 행정적 부담, 형식적인 절차와 번거로운 절차를 제한하고, ④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있는 금융담보에 대해 명확하고 단순한 법적 기본틀을 형성하는 것이다.

2009년 개정에 이어, 금융담보 지침은 현재 금융상품 및 현금 이외에도, 비시장성 자산(credit claims)도 다룬다. 금융담보약정은 이들 자산을 담보(즉, 기탁(pledge), 담보권(charge), 우선특권(lien)의 형태인)의 소유권 또는 보유(holding)의 이양(transfer)을 포함할 수 있다. 본 지침은 공공당국, 중앙은행(즉, 유럽중앙은행 포함), 특정 국제 금융기관들,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중앙결제기구(central counterparties), 결제대리인(settlement agent), 청산소(clearing house) 등을 포함하여, 지침에 명시된 기관의 한 범주에 속하는 담보 제공인과와 담보 수령인에 적용된다.

---

192) European Central Bank, *Ibid*, p.236.

회원국들은 기업 또는 개인까지 다루도록 지침의 범주를 확대할 수도 있다.

본 지침은 금융담보약정의 형성(creation)과 완성(perfection), 그리고 금융담보약정(비시장성 자산 관련 약정 포함)의 이행과 관련된 형식상의 절차를 폐지하고, 어떠한 사전 통지, 법원의 인허가, 공개 경매 및 대기 기간을 폐지하였다. 또한 비시장성 자산을 기반으로 한 담보약정의 형성 및 완성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합의된 경우, 담보유가증권(pledged securities)을 사용할 권리를 수립하였다. 이에 더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담보(top-up collateral), 담보물의 교체(substitution) 및 일괄청산 네팅(close-out netting)의 조항은 모두 명확하게 인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개인이 있는 계좌에 담보로 잡혀 있는 대체기재유가증권(book-entry securities)에 관한 국가간 법률 충돌 규칙(a conflict of law rule)을 담고 있다. 본 지침 하에서, 해당 담보의 법적 성격과 소유 효력, 해당 담보 관련 약정의 완성 요건, 해당 담보에 관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관련된 우선권, 그리고 해당 담보의 실현은 관련 계좌가 유지되는 국가의 법 적용을 받는다.

본 지침은 2006년 12월 본 지침을 평가한 유럽위원회의 보고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유럽연합 전역에서 담보의 국경간 사용을 상당 부분 촉진시켜왔다.<sup>193)</sup>

#### (7) 금융상품투자지침

2004년 4월, 각료이사회는 금융상품 시장에 관한 지침(MiFID: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2004/39/EC를 채택하고 투자서비스 지침을 새로운 지침을 대체했다. 금융상품투자지침은 회원국들에게 투자서비스와 투자 활동 추구를 관장하는 규칙을 더욱 조화시키도록 요구한다.

193) European Central Bank, *Ibid*, p.237.

금융상품투자지침의 목표는 투자회사에 이들이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적인 “단일 여건”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상품투자지침은 사상 처음으로, 투자자의 교환(exchange)에 의한 거래와 기타 트레이딩 시스템, 그리고 투자기관의 조직적인 이행을 관장하는 포괄적인 규제의 기본틀을 수립하였다. 금융상품투자지침은 투자기관들이 의뢰인의 주문을 의뢰인에게 가장 우호적인 조건으로 이행하도록 보장한다. 이 의무는 의뢰인에 대한 계약상의 또는 중개인의 의무를 가진 업체에 적용된다.

유가증권의 청산 및 결제와 관련하여, 본 지침의 두 가지 측면이 특히 흥미롭다. 먼저, 의뢰인의 자산 보호에 관해서, 금융상품투자지침은 한 투자기관은,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금융 상품(financial instruments)을 보유하는 경우, 반드시 의뢰인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충분한 약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분리 원칙(segregation principle)은 이행 지침에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두 번째로, 금융상품투자지침은 ① 회원국의 결제시스템, 청산소 및 중앙결제기구 지역 규제를 받는 시장에의 접근을 허가 받고, ② 다른 회원국들의 투자기관이 지역 중앙결제기구와 청산 및 결제 시스템에의 접근을 허가 받으며, ③ 지역 투자기관이 다른 회원국 내의 중앙결제기구, 청산소 및 결제 시스템으로의 접근을 허가 받도록 보장한다. 다른 회원국들의 결제 시스템에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투자기관은 회원권을 관장하는 관련 운영상 및 상업적인 요건과 함께 관련 금융시장의 원활하고 질서 있는 기능작용에 필요한 신중한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sup>194)</sup>

#### (8) 신용기관의 구조조정 및 청산에 관한 지침

신용기관의 구조조정(reorganization) 및 청산(winding-up)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the Reorganization and Winding Up of Credit Institutions

---

194) European Central Bank, *Ibid*, p.238.

2001/24/EC)은 다른 회원국들에 지점이 있는 신용기관의 파산에 대해 “모국통제(home Member State Control)”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 내에 설립된 신용기관의 파산 또는 구조조정 발생시, 모든 채권자에게 상환하기 위해서 모든 자산을 분배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가 있다는 점을 보장한다.

다른 회원국에 지점을 개설한 신용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청산 과정은 신용기관의 등록된 사무소가 소재한 회원국(모국)에서 개시된 단일 파산 절차의 대상이 된다. 이 과정은 모국 법의 단일 파산법의 관장을 받는다. 본 접근법은 은행업 지침에 규정된 신용기관의 “모국통제” 원칙과 일치한다.

모국의 관계 당국만이 청산 절차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다(명령일원화의 법칙(principle of unity)). 이들 절차와 그 법적 효력은 모든 회원국에서 인정 받는다. 일반 원칙으로서, 신용기관의 모든 자산과 채무는 해당 절차 내에서 고려되어야만 한다(보편주의 원칙(principle of universality)).

모국과 타회원국 모두의 감독 당국들은 청산 절차가 개시되면 긴급한 사안으로 고지 받아야 한다(조정 원칙(principle of coordination)). 이와 함께, 지침 2001/24/EC는 영업거점소재국(host member state)(들)에 소재한 지점에 대한 구조조정 조치의 필요성과 관련해, 이들 국가의 당국들이 이를 모회원국에 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청산 절차가 개시되면 해당 신용기관의 비즈니스 수행에 관한 인허가가 취소된다.

본 지침은 또한 파산 상황에서의 담보약정, 상계(set-offs), 환매채 거래(repurchase transactions) 및 네팅 계약(netting agreements)과 관련된 국가간 법률 충돌에 대한 조항을 포함한다. 지침은 신용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상계(set-offs)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본 지침은 등기, 계정 또는 중앙유가증권예탁기관(central security depository)에 등록된 담보 유가증권에 대한 소유권의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등기, 계정이 잡



혀있거나 또는 중앙유가증권예탁기관이 소재한 회원국의 국가 제정법의 적용을 받도록 확인하고 있다. 이에 더해, 본 지침은 네팅 계약과 환매조건부채권(repurchase agreements)은 전적으로 관련 계약을 관장하는 계약에 명시된 국가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지침은 유럽연합 내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개별 신용기관을 다루며, 국경 간 은행 그룹(cross-border banking groups), 투자조합(collective investment undertakings) 또는 투자회사는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2007년 6월 착수된 공개 자문(public consultation)과 2008년 11월 발표된 후속 보고서에서, 유럽위원회는 본 지침이 그 목적을 완수했는지 여부와 본 지침이 국경 간 은행 그룹을 다루도록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그룹 내의 자산의 이동성(transferability of assets)과 관련된 장애물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반영하였다.

## VIII. 주요국 지급결제 관련 법제의 시사점

캐나다는 「캐나다 지급결제법(CP Act)」에 의해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비은행 금융기관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과 민간 지급결제기관인 CPA에 의해 지급결제시스템이 소유·운영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CPA의 주도로 지급결제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CP Act에서는 재무부의 감독권한을 명시하여 공익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CPA의 ‘소액결제제도 vision 2020’을 통하여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을 통한 지급결제서비스 발전 도모, 지급결제의 효율성 증대, CPA 법체계의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호주증권투자위원회와 호주금융감독청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 및 통화정책에 대한 직접책임은 중앙은행이 지는 구조를 가진다. 또한, 지급결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급결제시스템규제법(PSRA)」를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중앙은행의 감시권한과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지정, 운영 등을 정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주요국의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컨대, 지급수단별 증감추이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수표 등의 사용량이 급감하고, 새로운 지급수단의 사용이 급증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의 변화에 대응하여 APCA를 통하여 ‘소액결제 발전전략’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는 「은행법」을 통하여 영란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권한을 크게 강화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급결제 서비스 규정’을 통하여 지급결제에 참여하는 기관의 행동지침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FSA의 감독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지급결제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지급결제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급결제수단의 변화를 반영하고 모바일 지급수단 등의 대체지급수단 사용의 증가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지급결제에 관한 일반법인 「지급 및 청산결제 감독에 관한 법률(PCSSA)」을 제정하여 지급결제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위기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금융개혁법」을 통한 금융감독기구의 개편과 금융안정감독위원회의 설치 이외에 PCSSA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연방준비은행에게 통일적인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 관리기준의 권한, 그 기준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SEC, CFTC의 일반규제 감독 권한을 명시하여 지급결제시스템, 특히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의 경우 중앙은행의 감시책임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일본은행법」 목적조항 등에 규정되어 있다(일본은행법 제 1조).<sup>195)</sup> 그리고 지급결제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고, 다양한 법률이 관련 법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즉 중앙은행은 일본은행법에 따라 거액결제시스템의 운영 및 민간 지급결제시스템을 감시하고, 지급결제 부문의 규제와 감독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실질적으로 금융청이 담당한다. 전자자금이체 등과 관련하여서도 별도의 법률은 없고, 개별적인 지급과 관련한 권리·의무는 계약이나 민법·상법 등 일반적인 사법에 의해서 규율된다.<sup>196)</sup>

이와 같이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에게 지급결제제도의 감시권한을 부여하고, 감독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지원의무와 감시권한을 하나의 유인 패키지로 구성하여 조직의 이익추구와 철저한 감시감독이 서로 유인구조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FMI와 참가기관도 일방적인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으로부터 최후의 유동성 지원 및 각종 인프라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준수비용(compliance cost)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sup>197)</sup>

한편, 지급결제에 대한 일반법을 가진 국가와 가지지 않은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관련 법체계의 형태는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

195) 일본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목표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라 할 수 있는데, 1998년 4월 개정 시행된 일본 은행법에서 일본은행의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다. 즉 일본은행은 은행권의 발행, 통화 및 금융의 조절,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간 자금결제의 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신용질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간 자금결제의 원활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일본은행법 제39조), 신용질서의 유지 및 자금결제의 원활화를 위한 考査業務의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과 考査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일본은행법 제44조 제1항).

196) 맹수석, 앞의 자료집, 61쪽.

197) 양준모, 앞의 자료집, 87쪽.

즉, 법령수준에서 중앙은행의 권한이나 지급결제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중앙은행의 운영규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중앙은행의 감시권한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에 따른 재제와 유사한 제재를 직접 할 수 있는 감독의 수준이고, 중앙은행의 역할이 금융안정까지 포함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지급결제 법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 표 - 11 > 주요국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법제 정리

국 가	주요 조치
캐나다	금융기관의 감독책임은 금융감독청에 부여되고 있으나, 지급결제시스템은 「CP Act」를 통하여 중앙은행과 CPA가 운영 재무부가 CPA에 대한 감독권한 행사
호 주	「지급결제시스템규제법」을 통하여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및 감시권한 행사 APCA는 지급결제에 관한 자치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소액결제발전전략을 추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
영 국	재무부, 영란은행, FSA 간 MOU를 통해 영란은행에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감시책무 부여. 2009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서 영란은행에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기능 부여 2012년까지 건전성 규제기관을 영란은행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및 감시제도 개혁입법을 추진
미 국	2011년 「지급 및 청산결제 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연준에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감시권한 부여 이에 따라서 연준은 리스크관리기준 제정,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승인,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직접조사, 시정명령 등 광범위한 감시권한 부여

제 3 장 지급결제 관련 법제

국 가	주요 조치
일 본	1998년 「일본은행법」 개정을 통해 중앙은행에 지급결제제도 감시권한 부여 「일본은행법」 제1조에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들간 자금결제의 원활화 도모” 목적 명시
EU	유럽연합기능에 관한 조약, 유럽중앙은행제도 및 유럽중앙은행 정관 및 각국 중앙은행법에 따라서 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 책무를 중앙은행에 부여

## 제 4 장 지급결제산업의 표준화

### 제 1 절 지급결제산업의 표준화 동향

#### I. 금융표준화 개관

##### 1. 표준화의 개념

표준화(Standardization)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의 상태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sup>198)</sup>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이 바로 표준(standards)을 의미하며, 표준은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며,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규칙, 가이드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sup>199)</sup> 표준화는 비단 기술분야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산업 각 분야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 금융업무의 표준화는 사무자동화, 신상품의 개발, 원활한 금융거래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상호간 또는 금융기관과 고객 간에 업무처리절차, 양식 또는 매체 등을 통일하는 것으로 주요 표준화 대상업무로는 각종 금융거래 메시지 양식의 통일, 메시지 구성요소의 코드화, IC카드 등 지급결제 수단 사양 및 보안 관련 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sup>200)</sup>

##### 2. 표준화의 법적 구속력

표준은 법적구속력 여부에 따라 임의표준(Voluntary Consensus Standard)과 규제적 표준(Regulatory Standard)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임의표준

---

198) ISO/IEC 가이드 2.

199)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htm/business\\_01/standard\\_01\\_01.asp](http://www.kats.go.kr/htm/business_01/standard_01_01.asp))

200)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은 표준의 준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표준이며, 규제적 표준은 법령 등에 의해 누구나 준수해야 하는 표준을 말한다.<sup>201)</sup>

대부분의 표준은 임의표준에 해당하여 표준의 구현 및 적용에 구속력이 없다. 다만, 보안 또는 안전문제, 환경문제 등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경우 정부 및 관련기관은 법령에 의해 임의표준을 규제적 표준으로 설정하기도 하며, 시장의 독점적 지배력으로 인해 특정 회사나 단체의 표준이 규제적 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다.<sup>202)</sup>

### 3. 금융표준화 추진체계

우리나라의 표준화는 198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 5월 금융전산망 추진위원회(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전신)의 발족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sup>203)</sup>

금융부문의 국내표준화와 관련된 중요사항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결정하며 사전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표준화위원회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표준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표준원 산하에 ISO의 분야별 기술위원회<sup>204)</sup>에 대응하는 분야별 국내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금융부문에 대한 ISO의 국제표준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금융부문(ISO/TC68) 국내 전문위원회<sup>205)</sup>를 구성·운영하고 있다.<sup>206)</sup>

---

201) 김성천, 앞의 자료집, 41쪽.

202) 김성천, 위의 자료집, 41쪽.

203)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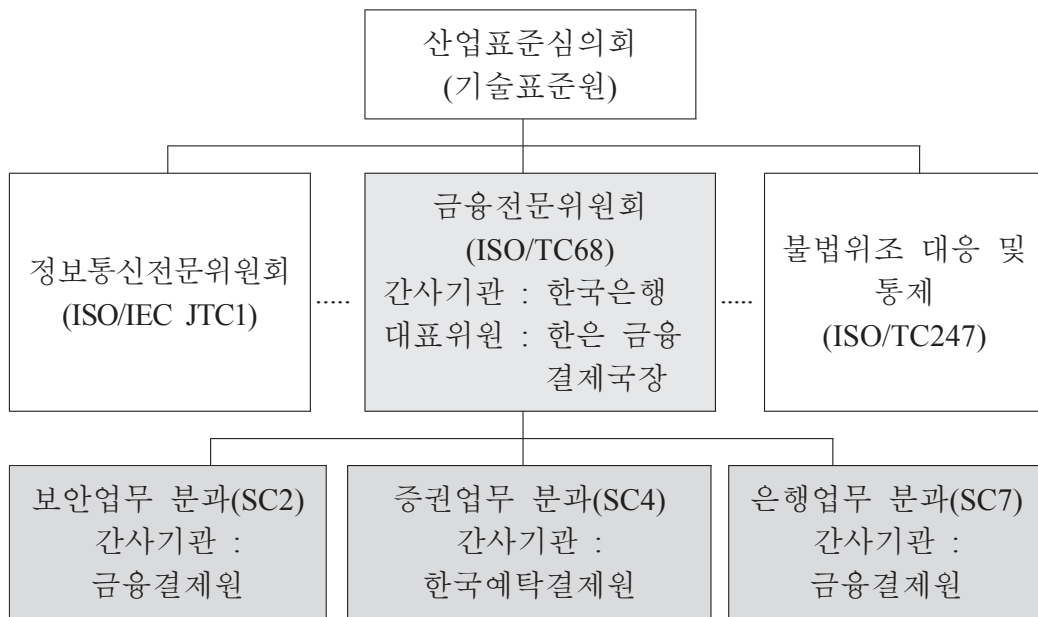
204) 국제 표준화기구로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있으며 동 기구는 1947년 유엔 표준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비정부간 협의기구 형태로 설립된 대표적인 국제 표준화기구로서 ISO에는 182개의 분야별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가 있으며 이중 금융부문은 TC68이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 6월 공업진흥청(현재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대표기관으로 가입하였다.

205) 동 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며 한국은행이 간사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ISO의 금융부문 국제표준안에 대한 찬·반 투표권 행사는 국내 대표기구(National Body)인 기술표준원이 하고 있다.

206) 김성천, 앞의 자료, 43쪽.

국제 금융표준화의 경우 국가표준기구(기술표준원) 주도로 ISO/TC68 금융표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sup>207)</sup> 기술표준원은 ISO/TC68 금융표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융전문위원회와 산하 3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 금융표준화 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 그림 - 9 > 국내 ISO/TC68 금융전문위원회 체계



금융전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는 간사기관은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있으며 동 전문위원회의 대표위원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 맡고 있다.

#### 4. 주요 금융표준 제·개정 내용

1996년 이후 금융산업 분야의 표준 제·개정은 주로 금융IC카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급결제 수단에 해당하는 표준으로 볼 수 있다.

207) 일본 및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아닌 국가표준기구가 국제 금융표준업무(ISO/TC68 표준안 심의, 투표권 행사, ISO회의 참석 등)를 주도한다.



< 표 - 12 > 주요 금융표준 제·개정 내용

제·개정 시기	표준 제·개정 내용
1996. 3	- 펌뱅킹 서비스 파일포맷 표준 제정
1997. 2	- 폐쇄형 금융IC카드표준 제정
1999. 7	- 폐쇄형 금융IC카드 표준 개정 ○ 비접촉식 기능 추가
2000.11	- 폐쇄형 금융IC카드 표준 개정 ○ PIN위치변경, 단말기 최소구비요건 정의 등
2002.12	- CD공동망 거래전문 개정 ○ 거래전문에 지급계좌번호 Field 추가 - 납부자 자동이체 거래전문 개정 ○ 현행 7개의 입금불능사유 코드를 19개로 확대
2003. 4 2003.11	- 개방형 금융IC카드 표준 제정 - 폐쇄형 및 개방형 금융IC카드 표준 개정 ○ 현금카드 적용 보안알고리즘 지정 등
2004. 6 2004.10	- 폐쇄형 및 개방형 금융IC카드 표준 개정 ○ IC카드에 PIN System제도 도입 등 - 대학등록금 수납관련 File Layout 표준 제정 - CD공동망 3행이체 불능응답시 응답은행 표시 표준화
2005.11	- 지로 모계좌 보유은행에 이용기관별 이용정보 제공(업무 개선) - CMS공동망 차액결제 집계표에 은행별 내역추가(업무개선)
2006.10	- 자동이체 등록처리시 오류처리기준을 통일하고 오류코드를 상세화(업무개선) - 금융공동망 데이터중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를 통합관리(업무개선)

제·개정 시기	표준 제·개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청구 반환절차 통일(업무개선)</li> <li>- 우편번호의 갱신방법 일원화(업무개선)</li> </ul>
2007.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IC카드 보안토큰(공인인증서기반 거래용)규격 표준 제정</li> <li>- 금융IC카드 금융공동망(현금카드)표준 제정</li> </ul>
2008.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IC카드 보안토큰(공인인증서기반 거래용)규격 표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카드 공인인증서를 HSM으로 사용하기 위함</li> </ul> </li> </ul>
2008.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제정 표준의 적합성 시험에 관한 운영세칙 제정</li> </ul>
200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SIM 등 모바일칩 기반의 RF방식 CD/ATM 이용 표준 제정</li> </ul>
2009.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IC카드 표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채널 공격의 유형 및 대응방법 추가, 국내외 공인된 시험평가기관의 인증을 받은 IC카드 사용 등</li> </ul> </li> </ul>
2010.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 제정</li> </ul>

자료 : 김성천, 앞의 자료집, 52-53쪽.

## II. 지급결제산업분야 표준화 촉진의 필요성

### 1. 지급결제분야 표준화의 한계와 전망

그 동안 금융권은 개별기관이 고객 유치를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해왔기 때문에 표준의 필요성이 미약하여 국내 금융표준화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는 고객이 서비스제공 은행을 선택하여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은행 간 호환성 문제는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행간 호환이 필요한 금융서비스(CD/ATM 등)는 금융공동망을 통해 해결하였던 것도 국내 금융표준화 필요성을 저하시켰다. 또한 금융권이 안전성을 중시하여 새로운 IT기술을 바로 적용하는 것을 피한 것도 급변하는 IT기술의 표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점차 개별 은행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들 중 공통으로 처리되는 핵심기능의 표준화 필요성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적인 IT적용 자세에서 능동적 자세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폐쇄망 등 제한적인 분야에서 IT기술을 이용하던 시대에서 금융업무 전반에서 IT기술을 이용(IT Governance)하여야 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기인한다. 또한 IT기술의 발전으로 IT기술의 안정화에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금융업무에 최신 IT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IT기술의 최대 수요자로 변모하고 있다. 이제는 금융기관이 수동적인 수요자 입장이 아닌 능동적인 자세로 최신 IT기술을 주도하고 IT기술의 최대 수요자로서 IT기술을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집단으로 활동하게 됨에 따라 향후 국내 금융표준화 업무도 활발하게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표준화 관련 국제기준의 수용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금융분야의 국제 표준화 활동은 국내 표준화에 비하여 크게 부진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1995년 1월 발효된 ‘WTO의 TBT(Technical Barrier to Trade)’협정과 1995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오사카행동지침’ 등 국제 협약이 체결되면서 상황이 크게 변화하였다. WTO의 TBT 협정은 국가마다 상이한 표준 및 기술규정이 국가간 무역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WTO 회원국이 ISO 등의 국제표준을 자국표준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한편, 오사카행동지침은 각국의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에 일치시키기 위한

협약으로서 선진국은 2010년,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적용토록 되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고 자국산업을 보호하기위한 수단으로 표준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급결제시스템의 표준화와 관련한 국제적인 대응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영국의 예를 보면,<sup>208)</sup> 2008년 5월 영국의 지급결제위원회는 지급결제시스템의 호환성과 효율성 제고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표준화 기본원칙’을 마련하였다.

이 원칙에는 표준 설계시 고객의 거래개시, 본인확인·인증, 고지·확인 등을 포함하여 지급결제의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다양한 표준제정 기구간의 융합 또는 통합을 지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급결제위원회는 영국내 지급결제 메시지 표준을 SEPA에서 이용하고 ISO에서 개발한 유럽의 메시지 표준과 일치하도록 표준화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2008년말까지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표준화 영역 및 계획 수립하고, 2단계로 2009년 중반까지 표준화 이행의 적절성 평가 및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전반적인 이행일정(timeline) 확정하도록 한 것이다.

표준화에는 금융기관 계좌번호 양식의 표준화<sup>209)</sup>도 포함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지급결제위원회는 2009년 6월 비표준화된 계좌번호 양식 이용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계좌번호 양식의 모범준칙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sup>210)</sup>

비표준화된 계좌번호를 이용하는 금융기관은 시스템 개편시 표준화된 계좌번호 양식을 적용하여야 하고, 비표준화된 계좌번호를 이용할

208) 이하 영국의 표준화 관련 내용은 김정규, 앞의 자료집, 89-90쪽의 내용을 발췌·수정하였음.

209) 여기에서 표준 계좌번호 양식은 6자리의 금융기관코드(sorting code)와 8자리의 고객 계좌번호(account number), 1자리의 검증번호(modulus check)로 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10) 김정규, 앞의 자료집, 84쪽.

경우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동 계좌번호와 연계된 새로운 표준화된 계좌번호를 제공하여(mapping system) 대량이체시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앞으로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국내 기준을 변경하는 활동에 적극 임하지 않은 국가들은 자국의 표준이 국제표준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자국 금융관련 IT인프라를 국제표준에 맞게 변경해야 국제적인 금융시스템에 호환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국제표준에 맞도록 IT인프라를 변경하게 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제 금융표준 부합하는 국내 표준 구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업무가 표준화되면 고객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은 각종 서비스의 독자 개발에 따른 중복투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지급결제서비스는 표준화된 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 및 금융기관이 많을수록 전체 효용이 증가하는 네트워크시스템이므로 관련기술 및 이용절차의 표준화를 촉진하여 호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sup>211)</sup>

### 3. 표준화에 따른 보안강화의 필요성

앞서 살펴보았던 주요국의 지급결제 발전전략들은 새로운 지급수단의 개발과 보급에 따른 지급결제시스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예컨대, 영국은 휴대폰 보급 확대 및 기술혁신 등을 반영하여 모바일 결제, 비접촉 선불카드 등 신규 지급수단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고 호주는 수표의 전자정보화를 추진하고 기존 전자지급수단의 이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지급결제 서비스는 다양한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인 기능과 장치가 사용되며 각각의 안정성 및 보안성이

---

211)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보장되는 않는 경우 개인이 소지하고 스마트폰 및 각종 휴대기기를 통한 전자금융 서비스는 외부로부터의 해킹, 사용자 과실로 인한 정보의 노출, 기타 시스템을 통한 문제들이 발생 할 수 있다.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에서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심(Universal Subscribers Identification Module ; USIM)은 개인 휴대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용자 식별을 위한 하드웨어적 장치이며 스마트카드의 IC칩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다. 최근 스마트폰이 확대 보급과 함께 금융 서비스, 신용카드 서비스 및 기타 지급결제 서비스를 위한 가치의 저장, 앱(App) 또는 서비스 프로그램의 저장, 개인 인증 ID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 관련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통하여 금융서비스가 진행될 경우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비대면 거래시의 사용자 확인 및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및 식별장치로 USIM이 해킹 또는 내부의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개인 사용자 및 금융기관은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USIM은 통신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하드웨어적 보안성, 소프트웨어적 안정성 등에 대한 테스트와 인증을 통하여 사용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sup>212)</sup>

## 제 2 절 표준화의 국제기준 및 전환추이

### I.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 1. 제정경과 및 의미

BIS 지급결제시스템위원회(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 CPS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 IOSCO)의 기술위원회(이하 ‘CPSS-IOSCO’라 한다)는 2001년

---

212) 김동현, 앞의 자료집, 19쪽.

부터 2004년에 걸쳐 지급결제시스템·증권결제시스템·청산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3개의 국제기준을 책정·공표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결제시스템의 안전성·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 당국이 결제시스템의 감독을 실시해 갈 때에 활용되고 있다.

2010년 2월 CPSS-IOSCO는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교훈과 기준을 운용하였던 경험을 근거로 하여 지급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청산기관에 관하여 별도로 운영되던 현행의 3가지 운영기준을 개정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들을 하나에 통합하는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의 포괄적인 재검토 작업을 개시하였다.

CPSS-IOSCO는 2011년 3월에 협의 보고서 「금융시장 인프라를 위한 원칙」을 공표하였고, 2011년 7월에 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Committee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 CPSS)와 CPSS-IOSCO가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을 발표하였다.<sup>213)</sup> 여기에서 ‘금융시장 인프라(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 FMI)’란, 시스템적 영향이 큰 지급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청산기관(Central Counterparty ; CCP), 거래정보축적기관(Trade Repository) 등을 총칭하는 것이어서, 종래의 분야별 결제시스템보다 대상을 넓힐 수 있고 있고 포괄적인 시스템 운영기준이 제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 표 - 13 > 결제시스템에 관한 국제기준의 변화

종 류	국제기준	정책주체	책정시기
지급결제시스템	시스템적 영향이 큰 자금 결제 시스템에 관한 핵심 원칙	CPSS	2001

213) consultative report 원문은 BIS홈페이지(<http://www.bis.org/publ/cps94.pdf>) 참조.



종 류	국제기준	정책주체	책정시기
증권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을 위한 권고	CPSS-IOSCO	2001
청산기관	청산기관을 위한 권고	CPSS-IOSCO	2004

### 3가지 기준의 개정 및 통합



종 류	국제기준	정책주체	책정시기
FMI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CPSS CPSS-IOSCO	2011

각국의 FMI는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있어서 대체로 양호하게 기능하여, 위기의 쇼크가 결제시스템에 증폭되는 사태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sup>214)</sup> 이와 같이 FMI의 기능이 높게 평가되고 그 중요성이 재차 인식되자,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에서는 새로운 리스크 관리의 강화가 도모되고 있다. 또한, CPSS-IOSCO에서는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을 각국의 금융당국에서 2012년 말까지 자국내 FMI 관련 기준에서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2. 원칙의 주요내용

### (1) 개 요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은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총 24개 원칙사항과 중앙은행, 감독기관 및 관계당국에 대한 5가지 책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원칙들은 시스템 참가기관이 파탄할 경우에 대비한 재무자원 요건의 인상이나 업무연속체제의 상향을 도모하고, 고객 차입 담보의 구분 관리와 고객 계산(계정)의 이관, 운영 리스크, 결제의 계

214) 日本銀行, 「決済システムレポート(2010-2011)」, 2011. 6, 17쪽.

제 4 장 지급결제산업의 표준화

층화, FMI간 링크의 다양화, 시장 데이터의 투명화(공개) 등 새로운 지급결제 관련 과제에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제1원칙으로 “FMI는 관련된 모든 사법권역에서 각 업무면에 관하여 확고하고, 명확·투명하게 집행가능한 법적기반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표 - 14 > FMI 원칙과 기존의 원칙과의 관계

FMI 원칙		CPSIPS	RSSS	RCCP
번호	원칙	개별원칙의 해당 번호		
1	법적기반(legal basis)	1	1	1
2	지배구조(governance)	10	13	13
3	종합적리스크관리체계/framework for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of risks)	3	-	-
4	신용리스크(credit risk)	5	9	3,5
5	담보(collateral)	5	9	4,5
6	증거금(margin)	-	-	4,5
7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5	-	5
8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	4	8	-
9	자금결제(money settlements)	6	10	9
10	실물인도(physical deliveries)	-	-	10
11	증권예탁기관(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	6	-
12	가치교환형결제시스템(exchange-of-value settlement systems)	-	7	10

제 2 절 표준화의 국제기준 및 전환추이

FMI 원칙		CPSIPS	RSSS	RCCP
번호	원칙	개별원칙의 해당 번호		
13	참가기관 채무불이행시 규정 및 처리 절차 (participant-default rules and procedures)	-	-	6
14	분리보관 및 이전(segregation and portability)	-	12	-
15	일반사업리스크(general business risk)	-	-	-
16	위탁 및 투자 리스크 (custody and investment risk)	-	12	7
17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7	11	8
18	접속 및 참가기준 (access and participation requirement)	9	14	2
19	계층화 참가제도 (tiered participation arrangement)	-	-	-
20	FMI간 연계(FMI links)	-	19	11
21	효율성과 실효성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8	15	12
22	통신절차와 표준 (communications procedures and standards)	-	16	-
23	규정 및 핵심절차의 공표 (disclosure of rules and key procedures)	2	17	14
24	시장자료의 공개(disclosure of market data)	-	-	-
FMI 감시 규제 감독기관의 5가지 책무(responsibility)				
A	FMI에 대한 규제, 감독, 감시(regulation, supervision and oversight of FMI)	A	18	15

제 4 장 지급결제산업의 표준화

FMI 원칙		CPSIPS	RSSS	RCCP
번호	원칙	개별원칙의 해당 번호		
B	규제, 감독 및 감시 권한과 자원(regulatory, supervisory and oversight powers and resources)	C	18	15
C	FMI 관련 정책의 공표(disclosure of policies with respect to FMIs)	A	18	15
D	FMI 관련 기준의 적용(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for FMIs)	B, C	-	-
E	다른 기관과의 협력(cooperation with other authorities)	D	18	15

주:

1. CPSIPS : Core principles for systemat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
2. RSSS : Recommendations for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
3. RCCP : Recommendations for central counterparties

자료 : 양준모, “FMI 국제기준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금융표준화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 2011. 8. 9, 67-68쪽.

(2) 신용리스크 관리(원칙 4)

신용리스크 관리에 관하여 FMI는 참가자와 지급, 청산 및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측정, 모니터링 및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FMI는 각 참가자에 대한 신용익스포저를 높은 신뢰수준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재무자원을 유지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서 광범위한 잠재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커버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무자원을 유지할 것도 포함하고 있다.<sup>215)</sup> 한편, 참가자 전

215) 한국은행,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2011. 7, 3쪽.

용의 커런트 익스포져와 장래의 잠재적인 익스포져(exposure)를 보다 적절히 계측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지급시스템과 CSD, 그리고 SSS 등도 모두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담보 및 이와 동등한 재무적 자원을 이용하여 대비해야 한다. 또한, CCP는 정기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서 노출된 신용위험을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사후점검(backtest)은 매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모범관행으로서 일일 또는 주간 스트레스테스트도 실시해야한다고 권고하였다. 종합적인 스트레스테스는 모형의 타당성, 파라미터, 가정 및 시나리오의 타당성을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sup>216)</sup>

### (3) 자금유동성리스크 관리(원칙 7)

자금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한 FMI의 원칙을 보면, 유동성리스크를 실효성 있게 측정, 모니터링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즉, FMI는 광범위한 잠재적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높은 신뢰수준으로 지급채무를 당일 또는 적절한 경우에는 일중 결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유동자원을 유지하여야 한다.<sup>217)</sup>

유동성 위험의 원인을 참가기관의 파산, 담보채권의 이용한계, 결제 은행·위탁은행 또는 연계된 FMI의 기능이상 등으로 보고, 유동성 관리수단으로 담보, 증거금을 확보하거나, 한도를 설정하여 위험을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4) 분리보관 및 계정이관(원칙 14)

CCP는 참가자의 고객에게 귀속되는 포지션과 담보에 대한 분리관리와 계정이관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sup>218)</sup>

216) 양준모, “FMI 국제기준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금융표준화에 대한 법제적 대응 방안』, 2011. 8. 9, 74쪽.

217) 한국은행, 앞의 보고서, 5쪽.

218) 한국은행, 앞의 보고서, 7쪽.

이는 참가기관의 파산시 또는 결제불이행시, 소비자들의 포지션과 담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참가기관의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과 담보를 식별하고 분리할 수 있는 계좌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19)</sup>

#### (5) 운영리스크(원칙 17)

FMI는 운영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내부·외부의 모든 원인을 식별하고 적절한 시스템, 통제수단 및 절차를 채택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시스템은 고도의 안전성 및 운영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고, 적절하며 확장가능한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sup>220)</sup>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재해, 테러, 전쟁, 파업 등의 광범위한 원인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지급결제 관련 업무의 중단이나 시스템 파괴 등에 대하여 업무의 지속성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원칙에서는 업무지속계획은 광범위한 장애발생시를 포함하여 운영의 적시복구 및 FMI의 의무이행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6) 계층적 참가제도(원칙 19)

FMI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계층적 참가제도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를 식별, 이해 및 관리하여야 한다.<sup>221)</sup> 계층적 참가제도는 직접 참가자를 경유한 간접적인 참가 형태를 인정하는 것에 따르는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sup>222)</sup> 여기에서 계층적 참가제도에 대한 원칙을 새로이 제시한 것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참가기관에 대하여 위험을 통제하고 그들의 적절한 수용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19) 양준모, 앞의 자료집, 80쪽.

220) 한국은행, 앞의 보고서, 9쪽.

221) 한국은행, 앞의 보고서, 9쪽.

222) 日本銀行, 「決済システムレポート(2010-2011)」, 2011. 6, 18쪽.

## (7) FMI 연계(원칙 20)

FMI는 단독 또는 복수의 FMI와 연계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경우, 동 연계와 관련된 리스크를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하여야 한다.<sup>223)</sup>

이것은 복수·동종의 FMI가 상품이나 참가자의 확대를 목표로 해서 링크 하는 경우, 링크 이전에 FMI에 기인해 생기는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다양한 링크 형태에 따라 명확하게 강구하도록 한 것이다.

## 3.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의 영향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은 2011년 3월 BIS 회의에서 최종안이 승인되었으며, 시장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2년 초 최종확정하고 2012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기존의 권고안에 따라 FMI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2011년에 새로 제시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의 준수에 대한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sup>224)</sup> 다만 FMI 국제기준은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일관된 감시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각기 다른 감독체제, 감독기관 및 감시 기관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의 제1원칙에서 ‘법적 기반’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다. “FMI는 관련된 모든 사법권역에서 각 업무면에 관하여 확고하고, 명확하며, 투명성을 갖춘 집행가능한 법적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관계당국, 참가자, 참가

223) 한국은행, 앞의 보고서, 9쪽.

224) 양준모, “금융시장인프라(FMI) : 글로벌 환경변화와 우리의 과제”,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2011. 7. 13, 35쪽.



자의 고객에게까지 그 업무의 법적기반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 지급결제관련법제는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지급결제기관 및 지급수단 등의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 운영 관련 법제, 감시관련 법제, 이용자 보호관련 법제에 있어서 미비한 상태로 보여진다.

예컨대, 「자본시장법」의 제정·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은행간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가 가능하게 되는 등 지급결제관련 사항이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관련 개별법에 산재하여 있고, 지급결제제도 관련 사무는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관장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거액결제시스템에 대해서만 한국은행법에 의해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협조체계의 구축 및 업무협력 내용 등에 대한 법제적 근거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 II. ISO 20022

### 1. ISO 20022의 의미와 구성

범용 금융통신 메시지 표준(ISO20022)의 정식 명칭은 「ISO20022-Universal Financial Industry Message Scheme」으로 금융업무전반에 이용되는 통신메시지에 관한 국제표준이다. 이 표준은 구체적인 메시지 포맷(format)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 표준의 개발방식 및 등록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 및 개인·기업·증권거래소·청산소·지급결제 관련 IT업체·중앙은행·감독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참가자들 사이에서 이용되는 수많은 형태의 통신메시지 포맷을 수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sup>225)226)</sup>

225) 한국은행, 「2009년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보고서」, 2010. 4, 76쪽.

226) 한국은행은 2010년 11월 29일(월) BSI(영국표준협회)로부터 정보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IT서비스 관리체제의 국제표준인 「ISO20000」 인증을 획득하였다. 한국은

ISO 20022는 ① ISO 20022-1 : ISO 20022 통신메시지 개발의 일반적인 방법론과 금융저장소 관련 입출력(inputs and outputs)에 관한 세부방법론, ② ISO 20022-2 : ISO 2002 표준 등록기구의 기능 및 책임, ③ ISO 20022-3 : ISO 20022 모델링 지침, ④ ISO 20022-4 : 20022 XML 설계 원칙, ⑤ ISO 20022-5 : ISO 20022 역설계, ⑥ ISO 20022-6 : ISO 20022 메시지 전송 특성의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27)</sup>

## 2. 지급결제 표준평가그룹

등록관리그룹(Registration Management Group ; RMG)은 ISO 20022에 기초한 통신메시지표준의 등록절차 전반을 총괄·관리하고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sup>228)</sup> 특히, 표준평가그룹(Standards Evaluations Groups ; SEGs)의 설립·폐지, 하위 등록기구의 소관범위 및 역할 지정, 등록기관(Registration Authority ; RA) 및 SEGs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등록절차 중 개별의 통신메시지 표준의 등록신청을 받아 등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당한지 여부에 대해 심사하고 이를 수용하는 경우 동 표준을 담당할 SEG를 지정하는 것이다.

SEG는 업무분야별로 설립되어 있는데 ① 지급결제 SEG, ② 증권 SEG, ③ 외환 SEG, ④ 무역금융 SEG, ⑤ 카드 SEG 등 모두 5개의 SEG가 설치·운영 중이다. 여기에서 지급결제 SEG는 계좌이체, 수표, 지급카드 등 다양한 지급수단과 관련한 지급결제 관련 금융거래나 업무절차에 사용되는 통신메시지 관련 표준개발을 담당하고 있다.<sup>229)</sup>

행 보도자료, 2010. 10. 29. 참조.

227)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ISO 20022의 주요 내용 및 대응과제”, 지급결제정보 제 2009-5호, 13쪽.

228)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위의 자료, 14쪽.

229) 고객-금융기관, 금융기관-금융기관, 금융기관-지급결제시스템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 등 다양한 참여자 간의 통신메시지를 포괄한다.

< 표 - 15 > 활동 전문가의 주요 소속기관

금융기관	ABN Amro, ANZ, Bank of America, Barclays, Commertzbank, Credit Suisse, HSBC, JP Morgan Chase, Nordea, SEB, Stuzza, Wells Fargo
중앙은행, 운영기관	FRB New York, FRB Minneapolis, Euroclear, The Clearing House, SWIFT
기타	ACI Worldwide, APACS, Danish Bankers Association, TWIST

자료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위의 자료, 15쪽.

### 3. 소액지급결제 분야의 ISO 20022

우리나라에서 ISO 20022는 임의표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WTO의 TBT(Technical Barrier to Trade)’협정과 ‘오사카행동 지침’ 등을 통하여 자국의 표준이 국제표준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자국 금융관련 IT인프라를 국제표준에 맞게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ISO 20022의 국내 적용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영국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이 유럽 및 ISO에서 제정한 지급결제 메시지 표준과 일치하도록 표준화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U가 추진하는 SEPA(Single Euro Payments Area)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되며,<sup>230)</sup> 미국에서도 기업간 결제의 전자화를 추진하는 경우 ISO 20022 표준을 적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sup>231)</sup> 특히 호주는 국내 지급

230) SEPA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실행기구인 EPC(European Payment Council)는 역내의 소액지급거래에 이용되는 통신메시지의 표준으로 원칙적으로 ISO 20022를 이용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개발작업을 SWIFT에 위탁한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위의 자료, 23쪽.

231) 미국의 Fedwire와 CHIPS의 운영주체인 연방준비은행과 Clearing House Payment Company는 2006년 10월 미국의 기업간 결제 고도화를 위하여 ISO20022를 통신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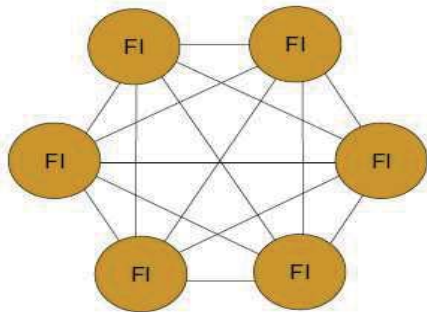
결제 메시지의 ISO 20022와의 호환성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지급메시지 관련 국제표준인 ISO 20022의 개발 및 도입에 따른 호주 지급결제시스템내 새로운 메시지 표준의 도입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기존의 금융기관 양자간 거래정보 네트워크의 비효율성이 커진 데다 인프라 기술의 갱신주기(lifecycle) 도래 등으로 금융기관 공동의 통합 네트워크 개발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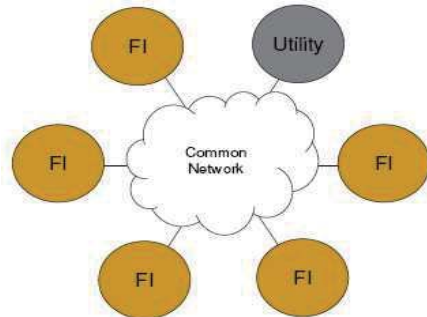
이는 호주의 금융기관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 호주에서는 수표교환, 대량입금 및 출금 정보의 교환을 위해 개별 기관간 약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네트워크를 연계해야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 그림 - 10 > 호주의 지급결제 네트워크 구조

양자간 네트워크



통합 네트워크 모델



자료 : 김정규, 앞의 워크숍 자료집 92-94쪽.

최근 결제건수 및 금액의 증가와 다양한 지급서비스 기관의 참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개방성 확대 등으로 인한 결제리스크 증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특히 전자지급수단 및 대량이체 시스템(BECS)의 지속적인 증가로 익일 차액결제에 따른 결제리스크 증가),

---

시지표준으로 채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거래정보 및 청산서비스 표준 도입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2009년부터 지급결제 메시지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0022의 호주 지급결제시스템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대량이체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국제 메시지 표준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2011년 중 ISO 20022 이행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및 이행가능성 평가를 수행 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sup>232)</sup>

---

232) 김정규, 앞의 워크숍 자료집 92-94쪽.

## 제 5 장 지급결제산업 관련 법제 개선방안

### 제 1 절 서 설

지급결제산업에 관해서는 개별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며, ‘지급결제’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현재 법적인 정의규정조차 없이, 「한국은행법」의 일부조문과 ‘지급결제업무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지급결제분야의 법제적 접근이 미비하였던 것은 경제학적인 분석과 시스템 운영이 중심이 되어 왔다는 것도 있겠으나,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과 금융감독 담당기관의 감독정책 간 분리체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급결제관련 운영체제로 인하여 입법안 제출 권한이 없는 중앙은행의 경우 내부적인 운영규정에 의존하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지급결제 시스템 자체가 융복합 되고, 새로운 지급수단이 등장하고 그 사용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현재의 관리규정 수준에서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급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감시권한의 명시, 거래당사자 또는 참가기관의 역할과 책임,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문제 등 중요사항에 대한 법제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일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현행 각 법에 분산되어 규정되고 있는 지급결제 관련 법령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부 내용에 관한 개정을 전제로 하는 ‘단기 개선방안’과 지급결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장기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제 2 절 단기 개선방안 : 현행법에 대한 보완

### I. 중앙은행의 감시권한 강화

#### 1. 감독권한과 감시권한의 구분

##### (1)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한

금융규제는 인·허가, 건전성 규제, 검사 및 제재, 위기관리의 4단계 규제 분류방식을 취하고 있으며,<sup>233)</sup> 금융시스템의 완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요구, 제한, 지침의 준수 등의 접근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규제이행 및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게 되며, 다양한 감독수단을 보유한다.<sup>234)</sup> 대표적인 감독수단으로는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등 구체적인 제재권을 제외하면 자료 제출요구권, 조사권, 검사권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법’이라 한다)」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위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함으로써 금융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자료제출 요구권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금융감독원장은 감독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금융위법 제40조).

23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개론」, 2009, 11쪽.

234) 노태석, “금융규제와 과징금”, 은행법연구 제4권 제1호, 2011. 5, 71쪽.



또한, 일정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금융위법 제41조),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를 할 수도 있다(금융위법 제42조). 더 나아가서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 관련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영업을 정지 등을 명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금융위법 제43조).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의 경우에는 「금융위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개별 금융업법들에서 조사권한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다.

## (2) 중앙은행의 감시권한의 근거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를 위한 정책수단은 각국의 실정법에서 중앙은행에 부여한 구체적 권한의 부여 범위에 따라 상이하다.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에 대한 도덕적 권유에서부터 자료제출요구권 및 현장 조사(확인)권(on-site examination)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예컨대, 영국의 「은행법」상 중앙은행은 일정한 경우 시스템 폐쇄명령 등 제재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감시권한이 매우 강력하게 입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sup>235)</sup>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규제에 대한 일반 감독사항은 「금융위법」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지급결제시스템에 관한 감시권한과 금융안정에 관한 일부감독권한을 한국은행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권한을 확대하였다. 즉, 물가안정에 국한 되어 있던 중앙은행의 역할을 2011년 9월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권한과 금융안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1조 제2항에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금융안정에 대한 역할 수행

---

235) 이병목, 앞의 자료집, 67쪽.

을 부여한 것이다. 다만, ‘통화신용정책’에 국한됨을 명시하고 있으나, 통화신용정책의 범위에 대부분의 금융안정을 조율할 수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의 업무가 포함되므로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감시권한 확대의 필요성

중앙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시장안정이라는 목표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 지급결제제도는 금융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은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sup>236)</sup> 이러한 인프라구축을 위해 「한국은행법」이 중앙은행에 부여한 감시권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료제출요구권과 검사요구 또는 공동검사요구권을 통한 감시권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행법」 제88조에서 민간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영규정상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에 대하여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에 대해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은행 및 증권사 등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감시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은행에 대한 검사 요구 또는 공동검사요구권의 행사를 통해 결제리스크관리 상황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한다.<sup>237)</sup> 이외에도 한국은행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도 투자자예탁금으로 행하는 자금이체업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요구 및 공동검

236) 양준모, 앞의 자료집, 109-110쪽 참조.

237) 이병목, 앞의 자료집, 67쪽.

사요구권을 부여받아 행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419조, 제40조).<sup>238)</sup>

이와 같이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책임을 가지는 이유는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상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인과 능력을 겸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은행이 거액결제망을 운영하면서 실시간으로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을 총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sup>239)</sup>

그러나 현재 한국은행이 운영기관 및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에게 지급결제자료를 요구할 경우에 자료제출이 거부당하거나 개략적인 자료만을 제출하는 경우 복잡해지고 국제화된 지급결제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은행참가기관을 중심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지급결제제도의 개방화에 따른 리스크는 비은행참가기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필요시에 개선을 지시하거나 감독기관에 대한 이행요구권 등이 없다면 감시기능은 그 자체로는 무의미해진다. 더욱이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시 감시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신속한 결정이 힘들다. 현재와 같이 감독당국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 감독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동성 공급을 결정하는 체제는 유동성의 즉각적인 공급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번 CPSS 등의 종합적 권고안도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존의 권고안을 확대한 것으로 종합적 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체제의 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금융위기를 통하여 최종대부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금융위기가 발생

238) 이병목, 앞의 자료집, 67쪽.

239) 이하 감시제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은 양준모, 앞의 자료집, 109-110쪽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함.

하기 전에 사전에 통제하는 것이 피감기관의 의무준수비용을 고려하여도 사회적 비용측면에서 월등하게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국은행의 상시적인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위임된 감독기능도 수행함으로써 유동성 공급이라는 당근과 감독결과에 따른 제재수단을 동시에 갖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 FMI 기준 변경의 정신과 합치하는 감독 및 감시 체제 구축이다.

### 3. 감시권의 확대방향

#### (1) 자료제출요구권의 확대의 범위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국은행법 제81조 제1항). 또한,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지 않는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급결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 관련 감독기관에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및 제3항).<sup>240)</sup> 결국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와 관련된 자료제출요구권을 갖는 것은 한은금융망에 참가하는 금융기관과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해서 만이다.<sup>241)</sup>

이에 대하여 금융위기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시스템 교란요인이 은행보다는 비은행금융기관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융불안 등에 능동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료제출 요구 대

240) 이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 등 우리나라의 모든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자료수집, 평가 및 개선유도 등의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241) 한은금융망에 130여개 금융기관이 참가하고 있으며, 한은금융망 외에 금융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CLS 은행 등이 지급결제망을 운영하고 있다.

상기관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을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에서 자료제출요구권에 대하여 개정이 있었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던 것을 ①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 ②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③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확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결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이 추가된 것인데, 이 규정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의 투자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고, 자산규모에 의해 대상을 선별하게 된다.<sup>242)</sup> 그러나 다른 나라에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직접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예가 없는 만큼, 대통령령에서는 자산규모에 따른 제한이 아니라 직접 지급결제에 참여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은 모두 포함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된다.

## (2) 공동검사 요구

### 1) 개정법에 따른 공동검사의 보완과 한계

2011년 개정된 「한국은행법」 제88조에서는 ‘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

242) 이와 관련하여 2011. 11. 3. 「한국은행법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동 시행령 제15조의2 (자료제출요구 대상)에 대하여 “법 제87조 제3호에서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③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 ④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 ⑤ 「보험업법」에 따른 제3보험업, ⑥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⑦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⑧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 또는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다만, 자산규모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신이 해당하는 금융업의 평균자산규모 미만인 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응하도록 하였다.

당초 2008년 7월 14일에 제출되었던 「한국은행법」 개정안에서는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및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해 서면조사 및 실지 조사권을 부여(안 제81조제3항 및 제4항)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 중복<sup>243)</sup>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그대로 규정되지 못하였고, 한국은행이 공동검사를 금융감독원에 요구할 경우 공동검사 이행 의무기간을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한국은행법 제88조). 그간 금융감독원과의 MOU에 의해 운영되던 공동검사의 착수 기간을 대통령령에 명문화하여 공동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한 것이다.<sup>244)</sup>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개정이 개정 이전부터 제기되어 오던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에 따른 위험관리 체계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충분히 수용된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즉, 현행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참여 방식인 대행결제구조(은행이 금융투자회사의 결제를 대행)는 안정적인 위험관리 체계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고, 은행은 금융투자회사의 결제에 대한 법적감시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법」의 개정으로 공동 검사요구는 일부 보완된 면이 있지만, 여전히 즉시 검사가 필요한 사항이나 긴급한 유동성 공급여부 판단을 위한 검사 등의 상황에는 제한적인 효력이 있게 된다.

243) 「금융위법」 제17조 제2호에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44)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1. 8. 31. 참조.



## 2) 중앙은행의 검사권 행사에 대한 고려

조사권 또는 검사권은 행정부가 갖는 행정행위의 하나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상 행정부가 아닌 주체에 의한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예가 있다.

예컨대, 「예금자보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직권조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412조의5에서도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조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중앙은행은 금융기관간 자금결제의 원활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일본은행법 제39조), 신용질서의 유지 및 자금결제의 원활화를 위한 고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과 고사(考査)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일본은행법 제44조 제1항).<sup>245)</sup><sup>246)</sup> ‘고사’란 거래처 금융기관 등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해 일본은행이 해당 거래처 금융기관 등에 들어가 실시하는 조사를 말하는데, 이에 관한 계약(즉 고사할 때는 미리 거래처 금융기관 등에게 연락하여 그 승낙을 얻어야 하고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함)을 체결할 수 있다(동조 제1항).<sup>247)</sup>

---

245) 考査를 하는 때에는 이에 수반하는 거래선 금융기관 등의 업무담당에 배려하여야 하고(동조 제2항), 금융청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는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 등의 자료를 금융청장관에게 제출하거나 그 직원에게 열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3항).

246) 맹수석, 앞의 자료집, 67-68쪽.

247) 맹수석, 앞의 자료집, 67-68쪽.



현행법상 중앙은행에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검사권 또는 직접조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금융감독권한과 중복·상충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다만, 신속한 검사·조사가 필요한 일부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예와 같이 중앙은행과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협약 또는 지급결제 관련 일정범위에 대한 검사협력계약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3) 자본시장법 규정과의 관계

「자본시장법」 제419조에서도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수행과 관련한 결제리스크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두고 한국은행이 공동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본시장법」 제41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은 한국은행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공동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한국은행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자본시장법」의 규정에서는 2011년 「한국은행법」의 개정내용이 반영되고 있지 않아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규정의 위치만으로 본다면, 지급결제에 관한 한국은행의 업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한국은행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 II. 참가기관 확대에 따른 안전성 강화

### 1. 참가자 적격성 심사의 필요성

FMI 국제기준은 개방형 지급결제시스템을 전제로 제시되었다. 특히 참가기관의 진입을 막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sup>248)</sup>

---

248) 양준모, 앞의 자료집, 111쪽.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앞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한 「자본시장법」 제40조의 규정을 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자금이체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이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규정의 내용만으로는 금융투자업자인 금융투자회사는 위탁계좌에 대하여 자금이체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전적인 자격심사의 절차 없이 7일 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sup>249)</sup>

이와 같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격기준 미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참여기준 설정을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예금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은행의 인가기준과 둘째, 증권결제시스템에서의 결제회원의 참여기준이다. 「자본시장법」 제387조에서는 한국거래소가 회원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하면서, 여기에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첫째로 은행의 인가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대표적인 인가기준으로 설립자본금을 들 수 있을 것인데, 현행 은행 설립자본금은 1천억원 이상, 지방은행의 경우는 250억원 이상일 것을 인가요건으로 하고 있다(은행법 제8조 제2항 제1호).

다음으로 한국거래소 ‘회원관리규정’을 보면, 거래소의 회원은 결제이행책임의 부담 여부에 따라 결제회원과 매매전문회원으로 구분하면서,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증권의 매매거래나 장내파생상품거래 또는

---

249) 김자봉, “지급결제기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 한국금융연구원, 2010. 12, 7쪽.

매매전문회원으로부터 결제를 위탁받은 증권회원의 매매거래를 하는 회원을 결제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결제이행책임을 지는 결제회원의 재무요건은 결제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매전문회원보다 높게 설정하였는데, 재무요건을 충족할 것, 전산설비 등의 시설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적합할 것, 회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이 충분할 것, 사회적 신용이 충분할 것으로 정하면서, 재무요건에 대해서는 ①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80% 이상일 것, ②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은 은행 간 신용거래를 위한 기본 인프라이므로, 비은행 금융기관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게 될 경우 은행에 상당하는 자격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지급결제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캐나다의 CP Act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적격성을 충족하는 지 여부에 따라 직접참가기관과 간접참가기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지급결제에 관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기준 없이 직접참가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예시한 기준을 고려하여 비은행 금융기관 즉,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위한 적절한 기준을 「자본시장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지급준비제도 개선

개정 전의 「한국은행법」은 “금융기관은 예금채무에 대하여 예금지급준비금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예금업무’를 영위하고 예금채무를 부담하는 은행의 경우에만 예금지급준비금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게 된 금융투자회사는 지급결제 대상을 투자자예탁금으로 제한하여 CMA와 위탁계좌 등 두 방식에 의한 결제서비스 제공하게 되는데, CMA는 비예금상품이므로 예금이 아닌 투자상품이 지급결제서비스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지급결제를 위한 예치의무 회피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지급결제의 안정성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예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간의 규제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급결제 관련 규제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규제비용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고, 지급결제서비스에 투여되는 금융기관 간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게 된 만큼, 그에 상당하는 지급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하여 시스템리스크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지급준비제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지급준비제도의 도입의미와 현재 역할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금융투자회사는 자금이체의 대상으로 투자자예탁금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투자자 예탁금 자체는 현행법상의 예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준비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었으나, 자금이체가 사실상 지급결제의 업무에 해당되어 고객의 인출요구에 대응하여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지급준비금 예치를 요구하게 된 것은 지급준비제도가 당초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여신운용을 억제하고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최근에는 통화관리(유동성조절)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 「한국은행법」 제62조에서는 “한국은행에 보유된 예금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

관에 대한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유동성 조달 자금으로의 활용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급결제리스크는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투자자 예탁금도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며,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일시결제부족자금의 지원까지 받게 되는 등 제도가 보완된 만큼,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용하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지급준비금 예치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필요에 의하여,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에서는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를 “예금채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로 확대하여 규정하였다. 대통령령에 규정할 구체적 범위는 아직 규정되지 못하였으나,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의 범위가 되는 투자자예탁금에 대하여도 지급준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유하도록 하여 규제비용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Ⅲ.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관리

#### 1. 지급결제시스템의 상호의존성 증가와 리스크관리의 필요성

리스크 관리의 내용은 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들을 일정한 체계를 바탕으로 정형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차액결제 대행에 관한 핵심사항을 지급결제제도의 한 요소로 확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sup>250)</sup>

지급수단의 경우 기존에는 현금 및 예금 등으로 제한되었으나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금융투자회사의 주식위탁계좌자금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주요국의 운영례를 보면 주식위탁계좌

250)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해설”, 2009. 1, 66쪽.

는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며, 은행 간 결제시스템에서는 참여기관이 은행 및 예금수취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참여기관이 투자회사로까지 확대된 것이다.<sup>251)</sup>

이러한 참가기관의 확대로 인하여 결제시스템간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다. 소액결제, 증권결제, 외환결제가 모두 거액결제시스템(신한은금융망)에 연결되는 구조가 된 것이다.

민간 결제시스템과 연계하여 금융기관간 콜거래대금, 증권 및 외환 관련 거래대금 등을 최종결제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은 2010년 7월 현재 일평균 10,563건, 금액으로는 174조원(2009년 1월~2010년 7월)의 지급결제를 처리하고 있으며 12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sup>252)</sup>

참가기관의 확대로 결제시스템 간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면서, 특정 결제시스템의 위험증가 시 다른 결제시스템으로 전이되거나 시스템리스크가 증폭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결제불이행 기관, 지급불능 발생시점, 지급불능 인지시점, 유동성 이용범위 등을 조합,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추가적인 결제불이행은 일평균 결제금액의 7.8%, 직접결제불이행 금액까지 포함하면 22.3% 기록하였다.<sup>253)</sup>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한은금융망 가입기준을 강화하면서 소규모 금융기관들이 한은금융망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참가기관을 통해 자금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참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10년 7월 현재까지 간접참가를 신청한 기관이 없어 CHAPS와 같은 계층구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sup>254)</sup>

---

251) 김자봉, 앞의 보고서, 11-12쪽.

252) 윤성관·김용혁, “한은금융망(BOK-Wire+)의 네트워크 구조 및 시스템리스크 분석”, MONTHLY BULLETIN, 2011. 2, 54쪽.

253) 이준서, 「지급결제산업의 운영현황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1. 4. 15, 27쪽.

254) 윤성관·김용혁, 앞의 자료, 62쪽.



한편,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및 예금의 수입이나 대출·유가증권 운용 등의 결과 발생하는 자금과부족을 콜시장 등 자금시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조정하는데, 개별 금융기관은 자금유동성이 부족하게 되면 지급능력(solvency)에 문제가 없더라도 파산할 수 있게 된다.<sup>255)</sup>

금융기관의 자금유동성 수준은 보유 현금이나 외부로부터의 조달이나 매각 가능한 보유 자산의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데, 보유 자산의 시장유동성이 낮을수록 자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fire sale)할 수밖에 없으며,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산매각을 여타 금융기관이 동시에 하게 되면 당해 자산의 가격은 더욱 더 하락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sup>256)</sup> 그 결과 당해 자산을 담보로 차입이나 Repo(Repurchase Agreement Transaction) 거래를 한 금융기관은 납입담보가치의 하락에 따라 추가적인 증거금을 납입해야 하게 되고, 이러한 프로세스가 반복되면 자금유동성 압박이 커져서 더욱더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장유동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sup>257)</sup>

금융기관 파산으로 자금시장이 경색되면 금융기관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자산매각(디레버리징)을 확대하게 되고 자산가격의 급변동이 발생하여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크게 저하되고,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 채무불이행 리스크 우려가 커지면서 거래상대방을 선별하거나 거래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이 연쇄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는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지급결제 관련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의 정립, 주체의 명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255) 유병갑, “지급결제체제의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2011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자료집, 2011. 7. 13, 107쪽

256) 유병갑, 앞의 자료, 108쪽.

257) 유병갑, 앞의 자료, 108쪽.



## 2. 바젤Ⅲ의 적용

### (1) 바젤Ⅲ의 개요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시스템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제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BCBS, FSB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시스템리스크 축소를 위한 새로운 금융규제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010년에 은행부문의 충격흡수능력의 제고를 통해 시스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자본 및 유동성규제(바젤 Ⅲ)를 마련하였다.<sup>258)</sup>

은행의 경우 단기부채로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자산으로 운용하는 만기변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유동성리스크 유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sup>259)</sup> 특히 유동성리스크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국제결제은행(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BIS)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을 설정하는 등 유동성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회원국에게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sup>260)261)</sup>

바젤Ⅲ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동성 규제에 따라 은행은 단기 스트레 스 상황<sup>262)</sup>에서 발생 가능한 예상 순유출 자금의 100%이상을 평상시

258) 이승환, “시스템리스크와 금융규제”, 금융경제연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11. 5, 1쪽.

259) 정윤미, “FSA 터너리포트 주요 내용”, 조사연구 Review 제26호, 146쪽.

260) 한정미, “금융투자회사의 업무확대” 한국상사판례연구 제24집 제3권, 2011. 9, 203쪽.

261)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2011. 12. 16. 「Basel Ⅲ : A global regulatory framework for more resilient banks and banking systems」 및 「Basel Ⅲ : International framework for liquidity risk measurement, standards and monitoring」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는 2006년 시행된 바젤 Ⅱ의 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2013년부터 시행예정인 바젤Ⅲ의 적용을 위하여 이에 대비하고 있다.

262) 스트레스상황은 다음의 사건이 개별 은행 또는 시장 전체적으로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① 소매예금의 일부상실, ② 무담보부 도매자금 조달능력의 일부상실, ③ 특정 담보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담보부 단기자금 조달능력의 일부상실, ④ 3 단계까지의 신용등급 하락, 추가담보적립 등에 따른 추가적인 계약상 현금유출, ⑤ 시장변동성 증가에 따른 담보가치 인정비율 하향조정, 추가담보 적립, 또는 기타

에도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였으며(LCR규제), 스트레스 상황이 1년 가까이 장기화될 때를 대비하여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축소하고 자본 및 핵심예금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였다(NSFR 규제). 또한, 바젤Ⅲ하의 위험가중자산 증가로 인해 보통주 중심의 자본확충 압력이 높아졌는데, 2019년까지 보통주 중심의 핵심자기자본(Core Tier1)을 평상시 7%, 경기호황시 9.5%까지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sup>263)</sup> 또한, 레버리지의 과도한 축적을 제한하기 위하여 최소 레버리지비율<sup>264)</sup>을 3%로 운용하도록 하였다.<sup>265)</sup>

## (2) 투자자예탁금과 바젤Ⅲ 기준 적용

바젤 Ⅲ는 본래 예금을 수취하는 상업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이를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을 보면,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기존 증권회사에 적용되던 영업용순자본비율(NCR)<sup>266)</sup>에 더하여 바젤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 대상이 되는 투자자예탁금은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

---

유동성 부족의 발생, ⑥ 신용·유동성 공여약정 중 미사용분의 예상치 못한 사용, ⑦ 평판리스크 완화를 위한 채무의 중도상환 또는 비계약적 채무의 인수 등에 따른 자금부족 발생. 이진범·정신동, “글로벌 금융위기와 바젤Ⅲ 유동성 규제기준의 도입”, 경제발전연구 제17권 제1호, 2011, 215쪽.

263)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바젤Ⅲ 기준서 - 글로벌 자본 및 유동성 규제체계」, 2011. 1. 참조.

264) 자본/총익스포저로 정의하며, 분기단위로 산출하며, 2013. 1. 1.부터 2017. 1. 1.까지 BIS 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을 병행하여 운용하기로 하였다.

265) 한정미, 앞의 논문, 205쪽.

266) NCR(Net Capital Ratio)은 영업용순자본비율을 말하며, 증권사의 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뉘 구한다. 일반적으로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되며, ‘증권사판 BIS비율’로도 불린다. NCR이 150% 미만인 증권사는 적기시정 조치 대상이 된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의 증권규제 국제기준에 해당된다.

록 하는 별도예치제도를 취하고 있으며(자본시장법 제74조),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제는 투자자 보호 및 신뢰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금융투자회사는 별도예치대상으로 분류되는 투자자예탁금의 100% 이상을 예치(영 제75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 제2항)하여야 하며, 예치의 방법으로 예수금 예치 또는 신탁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의해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대상이 되고 있다.

본래 상업은행을 위해 만들어진 바젤기준인 만큼, 은행의 고유업무에만 적용되는 사항은 규정될 필요가 없을 것이나, 바젤 III의 유동성 기준에 관한 사항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자산기준, 리스크기반 자본규제 관련 사항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금융투자회사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3. 결제시차로 인한 리스크 보완

#### (1) 즉시 결제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준

은행간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시차는 T+1일이고, 결제구조가 단순하다. 그러나 증권결제시스템에서는 아래 표에서와 같이 상품마다 결제시차가 다르고, CMA의 경우에는 은행 간 결제시스템과 증권결제시스템에 모두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증권결제시스템의 주기자체가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서 그 기간이 긴 것은 아니지만, 지급결제시스템과 연계된다는 측면에서는 은행과의 결제주기 차이에 따라, 유동성 위험 및 RP 가격하락으로 원본손실이 발생할 경우 시장위험이 결제위험으로 전이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sup>267)</sup> 따라서 주식계좌의 지급결제한도 도입, CMA 결제시차 및 환매시차 일치를 통한 유동성 위험 해소해야 할 것이다.<sup>268)</sup>

267) 김자봉, 앞의 보고서, 65쪽.

268) 이준서, 앞의 자료집, 28쪽.

< 표 - 16 > 증권결제주기

구분	한 국	일 본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홍 콩	싱가폴
주 식	T+2	T+3	T+3	T+3	T+2	T+3	T+2	T+3
일반 채권	T+0							
Repo (CP)	T+0(2)	T+0	T+0	T+0	T+0	T+0 (100)		
국 채	T+1	T+3	T+1	T+1	T+2	T+3		T+1

자료 : 정석호, 앞의 자료집, 37쪽.

(2) 차액결제대행에 관한 규정의 정비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시스템을 보면,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한 자금이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행은행을 선정하고 차액결제는 대행은행이 수행하도록 구성하면서 「자본시장법」에는 이와 관련한 근거규정이 없으며, 금융결제원의 규약이나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전술하였다.

따라서 실제 금융투자회사와 대행은행 간의 위임사무는 차액결제 대행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 업무에서 결제리스크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행계약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결제리스크 발생 방지를 위하여 계약의 내용에 반영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였다.

차액결제 대행계약 및 차액결제 대행 관련 리스크 관리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차액결제 대행에 관한 기본사항, ② 대행한도 및 순채무한도 설정·관리, ③ 담보의 제공, ④ 대행은행의 위탁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⑤ 위탁기관의 직접 차액결제, ⑥ 대행은행의 자격

조건, ⑦ 차액결제대행 집중방지 기준, ⑧ 대행은행의 통보의무 등이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차액결제 대행 역시 지급결제제도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차액결제 대행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에 관한 일정한 규율이 필요할 것이다. 차액결제 대행의 기본적 성질은 위임사무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계약이지만 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사항을 당사자 간 자율적 계약에만 일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sup>269)</sup>

따라서 지급결제리스크 방지를 위하여 차액결제 대행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법률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지급결제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 성격상 「한국은행법」이나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해야 하는 사항과는 맞지 않는 면이 있으므로, 후술하는 「(가칭)지급결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에 무게를 더하는 사항이라 판단된다.

### (3)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기존에 한국은행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기관<sup>270)</sup> 중 한국은행이 일중 일시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한은금융망에 가입하였으며 예금지급준비금을 예치하고 일중당좌대출 약정을 체결한 36개 기관에 불과하였다.<sup>271)</sup>

이에 따라, 한은금융망에서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발생하는 일반자금 이체, 콜거래, 외환동시결제 등이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건별로 실시간 총액결제되고 있으며, 자금이체가 실시간으로 완결되므로 지급 지시와 최종 결제시점 간의 시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제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참가기관의 일중 결제유동성 부담이 크다는 단점도 존재하였었다.<sup>272)</sup>

269)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앞의 보고서, 66쪽.

270) '08년 10월 기준으로 총 130개 기관(은행 55개, 증권사 51개 등).

271) 참고자료 '3. 한은 금융망 참가기관 현황' 참조

27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8. 11, 6쪽.

또한, 금융투자회사와 같은 비은행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범위(제11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 등 결제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제지연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수습이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결제리스크의 관리 및 예방을 위하여 한국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sup>273)</sup>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업무 참가 허용이후 한은결제망의 원화자금규모가 일평균 168조원에 달하는데, 이 업무가 주로 업무 마감시간대인 16시 이후 1시간 동안에 전체의 61%이상이 집중되는 특성을 보였다. 이처럼 마감시간 대에 결제가 집중됨에 따라 마감시간대에 증권회사로부터 결제자금을 수취하는 상대기관의 유동성리스크, 다수의 자금이체신청이 거의 동시에 입력·전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당자의 입력오류, 전산시스템 처리오류 등에 따른 한은금융망의 운영리스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대 결제가 집중되면서 결제교착(gridlock)이 발생하는 경우 한 참가자가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여타 참가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는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는 등 한은금융망의 전반적인 결제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일중 결제유동성 지원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sup>274)</sup> 즉, 「한국은행법」의 개정으로 한국은행이 일중 일시적인 결제

273) 2011. 9. 「한국은행법」의 개정에서 ‘제65조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규정을 개정하면서 ① 자금 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긴급히 여신을 하는 경우,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기타 우발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지급자금의 일시적 부족이 발생함으로써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어 일시적으로 여신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여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행요건 완화하면서도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결제유동성 지원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274) 앞의 검토보고서, 7쪽.

부족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한국은행망 참가기관(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확대한 것이다(한국은행법 제81조의2).

< 표 - 17 > 주요국 중앙은행의 일중 결제유동성 지원현황

	미국 연준	일본은행	영란은행
지원 형식	일중당좌대출	일중당좌대출	일중RP
대상 기관	예금취급 금융기관	은행, 신용금고, 증권회사	결제은행, 증권회사1)
지원 한도	자기자본 0.2배 (최고 2.25배)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적격 담보	무담보 (한도증액시 담보 요구)	국공채 등 대출적격담보	국공채
이자	연 0.36%	없음	없음
미상환시 조치	대기성여신 전환 (정책금리 +25bp, 정책금리 +400bp2))	대기성여신전환 (공정할인율, 공정할인율 +600bp2))	대기성여신전환 (정책금리 +100bp, 정책금리의 2배2))
취급 규정	- FRB Operating Circular No.1 Account Relationships	- 일중당좌대월 기본요령	- The Framework for the Bank of England's Operations in the Ster- ling MoneyMarkets



제 5 장 지급결제산업 관련 법제 개선방안

	미국 연준	일본은행	영란은행
	- Account Management Guide		- RTGS Reference Manual

주: 1) 영란은행↔은행↔증권회사간의 RP(back-to-back RP)를 통해 증권회사에 대해 간접적으로 결제유동성을 지원

2) 대기성여신 전환신청이 없이 자동으로 전환되는 경우 적용

자료: 국회, 앞의 검토보고서, 15쪽의 내용을 발췌·수정함.

다만,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sup>275)</sup>

우선, 현재 은행 등 일중당좌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예금지급준비금 예치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충분한 결제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증권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또한, 은행의 경우 일중당좌대출자금을 해당 기관이 당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자금조정대출로 자동 전환되도록 되어 있으나,<sup>276)</sup>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한국은행법」 제64조에 따른 여신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상환시 담보를 처분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공채 등 적절한 담보가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에 일중당좌대출자금을 지원할 경우 여신지원 조건의 준수 상황 등을 파악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지원기관의 유동성 사정과 자금의 조달·운용상황 등 지급결제 이행 및 대출자금

275) 이하, 고려사항에 대한 내용은 최승필, 「금융표준화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1. 8. 9, 워크숍 토론자료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276)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16조 (일중당좌대출의 미상환금액에 대한 처리 등) ① 금융기관이 제15조에 따른 상환마감시각까지 일중당좌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때에는 그 미상환금액을 자금조정대출로 전환한다.

관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직접조사권 및 금융감독원과의 관련 정보 공유권·공동검사 요구권 등이 부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일중당좌대출자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동 제도 이용제한이나 가산금리 부과 등의 제재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침익적 조치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근거는 법률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의 여신을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한국은행의 여신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왔거나 불건전한 대출방침 또는 투자방침을 지속하여 왔다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용자를 거부하거나 해당 여신에 적용하는 할인율 또는 이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66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표 - 18 > 감시대상 중요지급결제시스템(2009년말 기준)

구 분		운영기관	
중요 지급 결제 시스템	신한은금융망	한국은행	
	어음교환시스템	금융결제원	
	은행공동망		타행환
			전자금융
	채권기관투자결제시스템	한국예탁결제원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	한국거래소	
	CLS시스템	CLS은행	

자료 :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보고서」, 2010. 4, 10쪽.

## IV. 지급결제 표준화제도의 법제화

### 1. 지급결제 표준화제도의 필요성

#### (1) 국제기준의 수용

우리나라의 금융정보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금융기관 내부 전산화’ → ‘금융공동망 구축’ → ‘금융서비스 전달채널의 다양화’의 단계를 거치며 빠르게 발전하여 왔다. 이에 따라 기존의 대면·서면 방식의 창구거래는 1990년대 후반 이후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비대면 전자방식 거래로 대체되고 있다.<sup>277)</sup>

이와 같이 표준화를 둘러싼 환경은 국내외에서 크게 변하고 있으며, 표준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WTO/TBT 협정에 따라 서명국들은 국가표준이나 기술기준을 제정할 때 국제표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sup>278)</sup> 우리나라도 WTO/TBT 협정에 따라 서명국으로서 국제표준을 적용하여 국내표준을 제도화하여야 하는 만큼, 지급결제 관련 새로운 기술의 보급이나 새로운 수단의 등장에 대비하여 표준화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표준화 되지 않은 지급결제 수단이나 시스템은 국내외 지급결제산업에서 호환·유통되지 못하여 스스로 수익이 낮아지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표준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책추진에 대하여 미이행 금융기관들을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수익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표준화하게 될 것이고, 때문에 표준화에 관한 정책 목적은 달성될 것이다.

277) 김성천, “지급결제 절차 및 수단의 표준화”,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1. 8. 9, 33쪽.

278) 권오신, “미국 금융표준화 추진체계 현황과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2009. 10, 64쪽.

(2) 「산업표준화법」의 수용한계

헌법 제127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고 규정하였고,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을 제정하여,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표준을 준용하여야 하는 경제사회 활동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가표준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산업표준화법」에서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보급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 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산업표준화법」이 적용되는 산업표준화의 범위에는 대부분 광공업, 기술에 관한 표준화분야가 해당되고 전기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 산업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절차·방법·체계·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해당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sup>279)</sup> ‘금융’도 서비스의 한 영역으로 보면 이 규정에 따라 금융서비스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도 이 법에 따라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표준화법」 자체가 광공업의 기술인증 등의 표준화에 적합하게 설계된 법률인 만큼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의 특성이 적절히 반영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있어서도 국가표준화 전략(정보통신분야)에 포함되어 있으나, 스마트IT분야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어, 이동통신기술의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sup>280)</sup>

이 법 이외에 다른 법에서 금융분야의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날로 복잡·고도화되고 있는 금융

279) 「산업표준화법」 제 2 조 제 2 호 사목 참조.

280)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모바일 금융서비스 국가표준화 추진현황”, 2011 전자금융세미나 자료집 참조.

분야 및 지급결제산업분야의 표준화를 현행 「산업표준화법」의 규정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 (3) 지급결제 표준화의 구분 필요성

금융부문의 표준화는 금융기관들의 사무자동화, 신상품의 개발, 원활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기관 간에 정보처리 양식, 절차, 매체 등의 호환성을 보장하는 것이다.<sup>281)</sup>

최근에는 신속함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장의 요구에 맞게 금융관련 기술과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고 이에 금융권은 기술의 발전과 고객의 요구에 맞는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sup>282)</sup> 해외의 대기업들이 스마트 폰을 기반으로 한 결제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이미 상용화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자칫 관련 법규나 제도의 제정을 소홀히 하다가 새로운 시장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sup>283)</sup>

현재는 한국은행의 ‘운영규정’ 제12조에서 “한국은행은 신한은금융망 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이 사용하는 장비와 통신장비, 송수신전문 및 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하나가 지급결제 관련 표준화제도의 근거에 해당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 2. 지급결제 표준화의 법적근거 설정

### (1) 지급결제 표준화에 대한 법적 근거의 위치

‘지급결제산업분야의 표준화를 현행 「산업표준화법」의 규정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지급결제는 매우 정교

281) 강임호, “전자금융 발달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당국의 과제와 역할”,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사무국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10. 12, 68쪽.

282) 신기술이 나타나면 그것에 대하여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쟁을 하게 되지만, 그것의 표준을 정하여 적용하면 신규서비스의 도입과 확산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283) 김동현, 앞의 자료집, 13쪽.

한 매커니즘을 갖는 분야이며, 지급결제산업 분야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므로 우리 표준의 국제화를 위하여 우리의 표준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 있을 것이고, 지급결제의 표준화는 다른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별도의 법적 근거를 갖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별도의 법적 근거를 갖는 경우 그 방법으로는 「산업표준화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금융표준화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과 「한국은행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한국은행의 책무로 지급결제표준화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산업표준화법」의 표준화 대상으로서의 ‘산업’에 지급결제 분야를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산업표준화법」의 적용대상 대부분은 제품이나 기술에 관한 것이며, 표준에 해당되면 국가표준(KS) 지정되는 것이므로 금융서비스와 지급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것과는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화의 추진 주체를 중앙은행으로 설정할 경우 「한국은행법」에서 중앙은행의 업무에 이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거나, 「산업표준화법」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규정하고 있는 예를 볼 수 있다.<sup>284)</sup>

이와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전반을 다루며, 전자지급거래와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표준화된 지급결제 수단의 이용에 대한 근거를 둘 필요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284) 「산업융합촉진법」 제29조 (산업융합 표준화) ① 정부는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표준 개발 및 보급
2. 산업융합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산업융합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그 밖에, 표준화로 인해 호환이 잘 된다는 것은 결국 리스크의 전이 체계 역시 용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화와 함께 보안문제도 함께 다룰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의 보호대책, 해킹에 대한 보안 등의 조치가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2) 표준화 추진의 주체 설정

### 1) 표준화 추진주체의 단일화 필요성

지급결제 관련 표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술적인 내용 그 자체는 계속 변화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규정할 수도 없다. 또한, ‘표준’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국내의 독자적인 표준체제를 만드는 것은 표준의 유동성과 보안성, 국제적인 금융표준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하면, 가능한 일이 아니므로, 표준화에 관하여 법적으로 고민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은 결국 추진주체 및 추진근거의 설정이 될 것이다.

현행 금융표준화의 경우 국가표준기구(기술표준원) 주도로 위원회를 두고 금융표준업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표준화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산업표준화법」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행의 ‘운영규정’ 제12조에서 “한국은행은 신한은금융망 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이 사용하는 장비와 통신장비, 송수신전문 및 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지급결제에 관한 일부 표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화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현재는 일부 중복된 표준화의 진행이 나타남에 따라, 각 표준화 추진기관의 이해관계 및 사용요구 따른 표준화 진행으로 각각의 유사한 표준화 진행되는 문제가 있다.<sup>285)</sup>

285) 각 기관 별 금융관련 IC칩 표준화 진행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또한, 표준화 추진기관의 보안전문성 부족하여, 일부 표준화 추진기관들은 충분한 보안전문 인력의 부재로 표준화 추진 시 보안성 검토와 검증 능력의 부족으로 추후 보안성 검토 작업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분야에 있어서도 다양한 금융 거래 수단과 정보화 분야 중 IC칩에 편중되어 표준화 진행되고 있으므로, 모바일 banking 플랫폼, CD/ATM 기기, 금융권 정보보호체계, 보안감사 표준 등에 관한 보안 부문 규격 및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밖에도 IC칩 카드에 적용되는 비밀키 관리·운영기관의 중복(여신금융협회, 금융결제원)으로 인한 중복투자 및 운영기관의 보안 감사 및 통제의 어려움이 문제로 나타났다.<sup>286)</sup>

보안 이슈 사항에 대한 공동대처할 수 있는 체제의 부재도 문제인데, 금융분야 또한 암호알고리즘의 2010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표준 재·개정 시 이에 대한 알고리즘 정책이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기관이 없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sup>287)</sup>

## 2) 표준화 추진의 구체화

지급결제분야 표준화의 제도적 추진을 위하여 그 법적근거와 추진주체를 구분하여 보면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은행이 추진하도록 하고 운영규정의 표준화 근거를 「한국은행법」에 보완하여 지급결제 표준화 규정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한국은행은 실제 지급결제 관련 표준의 전문성이 보장될 수는 있겠으나, 표준의 보급이나 운영기술적인 면에서 미흡할 우려가 있다.

둘째, 현행과 같이 기술표준원이 운영하도록 하되, 「산업표준화법」에 지급결제 또는 금융표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전문성을

286) 성재모, 「금융표준화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1. 8. 9, 131-132쪽.

287) 성재모, 위의 자료집, 131-132쪽.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지급결제분야 표준화 제정 및 보급에 전문성이 보장될 수는 있을 것이나, 다른 산업분야와의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지급결제에 관한 별도의 법이 제정될 것을 전제로 하면, 「산업융합촉진법」의 예와 같이 정부가 금융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표준기관을 지정하며,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법률이 제정될 것이라는 전제를 하여야 하므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금융분야의 전문성이 보장되고 가장 적극적으로 표준화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 2009년 9월 현재까지 금융부분(financial service) 표준개발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은 ASC X9가 유일하다. ASC X9는 1976년 은행연합회 산하의 작은 표준화위원회로 출범하여 현재까지도 예전 이름인 ASC(Accredited Standards Committee)을 사용하고 있다. 설립 당시에는 은행만 참가할 수 있었으나 1984년 ANSI로부터 표준개발기관으로 인정되면서 현재는 비금융기관도 참가하고 있다.<sup>288)</sup> 미국은 1995년 WTO/TBT 협정으로 공적표준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표준화 체계 전환결정(1995년), 국가기술이전촉진법 제정(1996년), 의회 앞 정부의 민간표준 도입실태 보고 확정(1998년), 정부와 민간 비영리 법인(ANSI)간 양해각서 체결(2000년) 등 일련의 조치를 속행하였다. 이러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미국이 기술선진국이었던 배경이외에도, 의회 차원에서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각성과 정부조직으로 하여금 강력한 추진력을 발동하게 만든 국가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이다.<sup>289)</sup>

한편, 이상의 방법들에 따라 표준화를 추진할 경우 그 표준에 따르지 않거나 이행을 해태하는 경우에 제재규정을 두는 것에 대한 검토

288) 권오신, 앞의 논문, 87쪽.

289) 권오신, 앞의 논문, 97쪽.

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준화를 추진하고 보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해당 기술이나 수단의 호환성을 확보하여 사업성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도태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제재조항을 두는 것 보다는 평판도의 문제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3 절 장기적 개선방안 : 지급결제의 단일 법제화

#### I. 지급결제 관련 단일법의 필요성

이하에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지급결제 관련 여러 법률들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신하여 지급결제 관련 일반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FMI는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중앙은행, 시장감독자 및 기타 관계당국의 책무’와 관련하여 중앙은행, 시장감독자 또는 관계기구 등의 적절한 규제, 감독 및 감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관련 규정은 현재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10여개 법에 산재하여 있다.

예컨대, 「한국은행법」은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이 갖는 역할과 소극적 의미의 감독권한을 담고 있으며, 「통합도산법」은 지급결제의 완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은행법」에서는 은행의 업무에 지급결제업무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의 제정·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은행간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가 가능하게 되는 등 지급결제 관련 사항이 금융관련 개별법에 산재하여 있다.

한편, 지급결제제도 관련 사무에 있어서도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관장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거액결제시스템에 대해서만 「한국은행법」에 의해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이라는 동일한 기능에 대한 규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이한 규제원칙을 지닌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국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간 규제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정의 취지 가운데 하나는 규제차익의 해소에 있었으나, 지급결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규제차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sup>290)</sup>

법체계적인 면에서 살펴보아도, 「한국은행법」에서는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근거만을 두고 지급결제 관련 구체적인 사항들은 모두 운영규정에 두고 있다. 심지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의나,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정의까지 운영규정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체계는 다른 산업분야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많은 사항을 운영규정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의 기반이 되고, 많은 참여기관이 존재하는 ‘지급결제산업’이라는 큰 산업분야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 감독업무 담당기관 간 명확한 업무 배분체계 정립과 감독기능 강화와 감시기능 도입, 지급결제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급결제시스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sup>291)</sup>

## II. (가칭)지급결제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구성

### 1. 법률구성의 전제

지급결제 관련 일반법을 「(가칭)지급결제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안’이라 한다)」이라 하고, 이 법률안의 구성에 있어서 몇 가지 전제가 되는 사항을 검토해 본다.

290) 김자봉, 앞의 보고서, 51쪽.

291) 이준서, 앞의 자료집, 28쪽.

첫째, 감독권한과 감시권한의 협조체제의 구축이다. 우리나라는 통화정책과 금융감독 담당기관 간 분리체제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안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는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지급결제제도의 감시기능과 금융감독당국이 담당하는 감독 및 규제기능을 혼동하여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BIS 산하 세계금융제도위원회(CGFS)에서도 “거시건전성정책 설계 및 수행에 관한 7대 원칙”을 제시(2011.1)하면서 거시건전성정책은 독립적 중앙기구 또는 공식 위원회를 통해 수행되며 중앙은행은 동정책 수행의 주체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고, 통화신용정책은 금융기관간 자금흐름을 통해 효과가 전달되기 때문에 금융기관간 원활한 자금흐름을 구현하는 지급결제제도는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인프라가 된다.

또한, 지급결제제도 감시기능은 지급결제제도를 모니터링하고 안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평가하며 필요시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기능으로서, 지급결제도 참가기관간 상호관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초점을 두는 감독 및 규제기능과는 상이한 것이므로 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292)</sup>

이와 같이 금융안정기능을 수행하는 두 기관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정보교류, 거시건전성 정책협조 등의 측면에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기관 사이에 원활한 협조체제의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시스템 위기시에는 통화정책과 감독정책간 거시건전성 관련 긴밀한 협조체계를 공식화하는 정책체계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sup>293)</sup>

29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지급결제제도 감독법안」검토보고서, 2010. 4, 6-7쪽 참조.

293) 한국은행은 현재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공동검사 형식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한국은행은 농협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급청산결제업무는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sup>294)</sup>

둘째, 국제기준의 반영이다. 법률안의 구성에는 현행법의 주요내용이나 관계이외에 최근 새롭게 제시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의 주요기준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 2. 한국은행법과의 구성 비교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의 설치, 권한, 위원회 구성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이 중심이 되는 법이다. 지급결제에 관한 사항이 제28조, 제81조, 제88조 등에서 규정되고 있으나, 사실상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법률안이 구성되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고 예상한다면 이들 규정은 「한국은행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이 주체가 되며 감시권한을 행사한다는 근거만 명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3. 운영규정과의 구성 비교

운영규정에서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다른 나라의 법률수준이라는 사실은 이미 설명하였다. 따라서 법률안이 구성된다면, 실제 지급결제 관련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수준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구체적인 주체와 업무에 관한 사항은 후술한다.

---

전산장애 사고가 발생한 뒤 금융감독원 실무자와 공동검사와 관련된 협의를 하고 금통위 의결을 받기까지 닷새가 소요됐으며 일주일 만에 검사에 나설 수 있었다. 더욱이 금융감독원이 공동검사 요청을 거부하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금융개혁 어떻게] 금융감독 전문가 2인 지상논쟁”(서울신문, 2011. 5. 13(<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513004007>))).  
294) 맹수석, 앞의 자료집, 67쪽.



#### 4. 「지급결제제도 감독법(안)」과의 구성 비교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하여 2009년 9월 16일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집중시키는 내용의 「지급결제제도 감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10년 4월 소관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지급결제제도운영과 관련한 한국은행의 법적기반을 약화시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중앙은행법과 지급결제 관련법을 통해 지급결제제도 감시기능을 중앙은행에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와도 어긋나 정책 공조에도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여 이 법안의 내용대로 제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지급결제제도 감독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요지급결제제도 지정,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사항,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및 운영기준의 개정 명령에 관한 사항,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에 대한 검사, 지급결제업무협의회 설치 등이 있다.

법률안의 구성에는 「지급결제제도 감독법(안)」의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 5. 소 결

법률안의 구성은 「한국은행법」, 운영규정, 「지급결제제도 감독법(안)」의 지급결제 관련 주요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그 밖에 금융 관련 법률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설계한다. 이에 따라 이들 법에서 법률안에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또한, 법률안은 2011년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의 주요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률안의 내용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 표 - 19 > 지급결제 관련 법령의 주요 규정 발취·비교

한국은행법 (지급결제 관련부분 발취)	운영규정	지급결제제도 감독법안	FMI 원칙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법적기반
제 1 조 (목적)	제 1 조 (목적)		
제 2 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준비	제 2 조 (정의)	제 2 조 (정의)	지배구조
제54조 (한국은행의 예금수입)			
제55조 (지급준비금 의 예치 등)	제 3 조 (지급결제제도 의 운영·관리)	제 3 조 (지급결제 제도의 지정)	종합적 리스크 관리체계
제56조 (지급준비율 의 결정 등)	제 2 장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제 4 조 (운영기관 의 의무)	신용리스크
	제 4 조 (신한은금융망 의 운영)		
제57조 (한계지급준 비금)	제 5 조 (취급업무)	제 5 조 (운영기관 에 대한 감시· 감독)	담 보
제58조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규모별 지급준비율)	제 5 조의2 (예금계좌별 대상거래의 구분)	제 6 조 (참가기관 의 의무)	증거금
제59조 (최저지급준 비금의 계산)	제 5 조의3 (결제자금 절약을 위한 동시 처리)	제 7 조 (참가기관 에 대한 감시· 감독)	유동성리스크

제 3 절 장기적 개선방안 : 지급결제의 단일 법제화

한국은행법 (지급결제 관련부분 발취)	운영규정	지급결제제도 감독법안	FMI 원칙
제60조 (과태금의 부과 등)	제 6 조 (가입자격 및 약정체결)	제 8 조 (제재)	결제완결성
제61조 (지급준비율 의 인상)	제 7 조 (지급결제시스 템의 신한은금융망 이용)	제 3 장 위기대응 체계	자금결제
제62조 (지급준비금 의 사용)	제 8 조 (차액결제의 요 청 및 처리)	제 9 조 (지급결제 업무협의회 설치)	실물인도
제63조 (지급준비자 산제도)	제 9 조 (비용부담)	제10조 (위기상황 인식 및 대응)	증권예탁기관
제 3 절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제64조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제10조 (전문의 송수신)	제11조 (비상조치)	가치교환형 결제시스템
제65조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제11조 (전문의 처리 시점)	제12조 (국회보고)	참가기관 채무불이행시 규정 및 처리절차
제66조 (한국은행의 용자거부 등)	제12조 (표준화)	제13조 (과태료)	분리보관 및 이전
제67조 (한국은행의 여신제한)	제13조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의 의무)		일반사업 리스크
제 7 절 지급결제업무	제14조 (업무지속성 확보)		위탁 및 투자리스크

제 5 장 지급결제산업 관련 법제 개선방안

한국은행법 (지급결제 관련부분 발취)	운영규정	지급결제제도 감독법안	FMI 원칙
제81조 (지급결제 업무)			
제81조의2 (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제15조 (면책)		운영리스크
제 8 절 기타 업무 제82조 (외국환 업 무 등)	제16조 (국내외 지급결 제시스템과의 연계)		접속 및 참가기준
제83조 (환율정책 등 에 대한 협의)	제16조의2 (콜거래중 개시스템과의 연계)		계층화 참가제도
제84조 (환거래계약)	제17조 (운영시간 및 휴무)		FMI간 연계
제85조 (국제기구에 서의 정부대표)	제 3 장 결제리스크의 관리  제18조 (결제리스크 관 리방안의 강구)		효율성과 실효성
제86조 (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등)	제19조 (순채무한도의 설정)		통신절차와 표준
제 5 장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  제87조 (자료제출 요구권)	제20조 (순채무한도의 조정요구)		규정 및 핵심절차의 공표

제 3 절 장기적 개선방안 : 지급결제의 단일 법제화

한국은행법 (지급결제 관련부분 발취)	운영규정	지급결제제도 감독법안	FMI 원칙
제88조 (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제21조 (담보증권의 제공)		시장자료의 공개
제89조 (재의요구권)	제22조 (담보증권의 사용·처분)		FMI에 대한 규제, 감독, 감시
제 6 장 정부 등과의 관계 제90조 (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제23조 (결제부족자금의 공동분담)		규제, 감독 및 감시권한과 자원
제91조 (열석발언)	제24조 (분담금의 상환)		FMI 관련 정책의 공표
제92조 (재의요구)	제25조 (차액결제대행)		FMI 관련 기준의 적용
제93조 (정책수립시의 자문)	제26조 (차액결제대행의 신청)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94조 (자료협조)	제27조 (차액결제위탁기관의 순채무한도 관리)		
제95조 (감사원의 감사)	제28조 (차액결제대행 관련 담보 관리)		
제96조 (국회보고 등)	제29조 (차액결제대행은행의 공동분담 등)		
	제30조 (차액결제대행은행의 통보)		

제 5 장 지급결제산업 관련 법제 개선방안

한국은행법 (지급결제 관련부분 발취)	운영규정	지급결제제도 감독법안	FMI 원칙
	제31조 (차액결제대행 업무의 안전성 확보)		
	제32조 (차액결제위탁 기관의 차액결제 직 접참가 허용)		
	제 4 장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제33조 (감시업무의 내용)		
	제34조 (감시대상 지 급결제시스템)		
	제35조 (감시대상 지급 결제시스템의 분류)		
	제36조 (자료의 제출 요구)		
	제37조 (평가기준)		
	제38조 (평가지기)		
	제39조 (개선요청)		
	제40조 (지급결제시스 템 운영기관의 통보 사항)		

한국은행법 (지급결제 관련부분 발취)	운영규정	지급결제제도 감독법안	FMI 원칙
	제41조 (긴급상황시의 조치)		
	제42조 (세부 감시방법)		

표시 부분을 법률안에 대한 주요 반영대상으로 구상함

### Ⅲ. 법률안의 주요내용

#### 1. 목적조항의 구상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하여 목적조항의 개정이 있었다. 동법 제1조에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금융안정’을 한국은행의 업무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대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 논란이 있었는데, 이는 금융안정을 포함시키는가 여부에 따라 한국은행에게 직접검사권, 자료제출권 등 감시권한을 강화하는 의미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sup>295)</sup>

그러나 법률안에서는 ‘금융안정’을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률안은 지급결제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금융안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법률안의 구체적인 목적도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라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한국은행법」에서 ‘금융안정’에 관한 사항을 한국은행의 업무범위안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을

295) 이에 관한 상세는 이태규,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강화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원, 2010. 3, 44-45쪽 참조.

위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주로 한국은행이 수행하게 되는 법률안에서 주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를 중복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법률안의 목적조항의 내용에는 기존 금융안정 관련 법률의 목적조항의 내용과 FMI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FMI원칙에서는 제1원칙에서 ‘법적기반’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다. “FMI는 관련된 모든 사법권역에서 각 업무면에 관하여 확고하고, 명확하며, 투명하고, 집행가능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안의 목적조항에는 이를 반영하여 지급결제에 관한 근거법이 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감시업무의 수행주체와 수행방법, 지급결제 관련 리스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들이 규정될 것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 표 - 20 > 금융안정 관련 법률의 목적조항 비교

<p>한국은행법</p>	<p>제 1 조 (목적)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p>
<p>금융위설치법</p>	<p>제 1 조 (목적)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예금자보호법</p>	<p>제 1 조 (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이 파산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p>



	예금보험제도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급결제감독법(안)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감독체계를 정립함으로써 동 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금융거래 결제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정의규정의 고려사항

정의규정에는 지급결제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기존에는 법령 수준에서 지급결제에 관한 정의규정 없이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법령의 적용범위 판단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 밖에 지급결제 관련 용어 예컨대, 참가기관, 운영기관, 지급결제시스템 등 정의를 명확히 하여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의규정의 지급결제를 정함에 있어서는 현행 ‘운영규정’상의 정의규정과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관련 규정,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절차’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표 - 21 > 정의규정 참고

운영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 2 조 (정의) 11.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	제 2 조 (정의) 2. “참가기관”이란 세칙 제5조제1항과 제

운영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
<p>1. “지급수단”이란 그 소지인 또는 사용자가 자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외의 모든 장표 또는 전자적 방식의 수단을 말한다.</p> <p>2. “지급결제시스템”이란 자금의 이체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하며 지급수단, 참여기관, 운영조직, 업무처리 규정 및 절차, 전산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p> <p>3.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란 지급결제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지급수단의 교환 또는 이체지시의 송수신을 중계하고 이에 따른 거래의 청산 또는 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p> <p>4. “금융기관”이란 법</p>	<p>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p> <p>12.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기관에 연결된 계좌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p> <p>나.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p>	<p>2항에 따라 신한은행금융결제망(이하 “신한은금융망”이라 한다)에 가입한 기관을 말한다.</p> <p>2-1. “간접참가기관”이란 세칙 제5조제6항에 따라 참가기관을 통하여 신한은금융망을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p>

운영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
제11조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p>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p> <p>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p>	

### 3. 감시권한 관련 고려사항

한국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은행의 단독조사권이 보장되어 있으며,<sup>296)</sup>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해서는 자료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하여서는 금융감독원에 검사요구 또는 공동검사권 및 검사결과 요청 등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감시권한의 구체적인 수행방법과 관련하여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 당시에도 한국은행이 긴급여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독자적인 조사권을 보장하느냐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중앙은

296) 「한국은행법」 제65조 제3항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행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경우 사실상 금융감독의 중복을 가져와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감독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며, 기존 법령과의 상충이 있다는 견해에 따라 이 부분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금융위기 등의 경우에 있어서 결제시스템으로부터의 위협전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필요시에 관련 금융기관 등의 현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sup>297)</sup> 여기에는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및 민간지급결제제도 운영·참가기관에 대한 서면·현지조사권을 부여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국의 지급결제 관련 법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관련 감시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법」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물가안정을 중앙은행의 우선적 목적으로 설정하고 그를 위한 범위내에서 금융안정을 중앙은행의 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행사할 수 있는 감시권한은 인정하되, 검사권 등 감독권한은 보조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와 같이 관계 금융기관과 내부적인 계약에 따라 지급결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직접검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4. 지급결제위원회의 설치

일반적으로 지급결제에 관한 감시업무는 중앙은행의 소관사항이며, 감독업무는 금융감독당국의 소관사항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융당국의 감독권한에 관계없이 중앙은행법과 지급결제관련법을 통해 지급결제제도 감시기능을 중앙은행에 명시적으로 부여해 오고 있으며, 지급결제분야의 국제기준 제

---

297) 맹수석, 앞의 자료집, 68-69쪽 참조.

정기구인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sup>298</sup>는 중앙은행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이 감시하는 것을 중앙은행의 책무로 규정<sup>299</sup>하고 있다.<sup>300</sup>

그러나 금융시스템은 날로 복잡해지고 융합하고 있어 어떤 부분이 감시이고, 어떤 부분이 감독의 영역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직접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과 금융기관의 인·허가는 명확하게 감독의 범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 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무규정들과 조치내용을 보면 그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감독의 목적이 되는 금융안정의 경우 관련 기능이 중앙은행, 감독당국, 정부 등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나 감독당국, 정부 어느 한 곳에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책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률안에서는 ‘지급결제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적어도 지급결제 분야에서만은 중앙은행, 감독당국, 정부 등이 협의하여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사항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단독으로 지급결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결정하여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조직문화에서는 어려운 일이므로, 위원회를 통하여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의사 결정에 정부가 참여하도록 하여 집행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최근 미국이나 영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시건전성 관련 위원회의 설립과 일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 위원

---

298)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중앙은행간 협력을 위해 1990년에 설립되었고,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핵심원칙’과 ‘증권결제시스템 권고안’ 등 지급결제시스템의 국제기준이 여기에서 제정되고, 그 내용은 IMF 등 국제기구와 각국 중앙은행의 지급결제부문 운영 및 평가기준이 된다.

299) CPSS, Core Principles for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 BIS, 2001.

3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지급결제제도 감독법안」 검토보고서, 2010. 4, 7-8쪽.

회의 구성과 의장에 관한 사항, 의결업무는 현행 「한국은행법」의 금융통화위원회의 예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 개선요청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중앙은행의 감시권한이 강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국내의 경우에도 지급결제제도 운영에 관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결제제도 운영·참가기관에 대한 시정지시권을 부여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이행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sup>301)302)</sup>

그러나 감시기능의 지나친 강화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고,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재를 하는 것은 권한 밖의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규정’의 예를 보면, 제39조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을 평가한 결과가 총재가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총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해당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준의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개선요청을 받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한국은행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안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개선요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6. 소 결

이상에서 검토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기준으로 조문별 내용을 구성하여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301)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은행법 개정 방향에 대한 검토」, 2009. 8, 39-40쪽.

302) 맹수석, 앞의 자료집, 68-69쪽.

< 표 - 22 > 법률안의 구성예시

장	조문의 구성	내 용
총 칙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li> <li>- 지급결제의 원활화 도모</li> <li>- 지급결제제도 운영의 기반확립</li> </ul>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결제의 법률적 정의</li> <li>- 지급결제시스템, 지급결제수단, 자금이체, 운영기관, 참가기관 등</li> </ul>
	지급결제 시스템 관계 당국의 책무 (협력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은행, 금융규제당국, 정부의 감독 및 감시수행의 협력의무</li> <li>- 일관성 있는 규정의 적용</li> <li>- FMI원칙상 관계당국의 책무 반영</li> </ul>
지급 결제 위원회	설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행에 설치(「한국은행법」상 금융통화위원회 설치 참조)</li> </ul>
	업 무 (의결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li> <li>- 금융기관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li> <li>-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 검사 요구</li> <li>- 기타 지급결제제도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위원회가 의결해야 할 사항</li> </ul>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의 자격, 임기 등(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자격 참고)</li> </ul>
	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행총재가 겸임하는 안(금융통화위원회의 예 참고)</li> <li>- 한국은행총재와 금융위원회 추천 위원이 공동의장으로 운영하는 안</li> </ul>



제 5 장 지급결제산업 관련 법제 개선방안

장	조문의 구성	내 용
지급 결제 제도의 운영 및 관리	지급결제 제도의 지정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기관을 지정, 엄격한 기준을 적용
	신한은 금융망의 운영	- 한국은행이 거액결제시스템을 직접 운영 - 신한은금융망의 취급업무
	신한은 금융망의 이용	- 참가기관의 이용신청절차 - 이용약관에 관한 사항
	참가자의 적격성 기준	- 비은행 금융기관의 직접참가에 따른 순채 무한도, 담보, 분담금제도 등 기준을 마련
	운영기관의 의무	-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상의 효율성과 안전성 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규정 - 한국은행 및 지급결제위원회에 대한 운영 사항 보고의무 등
	참가기관의 의무	- 참가기관의 건전한 운영, 운영규정 준수 - 예금잔액의 유지 등
시스템 위험의 방지	종합적 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	- 리스크관리 책임기관의 명시 - 위기상황의 인식 및 대응절차의 명확화
	순채무한도 의 설정	-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 순채무한도의 조정요구에 관한 사항 등
	유동성 리스크의 관리	- 결제리스크 관리방안의 강구 - 바젤 III 기준의 수용방안 고려
	결제완결성 의 보장	- FMI 원칙의 결제완결성 보장의 내용을 반영 - 「통합도산법」 제120조와의 관련성 고려

제 3 절 장기적 개선방안 : 지급결제의 단일 법제화

장	조문의 구성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의 결제완결성 지침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li> </ul>
	<p>업무지속성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시스템 장애, 재해, 파업, 테러 등에 대비하여 업무가 중단됨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li> <li>- FMI의 운영리스크 보완조치 고려</li> </ul>
	<p>일시결제 부족자금의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포함 (현행 「한국은행법」 제81조의2 참조)</li> </ul>
	<p>결제부족 자금의 공동분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보증권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결제자금이 부족할 경우 다른 차액참가기관의 공동으로 분담하도록 설정 (현행 ‘운영규정’ 제23조 참조)</li> </ul>
	<p>차액결제 대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의 참가기관에 대한 차액결제 대행에 관한 사항</li> <li>- 차액결제대행의 신청 등</li> <li>- 차액결제위탁기관의 순채무한도 관리 등</li> </ul>
	<p>담보증권의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기관의 담보제공</li> </ul>
<p>적절한 결제 자산의 보장</p>	<p>지급준비금의 예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치의무 및 근거 (현행 「한국은행법」 제55조 참조)</li> </ul>
	<p>지급준비금 적립대상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치의무자의 범위 및 지급준비율의 산정 (현행 「한국은행법」 제55조의 규정에 대상을 명시함)</li> </ul>
	<p>지급준비금의 사용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결제자금으로 사용</li> </ul>

제 5 장 지급결제산업 관련 법제 개선방안

장	조문의 구성	내 용
지급 결제의 표준화	지급결제의 표준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결제 관련 표준화의 근거규정을 마련</li> <li>- 정부가 주체가 되는 표준화 추진계획을 정하고 시행</li> </ul>
	표준화 전담기관의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표준화법」의 기술표준원 지정 관련 규정 준용</li> </ul>
	표준의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결제 관련 표준의 사용 및 금융기관에 대한 보급에 대한 사항</li> </ul>
	표준의 보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결제 관련 표준사용에 따른 기술보안 요구</li> <li>- 보안에 대한 심사 등</li> </ul>
	국제표준의 수용과 관련기관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관련 국제표준의 수용에 관한 사항</li> <li>- 국내 표준화를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에 관한 근거 마련</li> </ul>
지급 결제 제도 운영에 대한 감시	감시대상 지급결제 시스템의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 지급결제시스템과 일반 지급결제시 스템으로 구분하여 감시의 경중을 구분하 여 적용</li> <li>- 한국은행과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li> </ul>
	자료제출 요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현행 「한국은행법」 제87조 참고)</li> </ul>
	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가능(현행 「한국은행법」 제88조 참고)</li> </ul>

제 3 절 장기적 개선방안 : 지급결제의 단일 법제화

장	조문의 구성	내 용
	검사협력 계약의 체결	- 일본의 고사와 같이, 참가기관과의 개별 계약에 따라 계약내용에 합의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허용
	개선요청	-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나 참가하는 기관에 대하여 운영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자료공개	- FMI 원칙상의 시장데이터 공개 수용

## 제 6 장 결 론

금융위기 이후 지급결제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주요국의 금융체계 개편이나 거시건전성 감독기능 강화방안에도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이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있으며, BIS 지급결제시스템위원회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도 지급결제시스템을 포함한 금융시스템 건전화를 위한 원칙을 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편, 2009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모바일 지급결제 수단의 상용화 등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의 증가에 따른 안정성 및 표준화의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급결제에 관한 일반법이 없이, 지급결제 관련 규정은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10여개 법에 산재해 있다. 이러한 법체계의 혼재 속에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의 확대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발생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우선 참가자의 확대를 먼저 허용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이미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참여는 확대되었으므로 이제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또한, 각 법률간의 규제강도가 달라 규제차익이 발생하는 점, 중앙은행의 감시권한과 금융당국의 감독권한에 대한 체계적인 집행이 어려운 점 등 현행 지급결제제도 관련 규율체계가 정립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1년 9월 많은 논란 끝에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으나, 지급결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전히 운영규정으로 해결되고 있다. 또한, 현행 법체계상 지급결제시스템 관련한 위기발생 시 이를 최종 해결해야 할 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하고,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감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의 역할이 개별법에

서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급결제제도 관련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효과적·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sup>303)</sup>

이와 같은 지급결제제도에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적인 보완을 하게 되는 단기적 개선방안과, 「(가칭)지급결제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동 법률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는 장기적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단기적 개선방안에서는 첫째, 중앙은행의 감시권한 강화에 관한 사항과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급결제 관련 부분에 대한 중앙은행의 간접적인 감사권 행사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확대에 따른 안전성 강화의 요구에 대응하여 참가자 적격성 심사의 필요성과 현행 유사기준의 예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였고, 지급준비제도의 개선,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상의 보완점을 정리하였다. 셋째, ‘금융인프라에 관한 원칙’ 검토를 중심으로 날로 강조되고 있는 표준화에 대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시하였다.

장기적 개선방안에서는 지급결제 관련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한국은행법」, ‘운영규정’, 「지급결제제도감독법(안)」의 중심내용을 포함시키고, ‘금융인프라에 관한 원칙’을 수용하여 법률안을 구성하였다.

유동성의 확보를 전제로 하는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은 결국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표준화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지급결제 참가자의 확대와 지급결제 기능의 확대가 금융안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할 것이다. 특히, 지급결제시스템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할 경우나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각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이다. 따

---

303) 국회 정부위원회 「지급결제제도 감독법안」 검토보고서, 2010. 2, 1쪽.

라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은 시스템리스크를 억제하고 금융안정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되는 것이다.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은 관계 기관의 책무나 권한에 관한 사항보다는 향후 이 점에 중점을 두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강임호, “전자금융 발달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당국의 과제와 역할”,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사무국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10. 12.
- 권오신, “미국 금융표준화 추진체계 현황과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2009. 10.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개론」, 2009.
- 김동현, “금융 표준화 관련 국제기준 동향과 법제적 대응(스마트폰의 전자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1. 8. 9.
- 김인규·조성민·최준환, “미국 금융개혁법의 주요내용”, 한은 조사연구 2010-7, 2010. 8.
- 김서영, “주요국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 구조 비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2011. 7.
- 김성천, “지급결제 절차 및 수단의 표준화”,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1. 8. 9.
- 김소이, “스마트폰과 지급결제 부문의 컨버전스 현황 및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2010. 1.
- 김자봉, 『지급결제기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 한국금융연구원, 2010.
- 김정규, “호주·영국의 지급결제 관련 발전전략”,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1. 7. 27.
- 김희철, “미국·호주·영국의 지급결제 관련 법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1. 7. 27.

참고문헌

- 노태석, “금융규제와 과징금”, 은행법연구 제4권 제1호, 2011. 5.
- 도제문, “왜, 은행이 차액지급결제 제도의 주체인가?”, 금융, 은행연합회, 2006.
- 맹수석,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자보호제도의 문제점과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금융안정연구 제9권 제2호, 2008. 12.
- \_\_\_\_\_, “일본의 지급결제 관련 법제의 변화와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1. 7. 27.
- 박진호, “최근 영국의 금융시스템 및 통화정책 운영방식 개편과 시사점”, 한국은행 조사국, 2009. 4.
- 백미연, “미국의 ACH서비스 제공현황”,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2006. 10.
- 성재모, 「금융표준화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1. 8. 9.
-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 법문사, 2008.
- 양준모,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기관 수의 증가와 참여방식이 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지급결제학회지 제2권 제1호, 2008. 6.
- \_\_\_\_\_, “FMI 국제기준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금융표준화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 2011. 8. 9.
- \_\_\_\_\_, “금융시장인프라(FMI) : 글로벌 환경변화와 우리의 과제”,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2011. 7. 13.
- 유병갑,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2011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자료집, 2011. 7.
- 윤관식,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증권결제제도 변경에 따른 고찰”, 증권예탁 제68호, 2009. 3.

- 윤성관·김용혁, “한은금융망(BOK-Wire+)의 네트워크 구조 및 시스템리스크 분석”, MONTHLY BULLETIN, 2011. 2.
- 윤성은, “비예금수취기관 지급결제망 직접참여의 의미와 문제점”, The Banker, 2008. 10.
- 이기한, “지급결제수단의 국내외 표준화 현황 및 과제”, 2009년도 전자금융세미나 자료집, 2009. 10. 7.
- 이승환, “시스템리스크와 금융규제”, 금융경제연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11. 5.
- 이준서, 「지급결제산업의 운영현황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1. 4. 15.
- 이지수, “미국의 은행법의 발달 및 현재의 규제체계(2)”, 기업지배구조연구 2007 Winter.
- 이찬웅,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2007. 7.
- 이태규,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강화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원, 2010. 3.
- 이한녕, “주요국의 투자은행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현황 및 시사점”, 금융 통권 제628호, 2006. 7.
- 임연하, “일본의 은행대리업 제도 주요내용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조사연구 Review 2005 겨울.
- 정대, “은행규제 개편의 방향 : 주요국 은행규제 개편의 비교법적 검토”, 은행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0. 10. 8.
- 정윤미, “FSA 터너리포트 주요 내용”, 조사연구 Review 제26호.
-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8.

참 고 문 헌

- 지급결제연구회 편, 「지급결제체제의 이해」, 한국금융연구원, 2006. 9.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모바일 금융서비스 국가표준화 추진현황”, 전자금융세미나 자료집, 2011.
- 진재석, “캐나다의 지급결제제도”,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금융결제원, 2008.
- \_\_\_\_\_, “미국의 지급결제제도”,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금융결제원, 2008. 4.
- 한국은행,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2011. 7.
- \_\_\_\_\_, 「2009년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보고서」, 2010.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해설, 2009.
- \_\_\_\_\_,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해설, 2009.
- \_\_\_\_\_, 2008년도 지급결제제도 운영보고서, 2009.
- \_\_\_\_\_, “미국의 P2P 전자자금이체 현황 및 정책과제”, 지급결제 정보 제2010-2호, 2010. 3. 12.
- \_\_\_\_\_, “ISO 20022의 주요 내용 및 대응과제”, 지급결제 정보 제2009-5호, 2009.
-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바젤Ⅲ 기준서 - 글로벌 자본 및 유동성 규제체계」, 2011.
- 한정미,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제연구”, 법제 연구 통권 제36호, 한국법제연구원, 2009. 6.
- \_\_\_\_\_, “일본 모바일 전문은행 제도의 시사점과 국내 모바일 전문 은행 설립에 관한 소고”, 지급결제학회지 제5권 제1호, 2011. 6. 30.

\_\_\_\_\_, “금융투자회사의 업무확대” 한국상사판례연구 제24집 제3권,  
2011. 9.

황선철,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업무 참가 확대에 따른 변화 및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금융결제원, 2009.

### <외국문헌>

APCA, “Annual Review 2010”, November 2010

APCA, “APCA launches next generation connectivity for Australian pay-  
ments”, media releases, 11 March 2010

APCA, “Annual Review 2009”, March 2010

APCA, “Annual Review 2008”, March 2009

APCA, “Low Value Payments: An Australian Roadmap”, December 2008

APCA, “Low Value Payments: Challenges of Evolution, A Consultation  
Document”, May 2008

Australian Payments Forum, “Charter for the Australian Payments  
Forum”, March 2009

Bank of England, “Payment Systems Oversight Report 2008”, Issue No.  
5, April 2009

CPA(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Building a strong foundation for  
Canada’s digital economy”, Submission of the Canadian Pay-  
ments Association, Task Force for the Payments System Review  
Consultation, September 2010

CPA, “Annual Review 2009”, Spring 2010

참 고 문 헌

- CPA, “CPA Payment Strategy: Vision 2020”, February 2010
- CPA, “Payment Strategy FAQs”, February 2010
- CPA, “Draft Long-Term Payments Strategy: Vision 2020”, February 2009
- CPA, “International Benchmarking Survey Results - Governance, Funding & Membership-”, February 2009
- CPA, “International Research & Benchmarking Survey Results - Core Systems -”, February 2009
- CPA, “Environmental Scan - International Interoperability Standards-”, February 2009
- European Central Bank, 「THE PAYMENT SYSTEM」, 2010
- Financial Inclusion Taskforce, “Report on direct debit energy payments”, December 2008
- HM Treasury, “Statistical Release: Households without access to bank accounts 2008-2009”, December 2010
- OFT(Office of Fair Trading), “Review of the Operations of the Payments Council”, March 2009
- Payments Council, “Payments Council Cheque Replacement Programme 2010 - A Progress Report”, December 2010
- Payments Council,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Billers: Payment Reference Information”, September 2010
- Payments Council,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Payers”, September 2010
- Payments Council, “Communique”, Newsletter, Issue 1, September 2010

- Payments Council, “Progress Report: Delivering the National Payments Plan”, No.02, June 2010
- Payments Council, “Review of the Contactless and Prepaid Card Markets: Summary of Findings and Actions”, May 2010
- Payments Council, “The Way We Pay 2010”, April 2010
- Payments Council, “Annual Review 2009: Driving Change in UK Payments”, 2010
- Payments Council, “The Future for Cash in the UK”, March 2010
- Payments Council, “The Future of Cheques in the UK”, December 2009
- Payments Council, “Financial Inclusion Policy”, October 2009
- Payments Council, “Review of the UK Domestic Cheque Guarantee Card Scheme”, June 2009
- Payments Council, “Industry Best Practice for Financial Institutions: Account Number Formats”, June 2009
- Payments Council, “Progress Report: Delivering the National Payments Plan”, No.01, March 2009
- Payments Council, “Annual Review 2008: Driving Change in UK Payments”, 2009
- Payments Council, “National Payments Plan: Setting strategic Vision for UK Payments”, May 2008
- Payments Council, “National Payments Plan: Consulting on Change in UK Payments”, December 2007



참 고 문 헌

RBA, “Payments System Board Annual Report 2010”, October 2010

RBA, “Annual Report 2010”, August 2010

RBA, “Strategic Review of Innovation in Australia's Payments System”,  
Media Release 2010-14, 22 July 2010

RBA, “Low Value Network Migration Project Timetable and Scope  
Information Paper”, February 2010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Blueprint for a Modernized Financial  
Regulatory Structure, 2008.

UK Cards Association, “Fraud the Facts 2010”, March 2010

木下信行, 「銀行の機能と法制度の研究」, 東洋經濟新報社, 2005.

日本銀行, 「決済システムレポート(2010-2011)」, 2011. 6.

<인터넷 자료>

<http://www.bis.org/publ/cps43.htm>

[http://www.cdnpay.ca/publications/pdfs\\_publications/cpa\\_act\\_chap\\_c21.pdf](http://www.cdnpay.ca/publications/pdfs_publications/cpa_act_chap_c21.pdf)

[http://www.cdnpay.ca/publications/pdfs\\_publications/forum\\_18\\_3.pdf](http://www.cdnpay.ca/publications/pdfs_publications/forum_18_3.pdf)

[www.cdnpay.ca](http://www.cdnpay.ca)

[http://www.opsi.gov.uk/acts/acts2009/pdf/ukpga\\_20090001\\_en.pdf](http://www.opsi.gov.uk/acts/acts2009/pdf/ukpga_20090001_en.pdf)

<http://www.canlii.org/en/ca/laws/regu/sor-2003-346/latest/sor-2003-346.html>

<http://www.treas.gov/press/releases/reports/Blueprint.pdf>

[http://banking.senate.gov/public/\\_files/070110\\_Dodd\\_Frank\\_Wall\\_Street\\_Reform\\_comprehensive\\_summary\\_Final.pdf](http://banking.senate.gov/public/_files/070110_Dodd_Frank_Wall_Street_Reform_comprehensive_summary_Final.pdf)(2010. 8. 19)

<http://www.fsa.go.jp/news/newsj/13/ginkou/f-20020404-1.html>

<http://www.fsa.go.jp/news/newsj/17/ginkou/f-20051028-1.html>

<http://www.treas.gov/press/releases/reports/Blueprint.pdf>

<http://www.bis.org/publ/cpss94.pdf>